발 간 등 록 번 호

화학물질관리법령(20241214)

2026. 10.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Korea Law Service Center

목 차

1. 화학물질관리법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6. 10. 8.] [법률 제21531호, 2026. 4. 7.,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044 - 201 - 6848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 - 201 - 6832, 6836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수입, 확인명세서) 044 - 201 - 6847, 6781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취급시설기준) 044 - 201 - 6837, 6844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화학사고) 044 - 201 - 6838, 683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 - 201 - 6843, 6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5. 26., 2024. 2. 6., 2025. 10. 1.>

1. “화학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말한다.

2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생태유해성물질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제한물질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말한다.
8. 삭제<2024. 2. 6.>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8., 2024. 2. 6.>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 가스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1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같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폐기물처리업에서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13조, 제16조, 제19조 및 제20조는 제외한다), 제23조의2, 제23조의3, 제26조,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제49조제1항제7호·제8호 및 제50조제1항제6호는 제외한다), 제52조, 제54조부터 제64조까지(제54조제8호부터 제13호까지, 제58조제4호·제5호, 제59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 제59조제11호, 제61조제4호, 제6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64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를 적용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③ 제1항제2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다.<개정 2021. 5. 18., 2024. 2. 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고, 국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27.>

③ 국가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오염도 측정·분석 기술
2.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기술
3. 화학물질의 영향조사·분석 기술
4.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 최소화·제거 및 복구 기술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신설 2016. 1. 27., 2020. 3. 31., 2025. 10. 1.>

1.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2.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안전진단 및 개선
3. 그 밖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화학물질 취급자의 책무)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 ① 기본계획의 수립 등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10. 1.>

④ 관리위원회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업계의 대표 및 관련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10. 1.>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관리위원회 및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8.>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 5. 29.]

제8조(주요 시책 등의 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시책이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9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수입을 수입 대행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하고,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3. 인체급성유해성물질
3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3의3. 생태유해성물질
4. 허가물질
5. 제한물질
6. 금지물질
7. 사고대비물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화학물질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증명을 신청할 수 있

다.<개정 2025. 10. 1.>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은 5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받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검토한 후 제출한 자에게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 중 그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요청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배출저감계획서 이행에 대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⑧ 배출저감계획서 작성내용·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관련 영업비밀 보호신청 범위·절차 및 영업비밀 심의 기준·절차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7. 11. 28.]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1. 28.,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 11. 28.>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7. 11. 28.>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기준, 공개절차 및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7. 11. 28., 2025. 10. 1.>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4. 2. 6.>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4. 2. 6.>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누구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유지·관리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방재장비(防災裝備)와 약품을 갖추어 둘 것
3.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하는 경우 종류가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혼합하여 보관·저장하지 말 것

3의2. 유해화학물질을 담는 용기(容器) 본래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4.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운반자·작업자 외에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사람은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일 것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2025. 10. 1.>

1. 기체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액체 유해화학물질에서 증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에서 분말이나 미립자 형태 등이 체류하거나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15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진열하거나 보관할 수 없다.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1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을 초과하여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자, 운반시간, 운반경로·노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반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서의 작성방법, 확인통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 분류번호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취급현장,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물질별로 적절한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6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기준·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6.]

제17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일반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④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조·수입 등을 중지한 유해화학물질등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제목개정 2024. 2. 6.]

제18조(금지물질의 취급금지 및 제한물질의 취급제한) ① 누구든지 금지물질을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거나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② 누구든지 제한물질을 사용이 제한된 용도로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 6. 12., 2024. 2. 6., 2025. 10. 1.>

③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 화학사고예방조치계획서 제출 등 해당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적절한 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⑤ 제한물질을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4. 2. 6.,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2025. 10. 1.>

[제목개정 2018. 6. 12.]

제19조(허가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허가 등) 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

1. 제조·수입·사용을 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위해성
5.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6.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26.>

1.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2. 시험운전용으로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3.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4. 조사용·연구용으로 제조·수입되는 화학물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려는 자는 허가물질의 용도가 동일한 경우에 한정하여 공동으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
2. 허가물질의 사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경제적 이득이 인간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보다 더 큰 경우
3. 허가물질을 대체할 적절할 물질이나 기술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허가를 통지하는 경우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5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을 부여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개정 2025. 10. 1.>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2025. 10. 1.>

⑧ 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7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제5항의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⑩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내용, 제4항에 따른 허가 여부 결정 및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① 삭제 <2024. 2. 6.>

②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

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6.>

④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제목개정 2024. 2. 6.]

제21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제한물질(취급이 제한된 용도에 한정한다) 또는 금지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특정 유해화학물질 및 농약의 국제교역 시 사전 통보 승인절차에 관한 로테르담협약」(이하 이 항에서 "로테르담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협약 당사국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
2. 로테르담협약 제13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출하는 자의 준수사항
3.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
4.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Ⅴ에 규정된 수출통보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③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제2항제2호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2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5. 26.>

③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각물질 사용에 따른 부작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의료 목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6. 4. 7.>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나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한 자에

게 폐기·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거나 게시물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5. 10. 1.>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운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

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 ①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주요취급시설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주요취급시설 등을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른 점검 방법·주기 및 제3항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서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취급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지는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 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면통지, 개별설명 또는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의 방법에 따른 고지 외에도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0. 3. 31.]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20. 3. 31.]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③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취급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④ 제2항 및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면제한다.<신설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를 운영하는 연구실은 제외한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3.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정기검사
4.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
5. 그 밖에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 등 위험이 없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취급시설의 안전 상태를 입증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0. 5. 26., 2024. 2. 6., 2025. 10. 1.>

1.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沈下)·균열·부식(腐蝕)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한 후 취급시설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 결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2024. 2. 6.>

1. 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위하여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는 동안 그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의 절차·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2.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안전진단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동중단 또는 휴업 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주 1회 이상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2.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4.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5.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 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4. 2. 6., 2025. 10. 1.>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4. 2. 6.>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구분)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2. 6.>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유해화학물질을 일정한 시설에 보관·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 중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허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3. 삭제<2020. 3. 31.>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사업장마다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5. 18., 2024. 2. 6.,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제출과 제2항에 따른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⑤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의 절차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⑥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아닌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2025. 10. 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신고, 제6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제목개정 2024. 2. 6.]

제28조의2(유해화학물질 통신판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1. 제27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2. 제29조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2. 27.]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는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 없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

[제목개정 2024. 2. 6.]

제29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의무) ①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정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알려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2. 6.>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것
3.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한다는 것
4.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또는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하여야 한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4. 2. 6.]

제29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4항제5호에 따른 취급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려는 자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신고확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2. 27.]

[제목개정 2024. 2. 6.]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 5. 26., 2021. 5. 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1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이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도급의 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 3. 31.,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이 법 위반에 따른 효과는 도급인에게도 미친다. 다만, 제7장 벌칙(제57조부터 제64조까지)을 적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3. 31., 2020. 5. 26.>

④ 도급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을 갖춘 자에게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

⑤ 도급인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

제3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전에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선임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선임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유해화

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30일 이내에 선임하는 것이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에 다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해임 또는 퇴직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종사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수탁관리자 및 취급시설 종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수탁관리자 및 종사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⑦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자격·인원·직무범위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①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한 때에는 그 해당자에게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교육에 드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6., 2025. 10. 1.>

제34조(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등)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거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의 경우 미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및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이후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7.,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 신고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게 폐업 또는 휴업 전에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신설 2021. 5. 18., 2025. 10. 1.>

제34조의2(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2025. 10. 1.>

1.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3조제2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5.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5의2.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7.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8.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 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고의·과실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 27.]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1. 제18조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제27조 각 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과 관계되는 인가·허가 등이 취소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제3항 후단에 따른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2년에 3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선을 명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영업허가를 취소(영업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신고수리의 취소를 말한다)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17. 11. 28., 2020. 3. 31., 2021. 5. 18., 2024. 2. 6., 2025. 10. 1.>

1.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6.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7.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8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의3.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9.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0.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11.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27조 각 호의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14.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15.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5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16.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18.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19.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20.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1. 삭제<2020. 3. 31.>
22. 삭제<2020. 3. 31.>
23.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4.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5.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6.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위반횟수,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6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해당 사업장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3. 31., 2025. 10. 1.>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제34조에 따른 폐업 또는 휴업으로 제35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

⑤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0. 3. 31., 2025. 10. 1.>

제37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상속인·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3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 허가·등록 또는 그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개정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을 합병한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하여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에 행정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그 처분이나 위반의 사실을 양수 또는 합병한 때에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8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등) ① 같은 부지나 건축물에 사업장이 설치되어 있는 둘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별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1.>

②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39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5. 10. 1.>

1. 인화성, 폭발성 및 반응성, 유출·누출 가능성 등 물리적·화학적 위험성이 높은 물질
2. 경구(經口) 투입, 흡입 또는 피부에 노출될 경우 급성독성이 큰 물질
3. 국제기구 및 국제협약 등에서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다고 밝혀진 물질
4. 그 밖에 화학사고 발생의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

제40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외부인 출입관리 기록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제41조 삭제 <2020. 3. 31.>

제41조의2 삭제 <2020. 3. 31.>

제42조 삭제 <2020. 3. 3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라 위해방제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각각 마친 것으로 본다.

제44조(화학사고 현장 대응)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하여 해당 화학사고 발생현장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화학사고의 대응 관련 조정·지원
2. 화학사고 대응, 영향조사, 피해의 최소화·제거,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
3. 화학사고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4. 화학사고 원인, 피해규모, 조치 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브리핑
5. 그 밖에 화학사고 수습에 필요한 조치

③ 화학사고가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을 포함한다)은 현장수습조정관이 화학사고 현장에서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주요한 사안을 결정·집행할 경우에는 현장수습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4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①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즉시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까지는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 10. 1.>

③ 가동중지명령과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6. 12. 27.]

제45조(화학사고 영향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원인 규명,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 피해의 최소화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향조사(이하 "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화학사고의 원인, 규모, 경과 및 인적·물적 피해사항
2.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위해성
3. 화학사고 발생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 및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4.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
5. 화학사고 원인이 되는 화학물질의 대기·수질·토양·자연환경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
6. 화학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

7. 그 밖에 화학사고의 피해구제에 필요한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향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조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46조(조치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화학사고의 원인이 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2.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최소화 및 제거 조치를 결정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노출경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2025. 10. 1.>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조치의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적용하고, 환경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침을 따른다.<개정 2017. 1. 17., 2025. 10. 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소화·제거 조치, 복구조치 및 이행계획서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7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현장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등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관리지역 내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감독 및 화학사고 대응 등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제6장 보칙

제48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현황 등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화학사고 발생 이력(履歷)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

다. <개정 2015. 1. 20., 2018. 12. 24.,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의하여 확보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지방자치단체·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및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20., 2018. 12. 24., 2025. 10. 1.>

③ 제1항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4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민원인에게 제1항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와 다른 중앙행정기관등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8. 17.]

[종전 제48조의2는 제48조의3으로 이동 <2021. 8. 17.>]

제48조의3(자료 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5. 18.]

[제48조의2에서 이동 <2021. 8. 17.>]

제48조의4(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업무 수행)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2. 제19조제1항·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 및 공동 허가신청
3.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 또는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는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국내대리인은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제3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2. 6.]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를 선임받은 경우에는 그 국내대리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량의 화학물질 및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3.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조·수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4. 삭제<2024. 2. 6.>
5.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6.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6의2.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
6의3. 제2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7.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7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8.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
9.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
9의2. 삭제<2020. 3. 31.>
10.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를 신고하여야 하는 자
11. 제55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50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5년간(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9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후 5년간을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2. 6., 2025. 10. 1.>

1. 제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은 자
2의2.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자
2의3. 제18조제5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한 자
3. 제19조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거나 제조·수입 신고를 한 자
4.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자
5.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
6.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
6의2. 제29조의3에 따라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를 한 자
6의3.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해임하거나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퇴직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제28조제6항에 해당하는 자에 한정한다)
7.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산 입력 자료가 있으면 해당 서류를 갈음하여 전산 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51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삭제<2020. 3. 31.>
2. 제35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문개정 2016. 1. 27.]

제52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 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10. 1.>

1.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국내외에 공개된 자료
2.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하기로 결정된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에 해당되면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그 밖에 자료보호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53조(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①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 기술개발, 그 밖에 영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지정·확인·심사 또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4. 2. 6., 2025. 10. 1.>

1.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증명의 발급
2. 제1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2의2. 제18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 및 변경허가·변경신고

2의3. 제1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 및 변경신고

3. 제19조제1항·제6항·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

3의2. 제19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 신고 및 변경신고

4. 삭제<2024. 2. 6.>
5.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6. 제20조제4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변경허가 및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변경신고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의 승인 및 변경승인
8.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9. 제24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진단
10.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11. 제28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11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12.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
13.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휴업·폐업 신고

제5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 2025. 10. 1.>

제5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5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협회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57조(벌칙)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7. 11. 28., 2018. 6. 12., 2020. 3. 31., 2024. 2. 6.>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의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취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금지물질을 취급한 자
2의2. 제1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제한물질을 취급한 자
3. 제19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3의2.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유해화학물질을 영업 또는 취급한 자

5.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7. 제46조제1항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조치, 복구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0. 3. 31., 2024. 2. 6., 2026. 4. 7.>

1.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자
4.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2024. 2. 6.>
6.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섭취하거나 흡입하려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한 자
7.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8.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9.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가동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3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34조제3항에 따른 휴업·폐업 전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즉시 중단하지 아니하거나 가동중지명령이 해제되기 전에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한 자

제60조(벌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즉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5. 29.,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19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2.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을 받고 수출한 자

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23조제7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4. 제23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영업을 한 자

4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한 자

5.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의 판매업 신고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는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제6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2024. 2. 6., 2026. 4. 7.>

1. 제18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1의2. 제18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자

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의2. 제20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한 자

3.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에 대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 또는 환각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 혹은 방법에 관한 정보를 표시·광고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자

5. 제28조의2를 위반하여 구매자의 실명·연령 확인 또는 본인 인증을 거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한 자

제6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2.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3.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의4.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자

3의5.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의6.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의7.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자

4.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자

4의2. 삭제<2020. 3. 31.>

5.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5의2.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자

6.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자
9.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자

10의2.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0의3.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자

11.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국내대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국내대리인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6. 12. 27., 2017. 11. 28., 2020. 3. 31., 2024. 2. 6.>

1.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1의3.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1의4.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2. 삭제<2020. 3. 31.>

3.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자

3의2.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5.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5. 10. 1.>

부칙 <제11862호,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

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4. 3. 18.>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 유독물 ”을 각각 “ 유독물질 ”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를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수입·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 ”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로 한다.

1^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1&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을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으로 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을 “ 「화학물질관리법」 ”으로 한다.

1(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 ”을 “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 ”으로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2490호,2014. 3. 18.>(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1조제1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제2항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부칙 <제13035호,2015. 1.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34호,2015. 12. 1.>(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890호,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231호,2016. 5. 29.>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2016. 12. 27.>(지방세징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4493호,2016. 12.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2호,2017. 1. 17.>(물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83>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5105호,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 제64조제1항제3호의2·제3호의3, 법률 제14493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조제2항 및 같은 개정법률 제6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단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659호,2018. 6. 12.>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84호,2018. 12. 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2호,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4조, 제25조제1항제2호, 제2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31조, 제35조제2항제9호·제10호 및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54조제8호·제9호·제12호, 제59조제7호·제8호, 제6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장외영향평가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장외영향평가서의 검토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거나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한 후 5년이 경과하여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출한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검토결과 및 이행 여부 점검결과는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결과 및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결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 중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취급시설"을 "같은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취급시설"로 한다.

부칙 <제17326호,2020. 5. 26.>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그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부터 3.까지 생략

4. 제37조 중 법률 제17182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4조제5항제2호 및 제31조제3항 단서의 개정 부분: 2020년 10월 1일

5. 및 6. 생략

부칙 <제18174호,2021. 5.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20호,2021. 8. 1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231호,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 경우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라 최초로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조(시약판매업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시약판매업 신고를 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제3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4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6호 및 같은 조 제3항제8호, 제3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5호, 제40조제1항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명하여야 하는 유독물관리자"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33조 제목 중 "유독물관리자"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독물관리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자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5 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⑤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본문,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⑥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⑦ 물류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⑧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을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로 한다.

제16조 중 “ 유독물 ”을 “ 인체등유해성물질 ”로 한다.

제17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인체등유해성물질

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독물질을 제조한 사람, 같은 법 제34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취급제한·금지물질을 사용한 사람 또는 이미 등록되거나 허가된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한 사람, 이미 허가되거나 신고한 유해화학물질과 유사하게 위조하거나 변조한 사람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을 각각 “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제10조 중 “ 「식품위생법」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독물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 ”을 “ 「식품위생법」 또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식품,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⑩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 유독물질 ”을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로 한다.

⑪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4조 중 “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장외영향평가서를 ”을 “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계획서를 ”로 한다.

⑫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호 가목·나목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각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중 “ 유해화학물질이나 대체 유해화학물질 ”을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이나 그 대체물질 ”로 한다.

⑬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본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제53조제9호 중 “동물용 의약품 또는 유해화학물질”을 “동물용 의약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⑭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4조제5호 및 제68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⑮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제35조제1항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제84조제3호 중 “유독물”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2@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32조제2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중 “유독물”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제6호, 제61조제2호 및 제63조의3제1항、제2항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2(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제2조제2호아목 중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을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배출、누출하는 행위”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3)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허가물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제6조제1항제1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2>까지 생략

<383> 화학물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제3항, 제1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7항,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8항 전단·후단, 제23조의2제2항·제3항, 제23조의4제2항 전단, 제2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

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3항 전단·후단, 제34조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제2항, 제48조의2제1항·제2항, 제48조의3 전단, 제48조의4제2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11호,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55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제3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0조제5항, 제11조제2항·제5항, 제11조의2제1항·제2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8항, 제12조제3항 전단, 같은 조 제7항, 제13조제6호, 제14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제3항·제4항, 제16조제4항,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제10항, 제20조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 전단·후단,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23조의2제4항, 제23조의3제5항, 제23조의4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2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제4호, 같은 조 제5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8항·제9항, 제28조의2제2항, 제29조제5호, 제29조의2제2항, 제29조의3제2항·제4항, 제31조제1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제4항, 제3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2항제26호, 같은 조 제3항, 제37조제4항,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0조 본문, 제43조제3항, 제44조제1항, 제44조의2제3항,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항, 제48조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3항, 제4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3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384>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531호,2026. 4. 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10. 8.] [대통령령 제36744호, 2026. 10. 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044 - 201 - 6848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 - 201 - 6832, 6836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수입, 확인명세서) 044 - 201 - 6847, 6781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취급시설기준) 044 - 201 - 6837, 6844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화학사고) 044 - 201 - 6838, 683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 - 201 - 6843, 6833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25. 8. 5.>

제2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4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8. 5.>

1. 중소기업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안전 교육
2.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화학물질 안전관리 협력 사업
3.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수 중소기업 선정 및 모범 사례 홍보

[본조신설 2016. 7. 6.]

제3조(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8. 5., 2025. 10. 1.>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명령의 해제에 관한 사항
4.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47조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제6조에 따른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8.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관한 사항
9.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0. 유해화학물질등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8., 2017. 7. 26., 2018. 11. 27., 2020. 9. 29., 2025. 10. 1., 2025. 12. 23.>

1. 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
2. 국립환경과학원 및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및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속 전문가
4.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소속 전문가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시민단체 소속으로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 화학물질 관련 업계 단체의 대표 및 전문가
7. 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25. 10. 1.>

⑥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1. 27., 2025. 8. 5.>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4. 화학사고심의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 10. 1.>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3. 29., 2025. 8. 5.>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개정에 관한 계획
3. 유해화학물질등의 대체물질 개발·사용 등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8조, 「선박안전법」 제41조 및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안전운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7조(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의 예외)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2.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5. 8. 5.]

제8조(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 중지의 해제 요청 절차) ① 사업자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해당 중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5.,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8. 5., 2025. 10. 1.>

[제목개정 2025. 8. 5.]

제8조의2(제한물질의 제조·수입 등 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서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2.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3.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제한물질을 수입·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제한물질을 제조·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가 수리된 경우

나. 법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법 제29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수리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5. 8. 5.]

제9조(허가 적용 제외 대상인 화학물질)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8. 5.>

1.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
2.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화학물질

제9조의2(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의 대상) 법 제19조제7항에서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허가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자
2.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3.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

[본조신설 2025. 8. 5.]

제1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 수입신고의 면제 대상) 법 제20조제3항에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경우
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측정기기 교정·측정용 표준가스를 그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3.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의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4.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5. 제한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6.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7.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25. 8. 5.]

제11조(환각물질)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8. 1.>

1. 톨루엔,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코올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시너(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 접착제,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4. 아산화질소(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2(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표시·광고 등에 대한 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는 정보의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 여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매년 1회 이상 실시
2. 수시조사: 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 또는 정보통신망 게시가 있는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통신판매업자,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법 제22조제3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6.]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3. 10. 4., 2025. 10. 1.>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3. 30.>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에 필요한 조치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9. 삭제<2021. 3. 30.>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30.,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제13조의2(휴업·폐업에 관한 과세정보 제공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휴업기간 또는 폐업연월일과 그 사유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현황 확인에 필요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11. 19.]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개정 2023. 12. 12.,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6조(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 10. 1.>

제17조(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지정·고시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18조(화학사고 조사단) 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조사단(이하 "화학사고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와 관계 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의 유형, 피해 규모 및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구성원, 조사시기와 기간 등을 정한다.<개정 2025. 10. 1.>

③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은 화학사고 조사단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된 구성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사고 조사단의 단장과 구성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장 또는 구성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화학사고 조사단의 활동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⑤ 화학사고 조사단은 조사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⑥ 화학사고 조사단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0조(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정보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 또는 국민에게 간행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수입에 관한 자료 제공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3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2025. 10. 1.>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입을 신고한 자의 상호, 대표자 성명 등 수입자에 관한 자료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수량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11. 19.]

제20조의3(국내대리인이 수입자 등에게 통보할 사항) 법 제48조의4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그 수행 결과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여받은 허가번호, 허가물질의 용도 및 수입의 한정기간 등의 조건

[본조신설 2025. 8. 5.]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7. 6., 2017. 5. 8., 2018. 11. 27., 2019. 11. 26., 2021. 3. 30., 2025. 8. 5., 2025. 10. 1., 2026. 10. 6.>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 요청 및 수정·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4의2. 법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고시
6의2. 삭제<2021. 3. 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의2. 삭제<2021. 3. 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9의2.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 7. 6., 2017. 12. 26., 2018. 11. 27., 2019. 11. 26., 2020. 9. 29., 2021. 3. 30., 2024. 4. 2., 2025. 8. 5., 2025. 10. 1.>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확인 등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및 허가의 취소

7.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9. 법 제24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접수 및 검토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허가·신고 사항의 통지 및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변경신고의 수리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수리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개정 2024. 4. 2., 2025. 8. 5., 2025. 10. 1.>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접수
5.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24. 4. 2., 2025. 10. 1.>

[제목개정 2020. 9. 29.]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에 따른 보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2025. 10. 1.>

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변경허가·변경신고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2025. 8. 5., 2025. 10. 1.>

[본조신설 2017. 3. 27.]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25조 삭제 <2023. 10. 4.>

부칙 <제25836호,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 중지 해제 여부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출받은 요청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9조제3항 및 제17조제1항·제2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③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⑤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한물질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⑦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⑧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제조소등의 유독물관리자로 선임된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제조소등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자"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로 한다.

⑨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유독물 사용업 중 유독물을”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제5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중 유해화학물질을”로 한다.

⑫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⑭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⑮ 치료감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물질

1^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9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7호”로 한다.

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시설

제22조의7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 제35조 또는 제36조에 따른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명령, 회수 등 조치명령, 개선명령, 허가취소처분, 영업정지명령 또는 과징금부과처분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법 제2조제2호아목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제2조제5호의 경우: 불법배출한 제한물질·금지물질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

1(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17호,2016. 7. 6.>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60호,2017. 3. 27.>(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971호,2017. 3. 29.>(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2! 까지 생략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항공법」 제59조”를 “「항공안전법」 제70조”로 한다.

제11조 생략

부칙 <제28031호,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2017. 7. 26.>(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3>까지 생략

<25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 및 국민안전처"를 "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 및 고용노동부"로 한다.

<255>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8223호,2017. 8.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03호,2017. 12. 26.>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2018. 1. 16.>(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 까지 생략

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4) 부터4^ 까지 생략

부칙 <제29314호,2018. 11. 27.>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16호,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2 제2호카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31072호,2020. 9. 29.>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82호,2021. 3. 30.>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28호,2021. 11. 19.>

이 영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94호,2022. 11. 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2호,2023. 10.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13호,2023. 12. 12.>(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7호,2024. 4. 2.>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6호,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가목 및 제18조제1항제4호사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②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 중 "유독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9 제6호의 을종란 하목 중 “ 유해화학물질 ”을 각각 “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4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를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 ”으로 한다.

⑤ 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제3호 및 제226조제3항제3호의2 중 “ 유해화학물질 ”을 각각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5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로 한다.

⑦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⑧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을 수송하는 배관

⑨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나목 본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목에서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 유해화학물질 ”을 “ 유해화학물질등 ”으로 한다.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⑪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서목1)의 위반행위란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로 한다.

⑫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3조제1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각각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로 한다.

⑭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8호 중 “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 ”로 한다.

별표 2 중 “ 유해화학물질 ”을 각각 “ 유해화학물질등 ”으로 한다.

⑮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종> 제151호 중 “ 허가 ”를 “ 허가、신고 ”로 한다.

별표 1 <제5종>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취급 허가 및 제한물질 취급 허가、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수입 신고

별표 1 <제5종> 제19호 중 “ 제조、수입、사용의 허가 ”를 “ 취급 허가、신고 ”로 한다.

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배관

1*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1(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본문 중 “ 유해화학물질 ”을 “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2)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호하목 위반행위란 중 “ 유해화학물질 ”을 “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조·수입·판매의 허가”를 “제조·수입·판매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호다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부칙 <제35804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

<68>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4조제4항, 제6조제5호, 제8조제1항·제2항, 제12조제2항제8호, 제13조제4호, 제13조의2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제4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조, 제18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제1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20조, 제2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2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9호,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3조 및 제23조의2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3조제5항 중 “환경부 소속”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및 제23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3)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6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940호,2025. 12. 23.>(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36744호,2026. 10. 6.>

이 영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4조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나목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 기간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위반횟수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간(가중 또는 감경을 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중 또는 감경된 기간을 말한다)을 말하며,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에 3,6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7,2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의 전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영업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3) 1) 및 2)에 따라 연간 매출액을 산정할 때 해당 업체가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아니하거나 휴업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 대상 영업에서 발생한 연평균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등의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이나, 영업정지 대상 영업의 전체 매출액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5. 8.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4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	법 제64조	600	800	1,000

질확인 내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1항제1호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2	600	800	1,000
마.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1호	180	240	300
바.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3	600	800	1,000
사.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4	600	800	1,000
사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금지물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제한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2	180	240	300
사의3.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 제1항제3호의5	600	800	1,000
사의4. 법 제18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신고를 하지 않	법 제64조 제2항제1호의3	180	240	300

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의5. 법 제18조제6항을 위반하여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1호의4	180	240	300
사의6.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6	600	800	1,000
사의7.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의7	600	800	1,000
아. 법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환각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4호	600	800	1,000
자. 삭제 <2021. 3. 30.>				
차. 삭제 <2021. 3. 30.>				
카. 법 제28조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			
1)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의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300	400	500
2) 1)외의 변경신고 대상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600	800	1,000
타. 법 제29조의2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등 구매자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3호	180	240	300
타의2.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5호의2	600	800	1,000

파. 법 제31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6호	600	800	1,000
하.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3호의2	180	240	300
거. 법 제32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7호	600	800	1,000
너.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2항제4호	180	240	300
더.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휴업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8호	600	800	1,000
러.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승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9호	600	800	1,000
머.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0호	600	800	1,000
머의2. 법 제4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0호의2	600	800	1,000
머의3. 법 제4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국외제조·생산자에게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이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10호의3	600	800	1,000
버.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법 제64조	600	800	1,000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1항제11호			
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64조 제2항제5호	180	240	300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044 - 201 - 6848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 - 201 - 6832, 6836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수입, 확인명세서) 044 - 201 - 6847, 6781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취급시설기준) 044 - 201 - 6837, 6844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화학사고) 044 - 201 - 6838, 683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안전과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 - 201 - 6843, 683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통계조사 및 정보공개 등

제2조(화학물질확인) ①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7. 5. 30., 2024. 4. 9., 2025. 8. 7.>

③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명세서의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서에 성분명세서 및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5. 8. 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

제4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 17., 2025. 10. 1.>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을 제조·보관·저장·사용하거나 수출입하는 사업장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대상

②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10. 1.>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유입수계(流入水系)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제조·수입·판매·사용 등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용도, 제품명 및 취급량
3. 화학물질의 입·출고량, 보관·저장량 및 수출입량 등의 유통량
4. 삭제<2017. 5. 30.>
5.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관련 정보
6.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내용 및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및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
2. 조사대상 업종·업체의 규모 및 지역에 관한 사항
3. 조사방법·절차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4. 조사표 작성 및 제출방법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장의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5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중 어느 하나를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종업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및 취급 공정
3.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배출원(排出原: 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등 특정 장소에서 화학물질을 배출하거나 불특정 장소에서 다수의 작은 규모나 분산된 형태로 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지점을 말한다) 및 연간 배출량
4.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5.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최초로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을 1톤 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5월 31일(「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8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가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화학물질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배출저감계획서는 9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이하 "배출저감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7.>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및 검토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적합 여부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배출저감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에 수정·보완 사항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제4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사업장과 협의하여 정한 기한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수정·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된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기간, 검토결과서 통보, 수정·보완 요청에 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신설 2025. 8. 7.>

⑦ 제4항(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배출저감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변경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7.>

1.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취급량, 취급 공정이 변경되는 등의 사유로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한 결과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의 사업장,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또는 수정·보완,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변경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8. 7.>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3(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 ① 배출저감계획서의 일부 내용을 기업의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는 자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2조에 따라 이미 공개된 정보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하려는 자는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를 제출할 때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비공개 요청을 함께 해야 한다.<개정 2021. 4. 1.>

1.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목록
2. 비공개 요청 대상 정보의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공개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1. 4.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공개 요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8. 7.>

[본조신설 2019. 11. 29.]

제5조의4(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조의2제4항(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적합 통보를 한 배출저감계획서를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신청인에게 통보된 것은 제외한다. <개정 2025. 8. 7.>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역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1. 업종, 업체명,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의 일반 정보
2. 배출저감 대상 화학물질의 연간 배출량
3. 향후 5년간 배출저감 방안 및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
4. 배출저감계획서의 이행 실적

③ 제2항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공청회나 설명회 등의 개최
2. 관할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방법

[본조신설 2019. 11. 29.]

제6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라 한다)의 공개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 원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받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라 심의를 청구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11. 29.>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에 대하여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부쳐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

로 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8. 11. 29.>

⑥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5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1. 29.>

⑦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소명서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8. 11. 29.>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절차,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2018. 11. 29., 2025. 10. 1.>

제7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9. 30.>

②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1. 9. 30., 2025. 10. 1.>

1.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 5명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④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9. 30.>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0. 9. 2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공개대상자(공개대상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공개대상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공개대상자인 법인·단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 공개대상자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감정(鑑定)을 한 경우

5.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공개대상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공개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7조의3(위원의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9. 29.]

제3장 유해화학물질 등의 안전관리 <개정 2025. 8. 7.>

제1절 유해화학물질 등의 취급기준 등 <개정 2025. 8. 7.>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법 제13조제6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 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제10조제8항제5호에 따른 주의사항
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6호에 따른 주의사항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외한 유해화학물질: 별표 1에 따른 취급기준

[전문개정 2021. 9. 30.]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해화학물질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거나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 1. 10., 2025. 10. 1.>

1. 실험실 등 실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을 다른 취급시설로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
3. 흡입독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유해화학물질을 하역(荷役)하거나 적재(積載)하는 경우
5. 눈이나 피부 등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6.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정비·보수작업을 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제10조(유해화학물질의 진열량·보관량 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1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판매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진열·보관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진열·보관계획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에 방문하여 외부인 접근 차단 여부,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 및 보관·저장시설의 위험성 등을 확인한 후 진열·보관에 따른 주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8호서식의 확인증명서를 제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1조(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작성·제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말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인체등유해성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 5,000킬로그램
2. 사고대비물질: 3,000킬로그램

②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양을 초과하여 운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운반계획서에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0. 9. 29.>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운반자, 운전기사 또는 호송자가 그 사본을 휴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운반계획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통행도로 주변의 하천 유무, 화학사고 발생 시 확산 위험성, 주거지역 통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해야 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과 진열·보관 장소
2.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
3. 유해화학물질의 용기·포장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모든 취급시설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의 제출 의무가 없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③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제13조(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등) 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7. 27., 2025. 8. 7.>

②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14조(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 허가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5. 8. 7.>

1. 취급계획서
2. 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지물질의 제조·수입·판매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제조·수입 또는 사용의 승인을 받아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하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허가증 사본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3. 10. 4., 2025. 8. 7.>

③ 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허가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조건 및 허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신설 2025. 8. 7.>

④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8. 7.>

1.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예정 물량
   다.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라. 허가받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용도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
2.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

⑤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5호서식의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14조의2(제한물질의 취급 신고 등) ①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③ 법 제18조제6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5. 10. 1.>

1. 신고한 제한물질의 명칭·함유량 또는 주요 용도
2. 신고한 연간 예정량
3. 사업장의 상호·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해당 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15조(허가물질의 제조 · 수입 · 사용 허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작성방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5.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및 준수사항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재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1. 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19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재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 제19조제4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허가번호, 용도와 제조、수입、사용의 한정기간 등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⑤ 법 제19조제7항 및 영 제9조의2에 따라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영 제9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7.>

⑥ 제5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신설 2025. 8. 7.>

⑦ 법 제19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5. 8. 7., 2025. 10. 1.>

1.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허가받은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허가물질의 위해성 또는 허가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제1항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다. 허가받은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라. 허가받은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2.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의 변경신고 대상: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법 제19조제7항에 따른 신고의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한 예정 물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나.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⑧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의4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제8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준수사항을 적어 별지 제17호서식의 변경허가증·변경신고증 또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내줘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변경허가증 또는 변경신고증을 내줄 수 있다.<신설 2025. 8. 7.>

제16조 삭제 <2025. 8. 7.>

제17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수입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수입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물량
3. 신고한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용도
4.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④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서식의 변경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1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로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출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승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수입국이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

⑤ 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

3호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변경 사항이 수입국의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수입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절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별표 1 제5호라목 단서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보관하는 시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이하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이라 한다)의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
3.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차량(유해화학물질을 차량에 싣거나 내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5.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6.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7.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담긴 용기·포장을 보관하는 시설(「위험물철도운송규칙」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체 없이 역외로 반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판매업을 등록한 자가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시설
9. 「항공보안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내에서 「항공사업법」 제2조제8호의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34호의 공항운영자가 설치·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취

급시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③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송부한 경우 그 송부된 서류에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제외하고 작성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라 제출한 안전성향상계획(이하 "안전성향상계획"이라 한다) 2부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안전성향상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제출한 공정안전보고서(이하 "공정안전보고서"라 한다) 2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심사의견서(공정안전보고서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 통지서

2.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⑥ 법 제2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완료일 30일 이전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한다)

⑦ 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범위(이하 "총괄영향범위"라 한다)가 확대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으로서 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일시적인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되거나 추가되는 경우

나.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함량·농도 또는 성상이 변경되는 경우(물질의 인화성 또는 급성독성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는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같은 사업장 내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⑧ 법 제2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내 취급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⑨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최초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 및 제출, 변경제출의 대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21. 4. 1.]

제19조의2(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1항, 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가위험도·나위험도 및 다위험도로 구분한다) 및 적합 여부 등을 적은 별지 제33호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 또는 별지 제33호의2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를 신청인에게 내줘야 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9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 중 별표 4 제1호나목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를 생략한다.

③ 법 제23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신규로 받아야 하는 시설(해당 시설이 설치되어 현장확인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최근 3년 이내에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성 및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시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 일시·목적·항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통보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⑤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의3서식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는 수정·보완한 자료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정·보완을 요청받은 자가 제출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수정·보완한 자료를 제출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자(부적합 통보 대상 취급시설을 계속해서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3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

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⑧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23조제8항 전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지역사회와의 공조 및 주민의 보호·대피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및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9조의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등) ①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의 점검 방법 및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점검: 1년 주기
2. 현장점검(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사업장만 해당한다): 5년 주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받은 사업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중 특별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면점검 결과 특별이행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때
3.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특정 유해화학물질이나 공정을 대상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때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점검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그 점검 결과를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법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을 받은 자는 조치기한 내에 해당 조치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내용·방법·시기 및 점검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4. 1.]

제20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4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2.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
3.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내 사업장 또는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이 비상대응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법 제23조의4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자료는 제외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 4. 1.]

제20조의2 삭제 <2021. 4. 1.>

제20조의3 삭제 <2021. 4. 1.>

제20조의4 삭제 <2021. 4. 1.>

제20조의5 삭제 <2021. 4. 1.>

제20조의6 삭제 <2021. 4. 1.>

제21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그 외벽부터 「건축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경계 또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의 생태·경관보호지역의 경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배치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1조의2(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의 특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안전성에 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안전성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별표 5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로서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하기 위한 사업장의 물리적 공간이 부족하여 대규모의 이설이 불가피하거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취급시설
   가.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나.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다. 사고대비물질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취급시설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나목에 따른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물질은 제외한다)로 지정·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물질을 취급해 온 시설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취급시설
   가. 취급시설의 설치에 관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어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나.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한 경우와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안전성 평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별표 5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사유 및 별표 5의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안전성이 확보되었는지를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하여 평가
2. 현장평가: 해당 취급시설의 설치 조건 및 안전성 확보 수준이 서면평가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여 평가

④ 제1항에 따라 해당 취급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관리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적용하려는 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안전성 평가의 결과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성 평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5. 30.]

제22조(검사기관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4. 9., 2025. 10. 1.>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관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기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 및 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검사와 안전진단에 대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기관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제23조(취급시설의 정기·수시검사 등)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시설의 신설·증설, 위치 변경 및 적용받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기준의 변경을 수반하는 취급 유해화학물질의 변경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급시설의 변경을 포함한다)를 마친 자는 해당 시설을 가동하기 전(취급시설의 변경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를 말한다)에 검사기관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치검사(이하 "설치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며,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4호서식의 설치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②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2025. 8. 7., 2025. 10. 1.>
1.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가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1년
2.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1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중 나위험도 및 다위험도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년

3. 별표 4 비고 제2호에 따른 2군 사업장 내 취급시설: 3년
4.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는 사업장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취급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4년
5.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취급시설: 운반하는 유해화학물질 및 차량의 종류 등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3년 이내의 기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같은 항에 따른 기간(제5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마다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검사기관으로부터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5. 8. 7.>

1. 다음 정기검사 기한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한다)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나. 최근 3년간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2.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한 자

④ 제3항에 따라 정기검사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에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7.>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연장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5. 8. 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법 제2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이하 "수시검사"라 한다) 대상임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요인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과 관계되지 않는 등 수시검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5. 8. 7.>

⑦ 제6항 본문에 따라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받은 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 8. 7.>

⑧ 법 제24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⑨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은 검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6호서식의 정기검사(수시검사) 결과통지서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5. 8. 7.>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 규정된 자가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제1항 및 제9항에 따른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서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안전원장
2. 제1호 외에 설치검사,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내용·방법·절차 및 신청 등에 관한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⑪ 법 제24조제4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험생산용 설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설비로서 연속적으로 60일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설비를 말한다.<신설 2020. 9. 29., 2025. 8. 7., 2025. 10. 1.>

1. 설비의 작동방식이 회분식(回分式)인 경우: 단위설비의 1회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2. 설비의 작동방식이 연속식인 경우: 단위설비의 시간당 처리용량이 10킬로그램 이상에 해당하는 설비

⑫ 법 제24조제4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에 따른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취급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8. 7., 2025. 10. 1.>

제24조(안전진단 등)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4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이하 "안전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5. 8. 7.>

②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법 제2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2. 제23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취급시설

③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란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안전진단을 받은 자는 직전 안전진단 실시 후의 네 번째 정기검사 기한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④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별지 제37호서식의 안전진단결과통지서에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안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25조(취급시설 개선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취급시설 개선명령서에 개선사항 상세내역을 첨부하고 이행기간을 적어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 시급성 및 공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개선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행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등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서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수정·변경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행기간 내에 개선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그 이행계획을 모두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0호서식의 이행결과 보고서에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현장을 방문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하되, 법 제24조제2항·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하여 이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8. 10. 26., 2025. 8. 7.>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명령서를 받은 자는 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시설의 가동을 중지하여야 하고 가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해당 시설을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점검대장에 기록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6조제2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 누출검지설비,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ㆍ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6. 유해화학물질 저장ㆍ보관설비의 부식ㆍ손상ㆍ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ㆍ누출이 있는지 여부
7.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를 말한다)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③ 법 제26조제3항에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취급시설"이란 법 제24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5. 8. 7., 2025. 10. 1.>

제4장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개정 2025. 8. 7.>

제2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 ① 법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제23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5. 8. 7.,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2. 한 번에 1톤을 초과하는 수량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려는 자

②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1., 2025. 8. 7.>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2.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한다)
4.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5. 다음 각 목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6.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3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2025. 8. 7.>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삭제<2025. 8. 7.>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6과 같다.<개정 2025. 8. 7.>

⑤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5일을 말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⑥ 법 제28조제4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위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1. 4. 1., 2025. 8. 7., 2025. 10. 1.>

⑦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해화학물질별수량 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기준 이상 하위 규정수량 기준 미만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5. 8. 7., 2025. 10. 1.>

⑧ 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 8. 7.>

1. 법 제28조제1항제2호의 서류
2.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서류

⑨ 제8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5. 8. 7.>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제목개정 2025. 8. 7.]

제28조(허가증 및 신고증의 발급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4항 본문에 따라 영업허가를 하거나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5. 8. 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허가증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허가증등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증등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8. 7.]

제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8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1. 4. 1., 2022. 1. 10., 2025. 8. 7.>

1.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가목과 나목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 용량 또는 운반시설 용량이 증가된 경우
   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 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다.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 및 이 항 제2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
   바. 삭제<2025. 8. 7.>
2.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변경 후의 취급량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하는 사고시나리오 규정량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 또는 사무실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나. 시장출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시범생산(생산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으로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일시적으로 변경된 경우
   다. 같은 사업장 내에서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신설·증설·부지 경계로의 위치 변경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변경이 있는 경우(총괄영향범위가 확대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이 증가한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을 변경한 경우

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취급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운반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누적된 증가량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업장의 명칭·대표자·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나.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구분별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이 증가된 경우

다.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가 증가된 경우

라.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추가되거나 그 양이 증가된 경우로서 최대보유량이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이상 하위 규정수량 미만인 경우

②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같은 조 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마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고, 같은 항 제2호나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사업장의 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는 제외한다)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18. 10. 26., 2020. 9. 29., 2021. 4. 1.,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삭제<2025. 8. 7.>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시범생산 계획서(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이하 "장외 평가정보"라 한다)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유로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검사기관에서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4. 1., 2025. 8. 7.>

④ 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2025. 8. 7.>

1.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2. 설치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

⑤ 삭제<2025. 8. 7.>

⑥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신설 2022. 1. 10., 2025. 8. 7.>

1. 삭제<2025. 8. 7.>
2. 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3. 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⑦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45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증 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 결과서를 받은 이후에 별지 제47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개정 2021. 4. 1., 2022. 1. 10., 2025. 8. 7.>

⑧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자가 이 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에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 8. 7.>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절차, 시범생산계획서 및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6. 4. 7., 2021. 4. 1., 2022. 1. 10., 2025. 8. 7., 2025. 10. 1.>

[제목개정 2025. 8. 7.]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등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 9. 29., 2025. 8. 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0. 9. 29., 2025. 8. 7.>

[제목개정 2025. 8. 7.]

제30조의2(본인 인증 방법 등)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구매자에 대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1. 팩스 또는 우편으로 수신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확인
2.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확인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라 지정된 본인확인기관을 통한 본인확인

[본조신설 2017. 12. 27.]

제31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면제) 법 제29조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5. 30., 2017. 12. 27., 2020. 9. 29., 2021. 4. 1., 2025. 8. 7., 2025. 10. 1.>

1. 삭제<2025. 8. 7.>
2. 삭제<2025. 8. 7.>
3. 삭제<2025. 8. 7.>
4. 삭제<2025. 8. 7.>
5.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자
6.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7.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로서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자
8. 제19조제2항제4호 또는 제9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9. 제5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목개정 2025. 8. 7.]

제31조의2(유해화학물질등 판매자의 고지 방법 등) 유해화학물질등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에게 법 제2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하는 내용을 유해화학물질등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또는 별지 제47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를 제공(전자문서를 통한 제공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추가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5. 8. 7.>

1. 진열·보관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장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것

[본조신설 2017. 12. 27.]
[제목개정 2025. 8. 7.]

제31조의3(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5. 8. 7.>

1. 제27조제2항제2호의 서류
2. 제27조제2항제3호의 서류(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을 그 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개정 2019. 11. 29., 2025. 8. 7.>

[본조신설 2017. 12. 27.]
[제목개정 2025. 8. 7.]

제31조의4(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9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상호, 대표자 성명 또는 사업장 소재지(사무실 소재지를 포함한다)가 변경된 경우
2.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새로이 추가되는 경우(법 제29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9조의3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7호의5서식의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 11. 29.,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변경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신고확인증에 변경내용을 기재하여 그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내줘야 한다.

<개정 2019. 11. 29., 2025. 8. 7.>
[본조신설 2017. 12. 27.]
[제목개정 2025. 8. 7.]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관리

제32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① 법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수급인(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업무의 수행을 시작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5. 30., 2020. 9. 29.>

1. 신청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해야 한다)
3. 화학사고 안전관리 계획서
4. 긴급 도급 사유서(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신설 2020. 9. 29., 2025. 10. 1.>

1.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2. 도급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3. 도급기간

③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을 변경하기 전에 별지 제48호의2서식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 9. 29.>

1. 변경된 도급계획서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④ 법 제31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능력과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2025. 10. 1.>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완비할 것
2.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을 준수할 것

3.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능력과 기준을 맞출 것

⑤ 법 제31조제5항에서 "수급인에게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 9. 29., 2025. 10. 1.>

1. 도급계약 등에서 정한 공사·보수 기간의 단축
2. 심야시간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사·보수(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게 공사·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우려에 따른 수급인의 정당한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및 취급시설의 공사·보수·운영 지시
4. 화학사고 발생 사실 또는 발생 우려의 은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33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준) 법 제32조제1항에서 "해당 영업자의 유해화학물질 취급량 및 종사자 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5. 30., 2025. 8. 7., 2025. 10. 1.>

1. 삭제<2025. 8. 7.>
2. 삭제<2025. 8. 7.>

제34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신고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사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별지 제50호서식의 선임·해임·퇴직서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51호서식의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에 필요한 기간의 연장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를 대리하는 자의 이력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④ 제3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승인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53호서식의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5조(안전교육기관)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4. 7., 2017. 5. 30., 2020. 9. 29., 2025. 8. 7., 2025. 10. 1.>

1. 화학물질안전원

2. 삭제<2022. 1. 1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결과 안전교육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전문기관

가. 화학물질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30일 이상 수료한 전문가 또는 환경·화학·화학공학 분야의 박사학위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화공·가스·대기관리·수질관리·폐기물처리·산업위생관리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나. 동시 수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교육장을 갖출 것

다. 가목에 따른 전문가 외에 화학물질 안전 분야와 관련된 실무·연구 또는 강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을 보유하는 등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일 것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교육담당자는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 10.>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2. 1. 10.>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기관이 제1항제3호 각 목의 요건과 안전교육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5. 8. 7.,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의 전문성에 관한 평가 기준과 방법, 그 밖에 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제36조(안전교육계획) ①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기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10.>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교육의 기본방향
2. 안전교육 수요 및 장기 추계
3. 안전교육 과정의 설치 계획
4. 안전교육 교재 편찬 계획
5. 안전교육 성적의 평가방법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육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해당 교육기관에 통보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5. 8. 7., 2025. 10. 1.>

제37조(안전교육의 실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시간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17. 5. 30., 2025. 8. 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이행해야 하는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16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1. 4. 1.>

③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및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화학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8시간의 안전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신설 2016. 4. 7., 2017. 5. 30., 2025. 8. 7.>

④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종사자(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실시하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매년 1회, 2시간 이상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17. 5. 30., 2025. 10. 1.>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은 별표 6의4와 같다.<신설 2016. 4. 7., 2017. 5. 30., 2025. 8. 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실시한 교육기관 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매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 4. 7., 2022. 1.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내용 및 결과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자 명단
3.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강사 이력서

⑦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4. 7., 2025. 10. 1.>

제38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시 조치사항)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30일 이상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30일 이상 중단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중단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부인의 출입이 없도록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취급시설을 밀폐할 것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주기적인 자체점검 계획을 마련할 것
4. 저온 동파로 인한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온 대책을 마련할 것
5. 취급 중단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잔여 유해화학물질을 처분할 것

②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방식을 수동으로 변경함으로써 취급자가 직접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도록 변경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방식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2.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수계·토양 등 환경으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39조(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그 영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려 하거나 60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취급시설 가동중단 예정일 10일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7., 2025. 8. 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이 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사후 신고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2. 27.>

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미만으로 예정하여 해당 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였으나 보수작업이 추가되는 등 당초 가동중단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예고 없는 정전 등으로 정상적인 시설 가동이 불가능함에 따라 화학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긴급하게 중단한 경우: 해당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한 날부터 10일 이내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7.>

제4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2항 및 제35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 7. 27.>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및 별표 7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개선명령서에 개선조치 상세내역을 첨부하여 그 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41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6호서식의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소

지자가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2. 1. 10., 2025. 8. 7.>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삭제<2025. 8. 7.>
4.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① 법 제3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공동 활용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공동 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8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대표업소 및 공동 활용 업소
2. 공동 활용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 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 범위
4.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중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동 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등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5장 화학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1절 사고대비물질의 지정 등

제44조(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40조 본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45조 삭제 <2021. 4. 1.>

제46조 삭제 <2021. 4. 1.>

제47조 삭제 <2021. 4. 1.>

제47조의2 삭제 <2021. 4. 1.>

제48조 삭제 <2021. 4. 1.>

제2절 화학사고의 대응 등

제49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별 유출량·누출량 및 화학사고 양태(樣態)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은 즉시 별지 제63호서식에 따라 화학사고의 원인·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50조(현장수습조정관의 요건) 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현장수습조정관"이란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갖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제50조의2(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이하 "현장수습조정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 중지를 명령(이하 "가동중지명령"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1. 화학사고에 따른 화재·폭발 및 누출 등으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거나 가동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화학사고로 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대기, 수계 또는 토양 오염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현장수습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2서식의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한 후 별지 제63호의3서식의 가동중지표지를 그 시설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가동중지명령서를 통지하기 전에 가동중지표지를 해당 시설에 부착하고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가동중지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근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당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0조의3(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등)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 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가동중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가동중지명령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가동중지명령을 받은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한 결과 추가적인 위험이나 환경오염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63호의4서식에 따른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7.]

제51조(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조치명령서에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를 첨부하여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기간은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조치 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5호서식의 이행계획서에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서를 받은 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이행결과서에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행결과서를 받은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이행 실태를 현장에서 확인·점검한 후 별지 제67호서식의 이행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52조(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국내외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7.>

1. 화학물질의 명칭(국문명, 영문명, 유사명 등),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및 국제연합 번호 등 화학물질 일반정보
2. 유해화학물질등, 위험물 및 독성가스 등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화학물질 정보
3.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
4.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 등에 관한 정보

5. 화학물질의 용도·위험성·방재요령 등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
6. 화학물질의 누출·유출시 이격거리, 화재 시 이격 및 방호활동거리 등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정보
7. 화학사고 발생 이력에 관한 정보
8.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 제품의 국내외 정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 등과 관련된 정보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안전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각각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공유하여 제1항 각 호의 국내외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분석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처리 업무) 법 제48조의2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에 관한 업무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에 관한 업무
5.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및 해제에 관한 업무
6.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의 취급에 관한 허가, 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업무
8.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업무
10.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제출·검토 및 위험도·적합여부 통보에 관한 업무
11. 법 제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검사 및 안전진단에 관한 업무
12.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영업신고,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3.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5.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에 관한 업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및 휴업·폐업 신고 등에 관한 업무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업무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에 관한 업무
19의2.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의 선임·해임 신고에 관한 업무
20. 법 제49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적보고 등에 관한 업무
21.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의 신청에 관한 업무

[본조신설 2022. 1. 10.]

제52조의3(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48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법 제48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선임받을 업무 및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내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신고증을 내줘야 한다.

⑤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영 제20조의3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53조(유해화학물질등 취급자의 실적 보고 등)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 4. 7., 2017. 12. 27., 2021. 4. 1., 2024. 4. 9., 2025. 8. 7.>

1.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1의2.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69호의2서식
2.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0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3. 삭제<2025. 8. 7.>
4.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2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5.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3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6. 법 제49조제1항제7호 또는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 별지 제74호서식의 세부실적보고서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1. 4. 1., 2024. 4. 9.>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실적보고서 외에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2025. 10. 1.>

④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영 별표 1 제1호라목2)·3)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할 때 이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1. 4. 1., 2025. 10. 1.>

[제목개정 2025. 8. 7.]

제54조(출입·검사)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7. 5. 30., 2018. 11. 29., 2021. 4. 1., 2025. 8. 7., 2025. 10. 1.>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및 제2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실 여부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2. 제29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시범생산 계획서의 사실 여부 및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의3. 삭제<2021. 4. 1.>

5의4. 삭제<2021. 4. 1.>

6.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25조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8. 법 제3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9.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0. 삭제<2021. 4. 1.>
11.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12. 법 제44조에 따라 화학사고 현장 대응을 하려는 경우
13.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5조(화학물질 검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5. 8. 7., 2025. 10. 1.>

1. 국립환경과학원
2. 화학물질안전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
5.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56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확인증명서 및 제조자·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중 유해화학물질등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75호서식부터 제78호서식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제1호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7. 5. 30., 2019. 4. 17.>

제57조(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2025. 10. 1.>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의 목록

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24. 4. 9.,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30., 2019. 11. 29., 2024. 4. 9.,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신청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17. 5. 30., 2025. 10. 1.>

제58조(보호자료의 관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30., 2024. 4. 9., 2025. 10. 1.>

제59조(수수료) ①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0조(보고) ①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및 협회의 장이 영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및 보고일 등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7. 12. 27., 2025. 10. 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협회의 장은 영 제22조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와 관련하여 매년 1월 31일을 기준으로 2월 1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보고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종합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7., 2025. 10. 1.>

제6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 4. 1., 2025. 10. 1.>

1. 삭제<2025. 4. 11.>
2. 삭제<2025. 4. 11.>
3. 삭제<2025. 4. 11.>
4.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2021년 6월 30일
5.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등: 2015년 1월 1일

부칙 <제583호,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제18조제3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수출승인서를 갱신·교부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6년 12월 31일
4.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을 연간 1,0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한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이상 취급하는 자: 2018년 12월 31일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연간 100톤 미만 취급하는 자: 2019년 12월 31일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 중인 자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6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와 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7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 또는 취급제한·금지물질관리자를 임명한 경우에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4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안전성향상계획의 작성·제출 대상자: 2015년 12월 31일
2.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하는 자: 2015년 12월 31일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대상자: 2016년 12월 31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에 해당하는 자: 2017년 12월 31일

제11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자로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시설·장비·설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로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따른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별표 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②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④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1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하며, 제89조의3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통지받은 경우”로 하고, 제92조의5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로 한다.

⑦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⑧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호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 및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공장

⑨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⑪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⑫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⑬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시설、장비 등의 내역서 사본 1부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별표 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별표 1에 따른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정한다]

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⑮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1^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항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143조의3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

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유해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1조”를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로 한다.

1(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로 한다.

2)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화학물질 관리법령 개정·운영에 관한 사항

2. 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25.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1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47호,2016.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관련 부분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변경허가 시 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추가(추가하려는 유해화학물질 품목의 취급수량이 제1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하기 위하여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 제583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668호,2016. 7.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은 제20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본다.

부칙 <제701호,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제35조, 별표 4 제2호가목,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지 제33호의5서식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화학물질 취급정보의 비공개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소명서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 신고·허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9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대수 또는 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서 또는 변경신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비고 제1호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이 되거나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해화학물질의 운반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 별표 1 제28호 및 별지 제9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중 제4호, 제6호, 제8호, 제15호, 제19호, 제40호 및 제41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1호, 제72호, 제74호, 제78호부터 제82호까지, 제84호, 제86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영위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7.>

제1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2018년 1월 1일 당시 별표 10 제70호부터 제97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해당 각 호에 따른 수량 기준 이상으로 취급하는 자 및 사고대비물질이 항상 채워진 상태로 운전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도금조, 세척조 등)을 취급하는 자로서 별표 10 비고 4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이 된 자는 2019년 6월 30일까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7 제2호저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또는 3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7 제2호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08호,2017. 7. 3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0호,2017.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약 판매업 신고를 위한 준비행위)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1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약 판매업 신고서 및 서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중단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5호,2018. 1. 17.>(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3)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3”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13”으로 한다.

1(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74호,2018.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3. 10. 4.>

제3조(기술인력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술인력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78호,2018.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 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상시근무 인력으로 고용된 사람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별표 4의2 제1호다목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자 교육 심화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날에 최초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 점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제47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대한 최초점검을 실시한다.

1. 2016년 6월 30일 이전에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0년 11월 29일
2.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11월 28일까지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 2021년 11월 29일

제4조(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4의2 제1호가목1)의 개정규정에 따른 필수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804호,2019. 3. 29.>

이 규칙은 2019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5호,2019. 4. 17.>(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3항 중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을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831호,2019. 11. 29.>

이 규칙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7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9. 12. 2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6호,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안전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1호,2021.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3조(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 및 제46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종전의 제29조제1항제1호라목, 제47조의2 및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9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 취급시설의 위험도를 통보받은 자의 취급시설의 위험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고위험도 취급시설: 가위험도
2. 중위험도 취급시설: 나위험도
3. 저위험도 취급시설: 다위험도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부칙 <제942호,2021. 9. 16.>(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16개 환경부령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새로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68호,2022.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제52조의2 및 별지 제42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6호,2023.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2 비고 제2호 및 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2024. 4. 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9)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9호,2025. 4. 11.>(규제 재검토기한 해제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4호,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 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정기검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정기검사 기한은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이 설치검사인 경우: 그 설치검사일
2.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이 정기검사인 경우: 그 정기검사의 기한
3. 이 규칙 시행 전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사 등이 안전진단인 경우: 그 안전진단을 받은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주기보다 짧아진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첫 번째 정기검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2회 연속 적합통보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 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진단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안전진단을 받은 적이 없는 자의 경우 첫 번째 안전진단은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고, 두 번째 안전진단부터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4조제2항에 따라 산정한 첫 번째 안전진단 시기가 정기검사 기한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안전진단 후에 예정된 첫 번째 정기검사 기한으로 연기하여 실시한다.

제4조(종업원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 비고 제2호 및 별표 6의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이상

으로 변경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를 말한다.

제6조(취급시설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시 검사결과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9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이 규칙 시행 이후 검사결과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4호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유해화학물질등"이라 한다)"로 한다.

제30조의4제1항제5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등"으로 한다.

②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에 따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취급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의 대상인 사업장"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호가목1)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유독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 제2조제4호 또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한다.

③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 제27조제2항·제8항"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또는 제한물질"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3항 및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날

별표 2 제2호의 종류란 중 "유해화학물질"을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호의 대상범위란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별표 3 비고 제5호 중 “ 유독물 ”을 “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별표 5 제2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란 중 “ 유해화학물질 ”을 “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별표 7 비고 제4호 중 “ 유해화학물질 ”을 “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제1쪽 제1호 및 제2호나목 중 “ 유독물 ”을 각각 “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 제1쪽 제1호 중 “ 유독물 ”을 “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하고, 같은 서식 제2쪽 제2호나목 중 “ 유독물 ”을 “ 제한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④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8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별지 제13호서식 작성방법란 제4호 중 “ 폐유독물의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명칭 ”을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의 경우에는 그 명칭 ”으로 한다.
⑤ 환경관리 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 유독물관리자 ”를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로 한다.
제2조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 유독물 ”을 각각 “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1호 중 “ 유독물 ”을 “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별표 1 비고 제5호 중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을 “ 「화학물질관리법」 ”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위반사항란 중 “ 유독물관리대행기관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 ”를 “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 ”로 한다.
별표 2 제2호나목 위반사항란, 같은 호 바목 위반사항란 및 같은 호 아목 위반사항란 중 “ 유독물 ”을 각각 “ 유해화학물질 ”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 유독물관리 대행기관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5호에 해당 ”을 “ 유해화학물질관리대행기관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제5호에 해당 ”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중 “ 유독물 ”을 “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중 “ 유독물 ”을 “ 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⑥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 ”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 ”을 “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 ”로 한다.

⑦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6항제10호, 같은 항 제18호 중 "유독물질"을 각각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제9조제8항제11호 중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영업신고"로 하고, 제28조의3제2항제11호 중 "유독물질"을 "인체등유해성물질"로 한다.

⑧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2 제7호다목4)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2 제9호다목1) 중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유해화학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2호가목2)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별표 13 제7호가목1) 중 "유독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인체만성유해성물질·생태유해성물질"로 한다.

⑨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제1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2>까지 생략

<8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5항, 제5조제1항·제6항, 제6조제8항, 제7조제2항제1호·제2호, 제7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7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24조제5항, 제29조제9항, 제31조제9호, 제32조제4항제4호, 같은 조 제5항제5호, 제35조제4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4항·제7항, 제49조제1항·제2항, 제53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54조제1호·제14호, 제5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

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8조,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2항,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제5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4호, 별표 6의3 제3호마목의 교육대상란 및 같은 표 비고 제4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7 제2호터목의 위반사항란 1) 및 2)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79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작성방법란 제1호 및 별지 제81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7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0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84>부터 <98>까지 생략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

1. 취급시설 적정 유지·관리

가. 부식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거리 내에 비상시를 대비하여 샤워시설 또는 세안시설을 갖추고, 정상 작동하도록 유지할 것

나.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보관·저장시설 주변에 설치된 방류벽, 집수시설(集水施設) 및 집수조 등에 물이 괴어 있지 않도록 할 것

다. 폭발 위험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때 사용되는 장비는 반드시 접지(接地)하고,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점검할 것. 다만,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삭제 <2025. 8. 7.>

마. 앞서 저장한 화학물질과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저장하는 경우에는 미리 탱크로리, 저장탱크 내부를 깨끗이 청소하고 폐액(廢液)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바. 삭제 <2025. 8. 7.>

2. 화학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

가.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중에 음식물, 음료 등을 섭취하지 말 것

나. 유해화학물질은 식료품, 사료, 의약품, 음식과 함께 혼합 보관하거나 운반, 접촉하지 말 것

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말 것. 다만, 적절한 보안경을 착용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물과 반응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도록 해당 물질을 관리할 것

마.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은 가연성 물질과 접촉되지 않도록 하고, 열·스파크·불꽃 등의 점화원(點火源)을 제거할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사용하는 장소 주변이나 하역하는 동안 차량 안 또는 주변에서 흡연을 하지 말 것

사. 용접·용단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티의 비산(飛散)거리 이내에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지 말 것

아. 유해화학물질이 묻어 있는 표면에 용접을 하지 말 것. 다만, 화기 작업허가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자. 열, 스파크 등 점화원과 접촉 시 화재, 폭발 등 위험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용접·용단작업을 실시하지 말 것. 다만, 부득이 용접·용단 작업을 실

시할 경우에는 용기 내를 불활성가스로 대체하거나 중화, 세척 등으로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에 실시할 수 있다.

차. 밀폐된 공간에서는 공기 중에 가연성, 폭발성 기체나 유독한 가스의 존재여부 및 산소 결핍 여부를 점검한 이후에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카.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호퍼(hopper: 밑에 깔대기 출구가 있는 큰 통)나 컨베이어, 용기 등에 낙하시킬 때에는 낙하거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고체 유해화학물질의 낙하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때에는 분진을 포집(捕執)하기 위한 분진 포집 시설이 설치된 곳에서 취급해야 한다.

타. 삭제 <2025. 8. 7.>

파. 인화성을 지닌 유해화학물질은 그 물질이 반응하지 않는 액체나 공기 분위기에서 취급할 것

하. 유해화학물질을 계량하고 공정에 투입할 때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기를 포집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가 상시 가동된 상태에서 취급할 것

거. 용기에 들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공정에 모두 투입한 경우에는 용기에서 증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밀봉(密封)하여 두거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된 곳에 둘 것

너.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반응, 추출, 교반(휘저어 섞음), 혼합, 분쇄, 선별, 여과, 탈수, 건조 등의 공정은 밀폐 또는 격리된 상태로 이루어지도록 할 것

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유출·누출된 유해화학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지 않도록 차단하는 조치를 할 것

러.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차량의 접근을 통제할 것

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할 것

3. 보관·저장

가. 종류가 다른 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상호간에 필요한 간격을 둘 것

나. 폭발성 물질과 같이 불안정한 물질은 폭발 반응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보관할 것

다. 고체 유해화학물질은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액체, 기체인 경우에는 완전히 밀폐 상태로 보관할 것

4. 용기·포장

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적재·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 중으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

나. 뚜껑을 포함한 용기는 유해화학물질의 반응 등으로 인한 변형 및 손상이 없는 재질 및 강도여야 하고,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에 따라 적당한 재질, 두께 및 구조를 갖출 것

다. 운반 도중 파손되거나 유출·누출 위험이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말 것. 다만,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상 유리 등 파손 우려가 있는 용기를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운송 시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하고 포장을 견고히 하여 운반 도중 파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용기는 취급자가 사용 후 다시 잠글 수 있는 밀봉 뚜껑을 갖출 것

마.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온도, 압력, 습도와 같은 대기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

바.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용기에 담아 이동할 때에는 용기 높이의 95% 이상을 담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고 남은 빈 용기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것

5. 상차 · 하차 및 운반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운반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유출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상호반응을 일으켜 화재, 유독가스 생성, 발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과 함께 보관·운반하지 말 것

나. 차량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할 때에는 규정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200킬로미터 이상(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4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운전자를 동승시키거나 운행 중에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취할 것

다. 버스, 철도, 지하철 등 대중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지 말 것

라. 유해화학물질을 우편 또는 택배로 보내지 말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물질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을 화학물질안전원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배로 보내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시범사용 등을 위해 제조 또는 수입한 견본품

마. 차량의 운전석이나 승객이 타는 자리 옆에 유해화학물질을 두지 말고 반드시 지정된 화물칸으로 이송하고 화물칸은 덮개를 덮을 것

바.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할 때에는 화학물질의 증기, 가스가 대기 중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할 것

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도중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화재, 폭발, 유출·누출에 대한 위험방지 조치를 할 것

아. 고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 시에는 비산하는 분진이 없도록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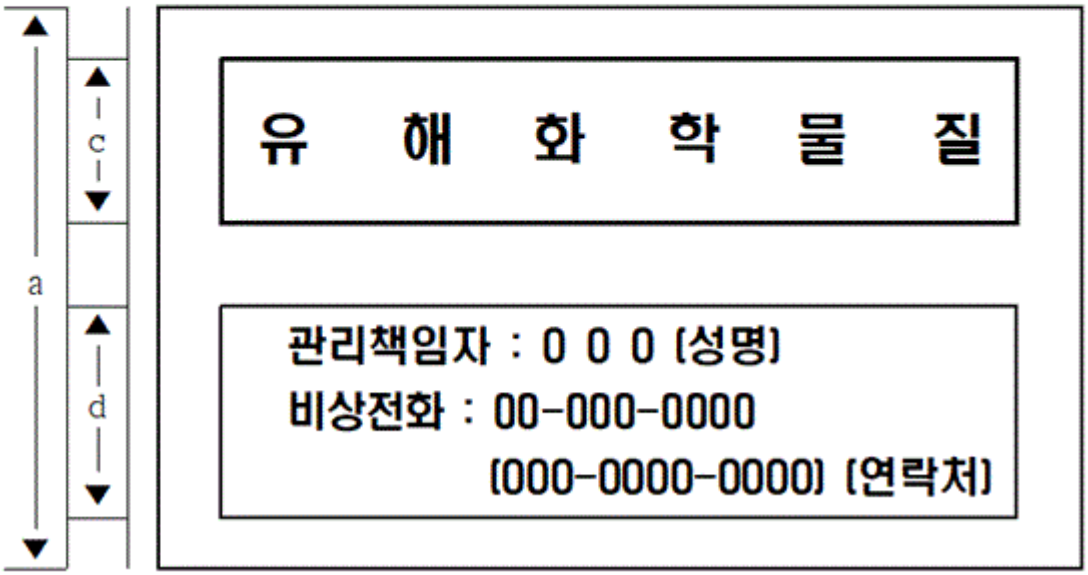
비고: 위 기준 외에 유해화학물질별 구체적인 취급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25. 8.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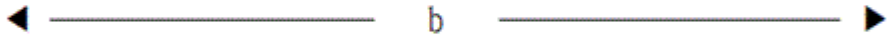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제12조제2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물질명	국제연합번호	그림문자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4)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는 빨간색으로 하고, 관리책임자와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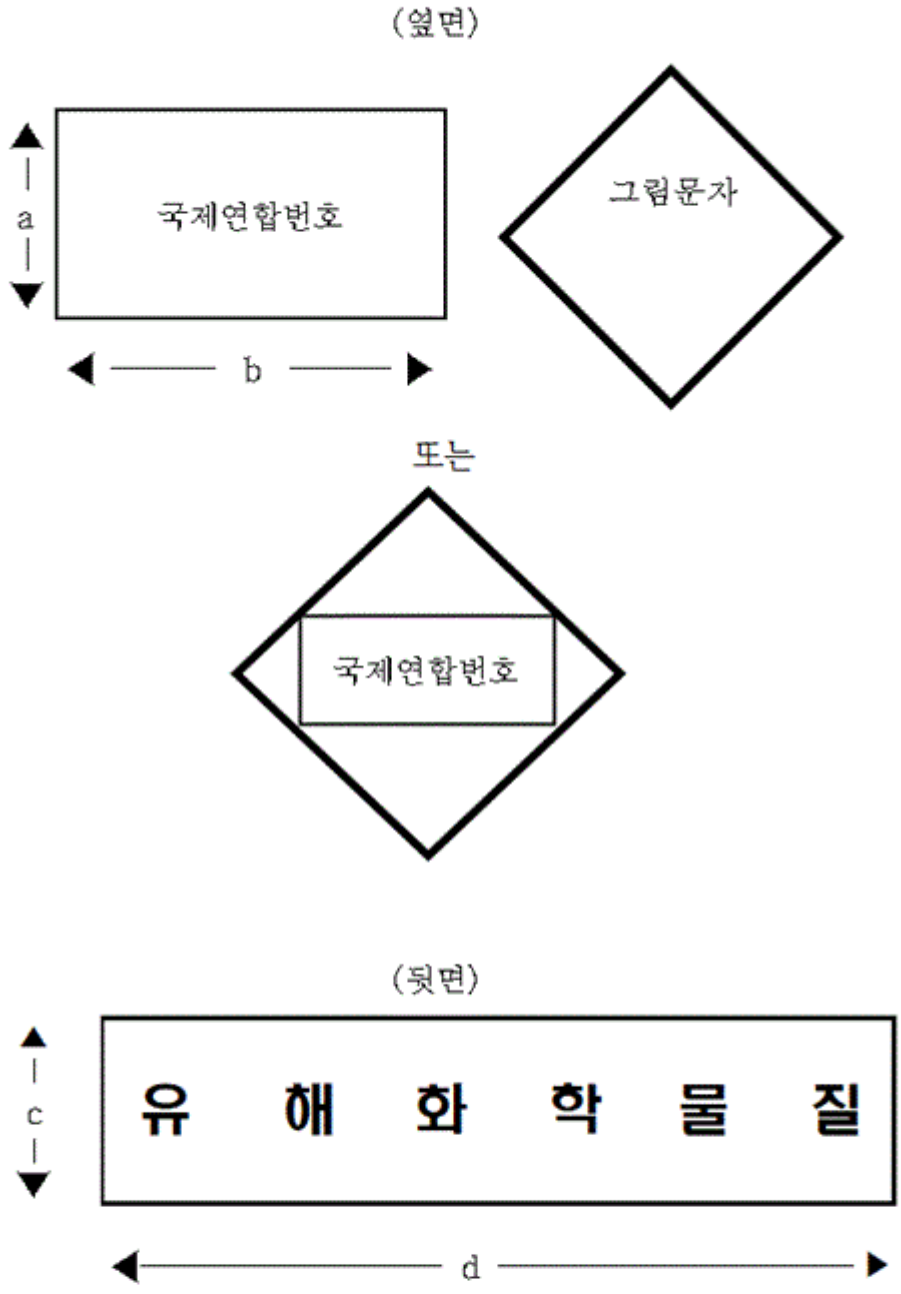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시설 또는 진열·보관 장소의 입구 또는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해야 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가. 1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나)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로 한다.

3) 글자크기: 국제연합번호의 글자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

도록 해야 한다.

4) 그림문자: 국제연합(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RTDG),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6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취급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험물 운송과 관련된 기준에 따른 운송그림문자(이하 "운송그림문자"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림문자와 관련된 유해성·위험성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7)의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가 높은 두 개의 물질에 대해서만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를 표시할 수 있다.

5) 색상: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는 검정색으로 하고, 뒷면의 유해화학물질 글자는 빨간색으로,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으로 해야 한다.

6) 표시위치: 양 옆면과 뒷면의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를 부착 또는 각인해야 한다.

7) 유해성·위험성 우선순위

가) 방사성 물질

나) 폭발성 물질 및 제품

다) 가스류

라) 인화성 액체 중 둔감한 액체 화약류

마) 자체 반응성 물질 및 둔감한 고체 화약류

바) 자연 발화성 물질

사) 유기과산화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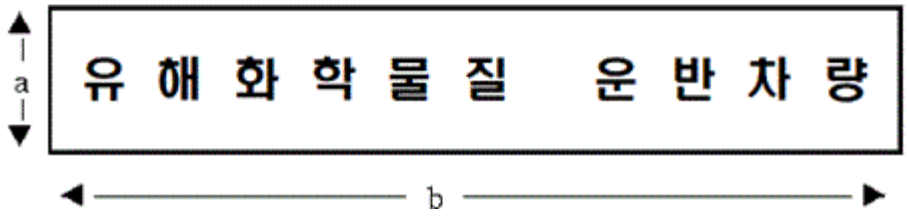
아) 독성물질 또는 인화성 액체류

비고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1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1) 양식



2) 양식크기: a=10~20cm, b=30~80cm 이어야 한다.

비고

국외로 수출하거나 국내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컨테이너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 기준」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일반 작성 원칙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9)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표시한 경우에는 이 호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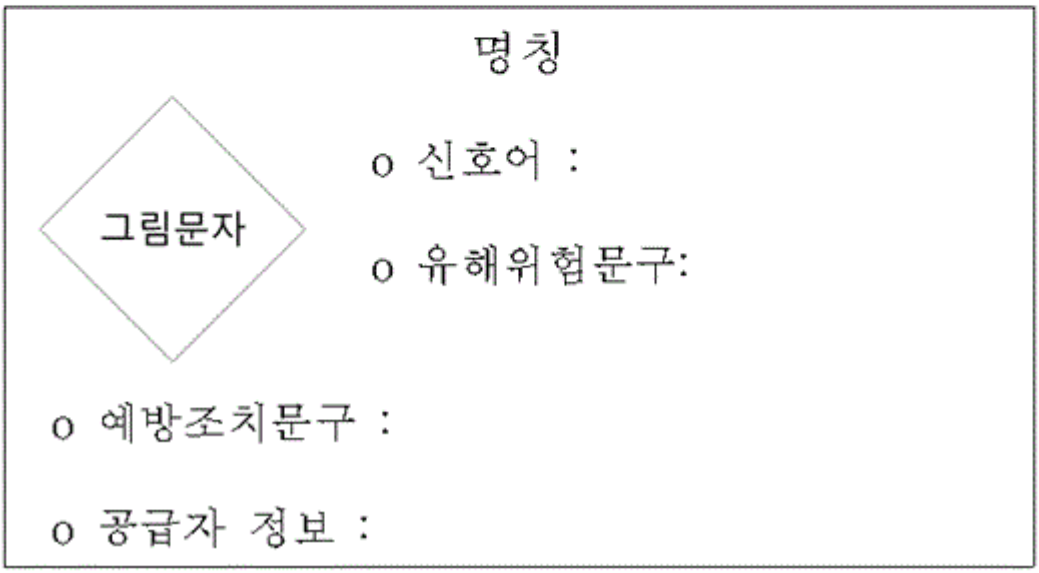
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한 경우

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인 경우: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표시한 경우

10)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나. 양식 및 규격

1) 양식



2) 규격

가) 용기의 용량별 크기

용기·포장의 용량	크기
5ℓ 미만	용기·내부 포장의 상하면적을 제외한 전체 표면적의 5% 이상
5ℓ 이상 50ℓ 미만	90 ㎠ 이상
50ℓ 이상 200ℓ 미만	180 ㎠ 이상
200ℓ 이상 500ℓ 미만	300 ㎠ 이상
500ℓ 이상	450 ㎠ 이상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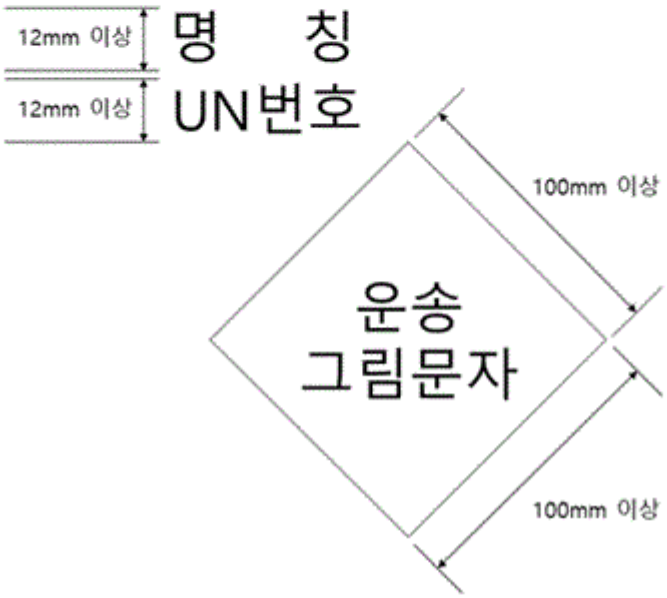
라) 전체 크기의 바탕은 흰색 또는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으로 하고, 글자(그림문자는 제외한다)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한다. 다만, 용기·포장

자체의 표면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경우에는 글자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해야 한다.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1) 양식



2) 규격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100㎜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라. 표시방법

1) 이중용기(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외부용기

외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다목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나) 내부용기

내부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림문자를 운송그림문자로 대체할 수 있다.

비고

가) "이중용기"란 1개의 용기 안에 1개 이상의 용기가 들어 있는 용기를 말한다.

나) "외부용기"란 이중용기에서 가장 바깥쪽의 용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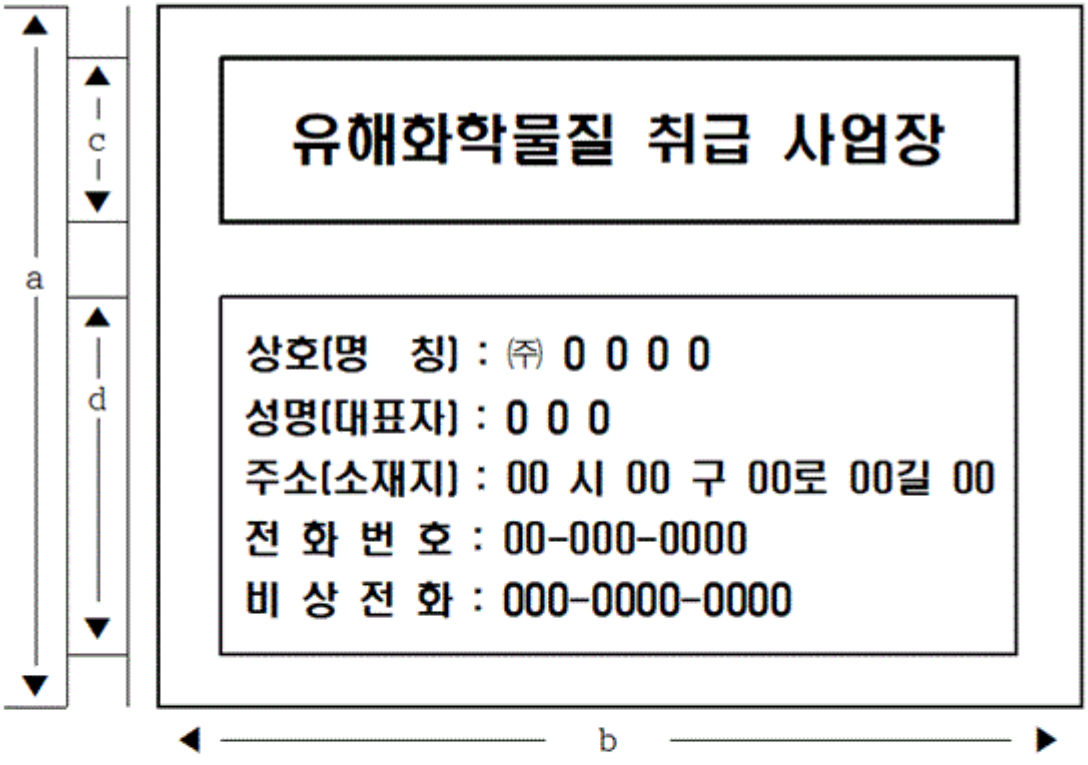
다) "내부용기"란 운반을 위하여 외부용기가 필요한 용기로 외부용기 내부의 모든 용기를 말한다.

2) 단일용기(이중용기 외의 용기를 말한다)

용기에는 나목에 따라 표기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운송그림문자와 조합하여 하나의 표시로 나타낼 수 있으며, 운송그림문자와 같은 유해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가. 양식



나. 양식크기: a=50㎝ 이상, b=(3/2)a, c=(1/4)a, d=(1/2)a

다. 글자크기: 유해화학물질 등 글자의 높이는 테두리 전체 높이의 6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색상: 바탕은 흰색으로,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글자는 빨간색으로, 상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비상전화의 글자는 검정색으로 해야 한다.

마. 표시위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출입구, 사업장의 부지경계선 등 외부로부터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출입 또는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여러 방향일 때에는 그 장소마다 게시해야 한다.

바. 비상전화: 상시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12조제3항 관련)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해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유해성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이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란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와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이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란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란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란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란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상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불씨와 같은 점화원을 잠깐만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나 마찰에 의해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란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이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

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이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란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이란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이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이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이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이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이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變異原性) 물질"이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이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이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이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

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자.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이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이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이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삭제 <2025. 8. 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2. 1. 10.>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제19조제3항 관련)

1. 기본정보

가. 사업장 일반정보

1) 사업장 일반정보는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1군·2군 사업장 해당 여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취급시설 개요는 사업장 전체를 기준으로 장치·설비의 종류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 정보

1)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명세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별 물리적·화학적 성질 및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 분류기준에 따른 구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대표 유해성 정보는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중 유해성이 가장 큰 대표 물질 2종에 대한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정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취급시설의 입지정보

1) 취급시설의 입지정보는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및 주변 환경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전체배치도는 사업장 내 건물 및 설비의 위치, 건물 간 거리,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 배치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설비배치도는 단위공정 또는 단위공장별로 각 설비의 위치, 주요 설비의 설치 높이, 각 설비 간 거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전체배치도상의 위치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4) 주변 환경정보는 사업장 인근 지역 시설물의 위치도·명세, 주민분포 현황 및 자연보호구역 지정 현황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시설정보

가. 공정안전정보

1) 공정안전정보는 공정개요, 공정도면,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공정개요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절차·방법의 흐름에 따라 공정설명 자료를 작성한다.

3) 공정도면에는 주요 동력기계, 장치 및 설비의 표시 및 명칭, 주요 계측장비 및 제어 설비, 물질 및 열에너지 수지, 운전온도 및 운전압력 등의 사항들이

포함된 공정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를 작성하고, 단위공정 또는 단위설비들이 배관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를 추가로 작성한다.

4) 장치·설비의 목록 및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장치 및 설비의 명칭과 용량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안전장치 현황

1) 안전장치 현황은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확산방지 설비 현황 및 배치도는 유해화학물질 누출 시 누출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류벽 및 트렌치 등 시설의 목록, 용량 및 배치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명세 및 배치도는 가스감지기, 누액감지기 등의 고정식 유해감지시설의 종류와 설치위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는 단위공정별로 적정 용량 및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배출물질 처리시설 현황은 스크러버(scrubber: 세정기) 및 플레어 스택(flare stack: 배출가스연소탑) 등 배출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적정한 성능과 용량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장외 평가정보

가. 사고시나리오 선정

취급시설의 용량 및 취급시설별 취급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사고시나리오 작성대상 설비를 선정하여 예비위험 분석기법을 적용한 공정위험성 분석을 하고,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대상설비와 사업장의 총괄영향범위를 산정하는 내용 등을 작성한다.

나. 사업장 주변지역 사고영향평가

사고시나리오에 따른 총괄영향범위 내에 있는 주민 수,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목록 등 현황 및 사고영향의 분석·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위험도 분석

사고시나리오별 사고 영향과 사고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 후 작성한다.

4. 사전관리방침

가. 안전관리계획

1) 안전관리계획은 안전관리운영계획,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 화

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 및 자체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안전관리운영계획은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안전관리 방침과 대책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의 실행 및 변경관리는 수립된 계획의 주기적인 검토 및 개선·보완, 변경사항 발생 시 현행화를 위한 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계획은 화재·폭발, 독성물질 누출, 환경오염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종류, 대상 및 횟수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자체점검계획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비상대응체계

1) 비상대응체계는 비상연락체계와 비상대응조직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비상연락체계는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 대응 담당자, 공동 대응을 위해 연락 가능한 인근 사업장, 유관기관의 목록 및 신고·연락 체계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비상대응조직도는 사고 대응·수습·복구 단계별 대응 부서별 편성인원과 임무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내부 비상대응계획

가.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

1) 사고대응 및 응급조치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가동중지 권한 및 절차,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 및 응급조치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방재 인력·장비·물품 운용계획은 화학사고 발생 시 투입되는 방재인력 및 장비 현황, 개인보호구 등의 물품 보유현황, 방재장비·물품 배치도 및 관리·유지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업장 내부 경보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유지관리방법 및 경보전달 방법·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응급조치계획은 저장, 운반(탱크로리)·이송(배관), 보관시설, 반응·교반 등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 취급공정별로 화학사고 발생 시 자동 차단 또는 단계별 차단, 확산방지 및 2차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과 비상대피계획 및 응급의료계획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화학사고 사후조치

1) 화학사고 사후조치는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과 사고복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사고원인조사 및 재발방지계획은 사고조사팀의 구성·임무, 사고조사보고

서의 작성 항목·방법 및 개선대책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3) 사고복구계획은 사고현장을 복구하기 위한 조직·임무, 환경책임보험 가입이력 및 가입여부, 환경복원전문업체의 활용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6. 외부 비상대응계획

가. 지역사회 공조계획

화학사고의 예방·대비·대응·수습·복구를 위한 정보 공유, 지역사회와의 소통, 화학사고 발생 시 공동대응 등 지역사회·지역비상대응기관·인근사업장 등과의 공조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나.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

1) 주민보호 및 대피계획은 주민에 대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 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 응급의료계획 및 주민대피 장소·방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피경보 및 전달체계는 경보시설의 종류 및 유지관리 방법, 경보전달 방법·담당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보전달체계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3)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행동요령은 사고유형 및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따른 대피 시 유의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4) 응급의료계획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목록 및 비상연락망,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병상, 환자후송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주민대피 장소·방법은 집결지와 대피장소를 구분하여 사업장과의 거리, 이동경로, 이동시간, 수용가능 인원, 실내·지상·지하 여부,「재해구호법」에 따른 임시주거시설 해당 여부, 수송계획, 비상연락망 및 대피장소관리 담당자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다. 지역사회 고지계획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대상이 되는 사고시나리오별 총괄영향범위 내 주민의 목록 및 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2) 고지정보는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된 내용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작성한다.

비고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는 사업장 전체 단위로 작성하며,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운영단위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단위별로 구분하여 제출할 수 있다.

2. 제1호가목1)의 1군·2군 사업장의 구분은 아래 표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

사업장 구분	기준
가.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제19조제8항에 따른 주요취급시설이 있는 사업장
나.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제출 대상으로서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3.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을 제외하고 작성할 수 있다.

4. 제4호나목, 제5호 및 제6호의 작성 항목을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작성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같은 지역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해당 항목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할 때에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제6호에 따른 외부 비상대응계획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6.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 및 방법·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3]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4]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1. 설치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각 설비는 온도·압력 등 운전조건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설비의 성능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 및 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제어설비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조건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되어야 하고, 현장에서 직접 또는 원격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배관설비의 접합부는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배관설비 및 그 지지물 등이 물리적·환경적 영향 등 외부요인으로 파손되거나 부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설비의 압력이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돌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건축물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공조설비 등이 설치되어 유효하게 환기가 되는 건축물이거나 건축물의 목적상 환기가 불가능한 구조의 경우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6)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서로 다른 유해화학물질을 같은 보관시설 안에 보관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간의 반응성을 고려하여 칸막이나 바닥의 구획선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해야 한다.

7)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설계·제작된 차량이어야 한다.

8)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차고지는 유출·누출 사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곳으로 확보해야 한다.

9) 그 밖에 취급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 저감을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

다.

1)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유출·누출 여부를 조기에 인지할 수 있도록 검지·경보체계를 갖춰야 한다.

2) 액체나 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은 유출·누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차단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3) 액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은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의 하천이나 토양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방류벽, 방지턱 등 집수설비(集水設備)와 차단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바닥 또는 벽 등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피복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5)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체류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진, 액체, 가스 등 유해화학물질의 특성에 맞는 배출설비를 갖추고, 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은 중화, 소각 또는 폐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 환경이나 사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6) 대기 중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그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인보호장구를 갖춰야 한다.

2)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에 노출되거나 흡입하는 등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긴급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노출된 물질이 물과 반응하여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관리기준

가. 자연발화성 물질 또는 자기발열성 물질의 발화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기와 접촉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나. 자기반응성 물질 또는 폭발성 물질의 과열이나 폭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물질이 자체 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다.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점화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분리하여 관리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운반차량에 유해화학물질을 적재(積載) 또는 하역(荷役)하려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한다.

마. 운반과정에서 운반차량에 적재된 유해화학물질이 쏟아지지 않도록 유해화학물질 및 그 운반용기를 고정해야 한다.

바. 운반차량은 유해화학물질 유출·누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안전한 곳에 주·정차해야 한다.

사. 사업장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의 필요 최소한의 양만 취급해야 한다.

3. 그 밖의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보수, 시설 변경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작업 종류, 작업 일정, 시설명, 공사 규모, 시공자(수급자),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명, 작업 관리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을 적은 표지를 작업 현장과 인접하여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법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해당 사업장에 보관하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안전관리계획을 준수해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및 성상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비고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준 또는 조치 사항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준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조치 사항
2.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규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3. 미세공정이나 항만 등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거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용 대상과 해당 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중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25. 8. 7.>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제27조제4항 관련)

1. 취급시설·장비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주차장(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나.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가 있는 세차시설(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다. 작업복을 탈의하고 세탁 등이 가능한 탈의시설

라.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서 해당 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는 개수의 개인보호장구

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바. 누출·배출된 유해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감지·경보장치 또는 CCTV

사. 차량 충돌로부터 배관이나 취급설비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충돌방지벽 등

아. 물질의 특성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 등을 유지하기 위에 필요한 계측장치

자. 물질의 누출·유출시 물질의 차단이 가능한 긴급 차단설비

차. 삭제 <2017. 12. 27.>

2. 기술인력 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인 이상을 두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화공기술사·가스기술사·대기관리기술사·수질관리기술사·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표면처리기술사·위험물기능장·가스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산업안전·기계·화공·수질환경·대기환경·폐기물처리·위험물 또는 가

스 분야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3년 이상인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정밀화학기사·화약류제조기사·환경위해관리기사·화학분석기사·산업안전기사·가스기사·산업위생관리기사·수질환경기사·대기환경기사 또는 폐기물처리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산업안전산업기사·수질환경산업기사·대기환경산업기사·폐기물처리산업기사·위험물산업기사·가스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표면처리산업기사·환경기능사·위험물기능사·가스기능사·화학분석기능사·표면처리기능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5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유독물취급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해당 실무 경력 7년 이상인 사람

5)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개설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종업원이 3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가) 2)에 해당하는 학력을 갖추거나 3) 또는 4)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 또는 같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환경부령 제774호(2018. 10. 26.) 별표 6 제2호가목5)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비고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는 제2호가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나.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다.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2. 비고 제1호나목·다목을 적용할 때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은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신설 2025. 8. 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 기준(제33조 관련)

1.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합한 수의 인원을 선임해야 한다.
      1) 연간 취급량에 따른 기준
         가)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미만인 경우: 1명
         나)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천톤 이상 만톤 미만인 경우: 2명
         다)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만톤 이상 십만톤 미만인 경우: 3명
         라)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십만톤 이상 백만톤 미만인 경우: 4명
         마) 연간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백만톤 이상인 경우: 5명
      2) 영업의 종류 및 종사자 수에 따른 기준
         가)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및 보관·저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백명당 1명
         나)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및 사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종사자 5천명당 1명

2.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법 제27조제4호의 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나.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20대당 1명. 다만,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20대 이하인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3.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4.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명. 다만,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를 한 자로서 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

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비고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는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겸할 수 있다.
2. 비고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해당 영업자의 종업원이 10명 미만에서 10명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도 해당 변경이 있은 날부터 3년간은 종업원이 10명 미만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29조제1항제1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개정 2025. 10. 1.>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 시간(제37조제1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1.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매 2년마다 16시간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선임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8시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매 2년마다 16시간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나. 법 제2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유해화학물질별수량기준의 최하위 규정수량 미만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매 2년마다 8시간
	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매 2년마다 8시간)
	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담당자	매 2년마다 16시간
	마.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매 2년마다 16시간

비고

1.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

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그 기술인력이 되거나 유해화학물질관리자로 선임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가. 6개월 이상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총 교육시간 중 8시간 이상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아야 하고, 나머지 교육시간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받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나머지 교육시간에 한정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이하 "인터넷 교육"이라 한다)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6개월 미만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무를 담당하는 자: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총 교육시간 중 8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2의2.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시간은 인터넷 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다.

3. 제3호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부터 2년 전까지의 기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 중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과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16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그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 시간 중 8시간을 면제한다.

4.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등의 재난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수시기 및 교육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4]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대상자별 교육내용(제37조제5항 관련)

1.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자격취득 대상자(영 제12조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사업장 위험도 분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및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에 관한 사항
사. 개인보호구, 방제 장비 등 선정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형태별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및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분류·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라.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취급, 보관·저장 시 준수사항 및 취급기준에 관한 사항
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바.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사.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관리법」 및 일반 화학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 표시 및 운반계획서 작성에 관한 사항

다.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이동 시 준수사항 라. 화학사고 시 대피·대응 방법 및 개인보호구 착용 실습에 관한 사항 마. 화학물질 노출 시 응급조치 요령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종사자

교육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나. 화학사고 대피·대응 방법 및 사고 시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다. 업종별 유해화학물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5. 10. 1.>

행정처분의 기준(제4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취급시설 개선투자 및 안전 환경 인력 채용을 확대한 경우

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사고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

7)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 착용 의무 이행을 위해 작업자에 대하여 정

기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8) 유해화학물질 취급을 도급받은 수급인이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 도급인이 해당 수급인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충분히 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9) 천재지변으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사용하게 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1호	영업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1호, 법 제35조 제2항제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2호, 법 제35조 제2항제3호				
1) 법 제13조제2호의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3호,				

	법 제35조 제2항제4호					
1)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지 않아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사업주가 개인보호장구를 지급하였으나 작업자가 착용하지 않은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마.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4호, 법 제35조 제2항제5호					
1)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을 초과하여 진열·보관한 경우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관·저장 시설을 보유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한 경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바.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사.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5호, 법 제35조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제2항제7호					
아.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호	영업 정지 1개월	허가 취소			
자. 법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2					
1) 화학사고 발생 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따른 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5일	영업 정지 15일	
2)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1개월	
차. 법 제23조의3을 위반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 제1항제5호의2, 법 제35조 제2항제8호의3	개선 명령	경고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카.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 제2항제9호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 명령	영업 정지 5일	영업 정지 1개월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타.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지 않고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0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6개월	
파. 법 제25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1호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3개월	
하.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시설 및 장비 등을 점검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5년간 기록·비치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6호, 법 제35조제2항제12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거. 법 제27조에 따른 영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7호, 법 제35조제2항제13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너.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4호	허가취소			
더. 법 제28조제5항 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 법 제35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더의2.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제2항제15호 법 제34조의2제1항제8호의2, 법 제35조제2항제15호의2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러.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6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머.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능력과 기준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 도급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7호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버. 법 제31조제5항을 위반하여 무리한 취급시설의 운영 등을 요구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18호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서. 법 제32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9호, 법 제35조제2항제19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어. 법 제40조를 위반하여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10호, 법 제35조제2항제20호				
1) 사고대비물질의 유출·누출 또는 도난·전용의 우려가 있는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2) 그 밖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경고	경고	경고	영업정지 5일
저.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즉시 신고를 하지	법 제35조제2항제23	경고	영업정지	영업허가	

않은 경우	호		15일	취소		
처.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11호, 법 제35조제2항제24호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개선명령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개월		
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보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의2제1항제12호, 법 제35조제2항제25호	개선명령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터.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재산·환경에 영향이 발생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제26호					
1)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경고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30일)	피해금액 1억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60일)			
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나)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다) 법 제45조에 따라 화학사고 조사단이 실시한 영향조사 결과 사업장 밖 피해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	피해금액 5천만원당 영업정지 1일			

		(최대 90일)	(최대 180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25. 8. 7.>

공동활용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작성방법(제42조제2항 관련)

1. "공동활용계획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구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동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할 업소별 업무내용(종업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감독, 시설·장비 확인 등), 근무소요시간과 배분근무계획 등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제조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및 사용량과 1회 사용 시 소요시간(원료투입부터 포장까지)과 업소별 사용시간의 원칙적 배정내역 등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보관·저장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업소별 사용면적 또는 사용용량, 위치 등을 구분하여 도면에 표시하고 잠금장치의 열쇠 보관관리 등 안전설비관리계획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공동 활용하는 경우에는 운반하려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별·성상별 일일운반소요량, 일일운반능력(대당운반능력×횟수×대수)과 운반차량의 업소별 활용시간배정계획, 세차 등 차량관리계획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는 공동활용 업소의 위치와 이동로 및 이동거리 등을 표시한 도면에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는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시 또는 신고 시 제출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장비의 명세서로 갈음한다.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에는 공동 활용 내역,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공동대처방안, 대표업소의 선정,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업무한계 및 업무지원 내역(유해화학물질관리자 공동활용의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내역서"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부재 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 업무대행자

를 지정하고 그 업무내역을 기재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8. 7.>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44조 관련)

1. 니트로벤젠, 황산, 질산, 산화질소, 니트로메탄, 질산암모늄, 헥사민, 과산화수소, 염소산칼륨, 질산칼륨, 과염소산칼륨, 과망간산칼륨, 염소산나트륨, 질산나트륨, 사린, 염화시안 취급자 및 도난·전용 위험 등이 있어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사고대비물질의 취급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인계하는 자는 인수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나. 취급시설 및 판매시설의 출입자와 방문차량을 확인하여 제56조에 따라 해당 사항을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다. 해당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취급시설 운영자·관리자 또는 관계자가 아닌 사람의 접근을 엄격히 차단하고 저장·보관시설, 진열·보관장소 및 운반차량에 경보장치 또는 잠금장치 등 물리적인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라.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에게 판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보호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는 때는 제외하며, 5년간 동의서를 보존해야 한다.
   마. 해당 사고대비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그 내용을 즉시 경찰서, 국가정보원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해야 한다.

2.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관리기준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2] <개정 2025. 8. 7.>

수수료(제59조제1항 관련)

종별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2.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3의2.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의3. 제한물질 제조·수입 허가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3의4.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3의5.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신고의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4. 허가물질의 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5.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6. 허가물질 제조·수입·사용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7.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8.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0.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1. 삭제 <2022. 1. 10.>		
12. 삭제 <2022. 1. 10.>		
13.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	30,000원	27,000원
1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20,000원	18,000원
14의2.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신고	13,000원(매품목당)	11,700원(매품목당)
14의3. 유해화학물질 영업의 변경신고	9,000원(매품목당)	7,200원(매품목당)
15.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	13,000원	11,700원
16.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	9,000원	7,200원
17. 유해화학물질 영업 재개 신고	13,000원	11,700원
18. 취급시설의 검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및 안전진단	시설규모별 인건비·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비고 : 지방환경청장·유역환경청장·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개정 2025. 8. 7.>

위임 및 위탁 업무의 보고사항 및 보고일 등(제60조제1항 관련)

보고사항	보고횟수	보고일	보고자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2.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실적 및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3.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4.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에 관한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5.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15일 이내	화학물질안전원장
6. 화학물질 통계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7.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현황 및 결과	연 1회	조사 완료 후	화학물질안전원장
8. 유해화학물질의 진열·보관계획서, 운반계획서 운영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9.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요청서 접수, 해제 여부 확인서 발급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0.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및 신고·변경신고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1.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2.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3.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4.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5.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6.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변경허가, 신고·변경신고 및 정보제공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7.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연 1회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18. 도급신고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1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등 유해화학물질관리자 관리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0.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휴업·폐업 신고 및 조치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1.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신고 수리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2.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3. 권리·의무승계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4.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및 신고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5. 화학사고 현장 대응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26. 화학사고 영향조사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27. 화학사고 조치명령 현황	수시	사고 발생 시	지방환경관서의 장
28.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지방환경관서의 장
29. 과태료의 부과·징수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지방환경관

		15일 이내	서의 장
30.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31.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32.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현황	연 2회	매반기 종료 후 15일 이내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8. 7.>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제출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제조(수입) 제품명세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⑥ 확인방법	[ ] 성분명세서 [ ]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증명번호: 제 호) [ ] 확인 관련 서류(제공자: [ ]제조자 [ ]수출자 [ ]확인을 위임받은 자)			
수입제품(상품) 정보	⑦ 모델·규격				
확인 관련 서류 제공자	상호(명칭)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성 명	전화 및 팩스		
		부서명	전자우편		

⑧ 확인 내용	구분 \ 함유여부	있음		없음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신규화학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대상	[ ]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대상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생태유해성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허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제한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금지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명[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
		함량 또는 함량범위(%)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하는 위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제출자란은 제조자, 수입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 중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수입자란은 국내대리인이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제조자"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하며, "수입자"란 같은 법에 따라 수입하려는 자(「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말합니다.
4.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6.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7.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8. ⑤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9. ⑥란은 확인제품에 들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⑧란의 각 확인 내용을 확인한 방법을 선택합니다. 단, 화학물질확인 증명서의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에 한하여 확인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됩니다.
10. 확인을 위임받은 자는 제조(수입)자를 대신하여 실제 화학물질에 대한 확인을 한 자를 말합니다.
11.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12. ⑧란은 기존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함유여부를 해당란에 표시하여야 하고,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물질의 화학물질명,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및 제품 중 함량 또는 함량범위(%)를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확인서	⇒	접수	⇒	검토	⇒	결재
제출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8. 7.>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전문기관의 확인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주요용도		
	수입제품(상품) 정보	⑥ 모델·규격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확인신청 내용	[ ] 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 해당 여부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생태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허가물질 해당 여부 [ ] 제한물질 해당 여부 [ ] 금지물질 해당 여부 [ ] 사고대비물질 해당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함량,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등이 적힌 성분명세서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작성방법

1. 신청인란은 제조자, 수입자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 중 화학물질 확인 증명신청서를 제출하는 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수입자란은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3.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 또는 수입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4. ②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국을 적습니다.
5. ③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④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⑤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8.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증명서 작성	⇒	증명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8. 7.>

증명번호 제 호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확인증명서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구 분	[ ] 제조·수입자 [ ]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연간제조(수입) 예정량		kg		
HSK No.				
주요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확인신청내용(신청인)		확인내용(한국환경공단)		
확인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귀하가 제시하는

관련 서류에 근거한 [ ]제조 [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25. 8. 7.>

배출저감계획서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배출저감계획서 또는 수정·보완한 배출저감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적합여부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 상]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신설 2019. 11. 29.>

통보번호 제 호	배출저감계획서 검토결과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 대상 배출저감계획서		
검토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붙임서류: 적합 여부 상세 내용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4서식] <신설 2019. 11. 29.>

통보번호 제 호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요청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토 대상 배출저감계획서		
수정·보완 필요 사항		
수정·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붙임서류: 수정.보완사항 상세 내용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5서식] <신설 2025. 8. 7.>

배출저감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의2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출저감계획서의 변경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된 배출저감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적합여부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안전원

수신자
(경유)
제 목 화학물질 취급정보의 공개계획 통보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관보나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려 합니다.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개내용				
심의신청서 제출기한				

2. 공개대상 정보의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제출기한 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의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신설 2018. 11. 29.>

화학물질 정보공개 심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심의결과 등의 수령 방법	[ ] 우편 [ ] 팩스 전송 ( ) [ ] 전자우편 ( )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심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의 심의신청 항목 2. 심의신청 항목별 비공개 이유서 및 항목별 비공개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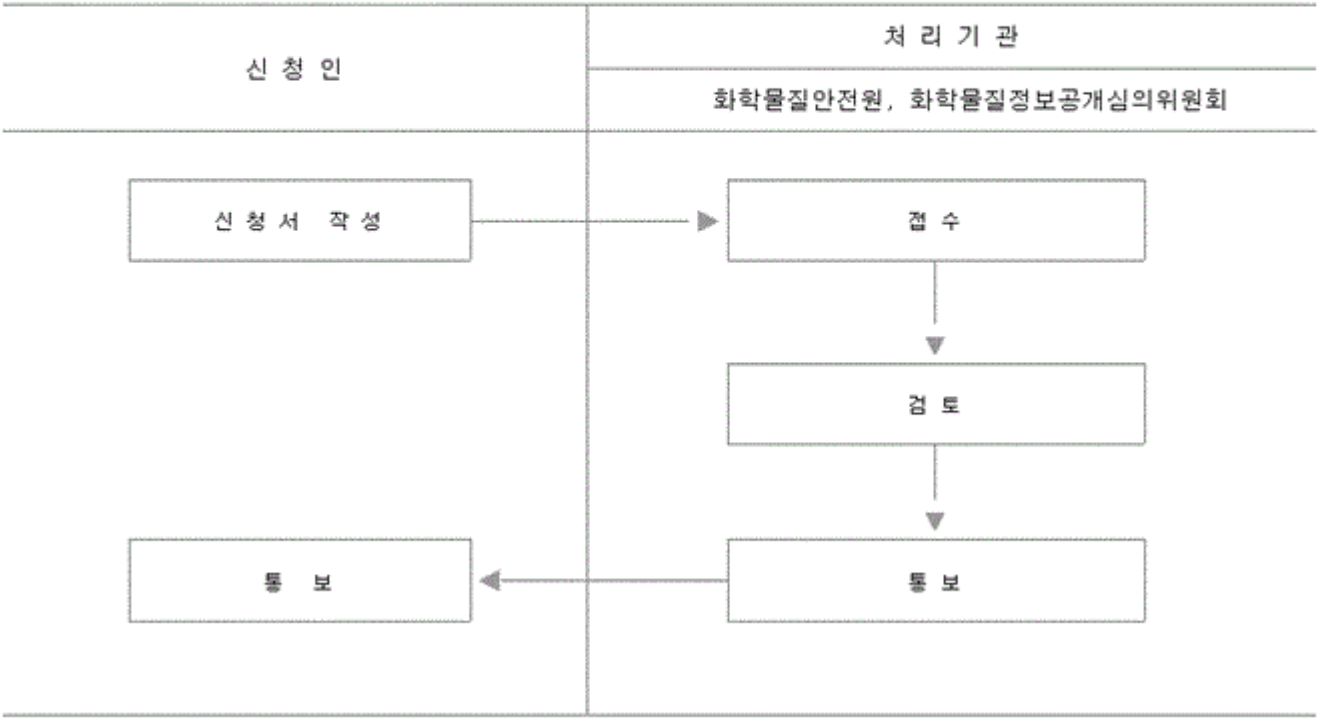
(뒤쪽)

작성방법

화학물질 통계조사표 사본에 비공개를 요청하는 항목을 표시(밑줄, 동그라미 표시 또는 색칠 등)하여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210㎜ × 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신설 2018. 11. 29.>

화학물질안전원

수신
(경유)
제목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1.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공개 또는 비공개 신청항목				
심의결과				

2.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 소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1. 29.>

정보공개 소명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작성방법

소명 내용란은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정보의 공개계획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화학물질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210㎜ × 297㎜[백]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1. 29.>

통지번호 제 호	소명서 처리결과 통보서			
정보 공개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공개 여부	[ ] 공개 [ ] 부분공개 [ ] 비공개			
공개 내용				
공개 방법				
공개 시점	년 월 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정보공개 소명서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 × 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①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진열·보관수량(kg)	방재장비 목록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진열·보관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①란은 유해화학물질을 진열·보관하는 사업장 주소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증명서 발급
제출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제출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증명번호 제 호		진열·보관계획 등 확인증명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적정성 여부		[ ] 적정 [ ] 조건부 적정 [ ] 부적정		
진열·보관 조건				
취급시 주의사항				
방제요령		누출 시 :		
		화재 시 :		
		폭발 시 :		
비상시 연락기관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진열·보관계획 등 확인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4. 1.>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운반업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운반차량번호)
	운반자 성명 및 연락처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명	함량(%)	수량(kg)	휴대용 방재장비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를 작성·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운반자, 경로, 노선, 운반시간 및 휴식시간(별표 1 제28호에 따라 휴식을 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을 포함한 통행도로 상세내역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운반업체는 실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업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계획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운반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제출인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요청 사항	화학물질명	
	중지 해제 요청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요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요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8. 7.>

확인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등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중지 해제		[ ] 수용 [ ] 부분 수용 [ ] 불수용		
중지 해제 내용 ※ 수용 또는 부분수용시 작성				
중지 해제 시점 ※ 수용 또는 부분수용시 작성		년 월 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17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의 제조·수입 등의 중지 해제 여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8. 7.>

[ ] 금지물질 [ ] 제 조
[ ] 제한물질 [ ] 수 입 허가신청서
[ ] 판 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수출국		
	④ 주요 용도		
	⑤ 연간 예정량		kg
	⑥ HSK No.		
	수입제품(상품) 정보	⑦ 모델·규격	
	금지·제한 물질 함유 내용	⑧ 명칭	
		⑨ 금지·제한 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⑩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 ] 금지물질 의 [ ] 제조
[ ] 제한물질 [ ]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판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취급계획서 2. 수출확인증명서(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수출하는 국가명을 적습니다.
4. ④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⑤란은 연간 제조·수입 또는 판매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⑥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8. ⑧란부터 ⑱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9.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5. 8. 7.>

허가번호 제 호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허가증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조국(수입국)				
수출국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명칭				
연간 허가량		kg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허가조건				
허가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제3항에 따라 위 물질의 [ ] 제조를 [ ] 수입을 [ ] 판매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 8. 7.>

허가번호
제 호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 정보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	
	수입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의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작성방법

1. 허가번호는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허가 시 부여된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2. 제조·수입·판매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모델·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변경사항이 적힌 허가증 또는 신고증 작성	→	변경사항이 적힌 허가증 또는 신고증 발급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 ] 금지물질 [ ] 제한물질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변경허가증 [ ] 변경신고증
제 호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의 명칭				
변경허가(신고) 사항				
용도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에 따라 위 물질의

[ ] 변경허가증을
[ ]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제한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보관·저장 [ ] 사 용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고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연간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제품(상품)정보	⑥ 모델·규격		
	제한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보관·저장, [ ]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제한물질 용도의 상세 내용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②칸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칸은 그 제품(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칸은 연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칸은 제품(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칸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칸부터 ⑨칸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제한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25. 8. 7.>

신고번호 제 호		제한물질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보관·저장 [ ] 사 용		[ ] 신고증 [ ] 변경신고증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제한물질 함유 내용	제한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유량(%)			
연간 예정량		kg		
주요용도				
수입제품(상품)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2항·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 ] 제 조
[ ] 수 입
[ ] 판 매
[ ] 보관·저장
[ ] 사 용

[ ] 신고
[ ] 변경신고

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신설 2025. 8. 7.>

신고번호

제 호

제한물질 [ ] 제 조 [ ] 판 매 [ ] 수 입 [ ] 보관 · 저장 [ ] 사 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정보	제품명(상품명)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제한물질의 [ ] 제조, [ ] 판매, [ ] 수입, [ ] 보관·저장, [ ] 사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작성방법

1. 제품명(상품명)란에는 제조·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 또는 사용하는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모델·규격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3.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5. 8. 7.>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용도			
	④ 연간제조(수입/사용)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 제품(상품) 정보	⑥ 모델·규격		
	⑦ 허가 기간			
	허가물질 함유 내용	⑧ 명칭		
		⑨ 허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⑩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조
[ ] 수입 허가를 신청합니다.
[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용도 상세 내역 1부 2. 화학물질의 위해성 자료 1부 3.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자료 1부 4. 대체 계획 자료 1부 5.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①란은 제품명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②란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4. ③란은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5. ④란은 연간 제조, 수입 또는 사용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은 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7. ⑥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8. ⑦란은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을 적습니다.
9. ⑧란부터 ⑭란까지는 상품에 포함된 허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10.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처리기관		처리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허가물질**	**[ ] 제 조 [ ] 허가증 [ ] 수 입 [ ] 변경허가증 [ ] 사 용 [ ] 변경신고증**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구분	[ ] 제조·수입자 [ ] 법 제48조의4에 따른 국내대리인		
제조국(수입국)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유량(%)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규격			
한정기간(허가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1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제4항·제9항에 따라 위 물질의 [ ] 제조 [ ] 허가증을 [ ] 수입 [ ] 변경허가증을 [ ] 사용 [ ] 변경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 8. 7.>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재허가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사항	① 허가번호	
	② 재허가(한정) 기간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조
[ ] 수입 재허가를 신청합니다.
[ ] 사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 화학물질의 용도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 다.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라.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뒤쪽)

작성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①란은 허가물질의 제조·수입·사용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3. ②란은 허가물질을 제조·수입·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210㎜ × 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 ] 제 조
허가물질 [ ] 수 입 신고서
[ ] 사 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제조국(수입국)		
	③ 주요 용도		
	④ 연간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제품(상품) 정보	⑥ 모델·규격	
	허가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허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조를 [ ] 수입을 [ ] 사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2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작성방법

1. ①칸은 제품명 또는 상품명을 적습니다.
2. ②칸은 제조국 또는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칸은 그 제품(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칸은 연간 제조·수입·사용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칸은 제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칸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칸부터 ⑨칸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허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3서식] <신설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신고증 [ ] 변경신고증**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물질의 명칭				
제조국(수입국)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유량(%)			
연간 허가량		kg		
주요용도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7항·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6항·제9항에 따라 허가물질의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신고증
[ ] 변경신고증

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의4서식] <신설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허가 [ ] 변경허가신청서
[ ] 신고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입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허가(신고) 사항	허가(신고)번호		
	허가물질명		
	고유번호(CAS No.등 화학물질 식별정보)		
	제품(상품)정보	제품명(상품명)	
		제품 내 허가물질 함유량(%)	
	주요용도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8항에 따라 허가물질

[ ] 제 조
[ ] 수 입
[ ] 사 용

[ ] 허가
[ ] 신고

의

[ ] 변경허가신청서
[ ] 변경신고서

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변경허가신청서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변경신고서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8,200원)

(뒤쪽)

작성방법

1.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2.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3. 변경사항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제7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허가증(신고증) 작성	→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삭제 <2025. 8. 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삭제 <2025. 8. 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삭제 <2025. 8. 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삭제 <2025. 8. 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8. 7.>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고사항	① 제품명(상품명)			
	② 수입국			
	③ 용도			
	④ 연간 수입 예정량			kg
	⑤ HSK No.			
	수입 제품 (상품) 정보	⑥ 모델·규격		
	인체등유해성물질 함유 내용		⑦ 명칭	
			⑧ 인체등유해성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자료보호 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수입 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인체등유해성물질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1. ①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입국을 적습니다.
3. ③란은 그 제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수입 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제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6. ⑥란은 실제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7. ⑦란부터 ⑨란까지는 제품에 포함된 인체등유해성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8.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25. 8. 7.>

확인번호 제 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신고증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수입국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신고량		kg		
주요 용도				
수입 제품 (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8. 7.>

신고번호
제 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2일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수입제품(상품)정보	수입제품명(상품명)	
	모델·규격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라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입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210㎜×297㎜[백상지(80g/㎡)]

(뒤쪽)

작성방법

1. 수입제품명(상품명)란은 제품명을 적습니다.
2. 모델·규격란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기재하는 해당 수입제품(상품)의 모델 및 규격사항을 적습니다.
3. 앞쪽 빈칸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작성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고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8. 7.>

신고번호 제 호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변경신고증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제품명(상품명)				
인체등유해성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변경 신고 사항				
주요 용도				
수입 제품(상품) 정보	모델·규격			
준수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 물질의 수입 변경 신고를 수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20. 9. 29.>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수출제품명 (상품명)		
	② 주요용도		
	③ 해당 연도 수출 예정량	kg	
	④ HSK No.		
	⑤ 수입국		
	⑥ 수입자 상호		
	제한물질·금지물질 함유내용	⑦ 명칭	
		⑧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⑨ 함유량(%)	
		⑩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III 등재물질 여부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수출통보서 2부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2부 3. 수출자 책임보증서 ※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에 규정된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수출자 책임보증서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매품목당 13,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7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수출제품의 이름을 적습니다.
2. ②란은 수출용도 등 그 상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해당 연도의 수출총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4. ④란은 수출상품에 대한 관세·통계통합분류표의 품목번호(HSK No.: Harmonized System Korea Number)를 적습니다.
5. ⑤란 및 ⑥란은 수입국 및 수입자의 상호를 적습니다.
6. ⑦란부터 ⑩란까지는 수출상품에 포함된 제한물질·금지물질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수출승인서 작성	⇒	접수	⇒	수입당사국에 수출통보서 통보	⇒	수입당사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승인한 경우	⇒	수출승인서 작성	⇒	수출승인서 교부
신청인		처리기관(유역(지방)환경청)		(로테르담협약 부속서 Ⅲ 등재물질인 경우 별도의 절차를 따름) 처리기관(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8. 7.>

승인번호 제 호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승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출제품명 (상품명)			주요용도	
해당 연도 수출예정량		kg	HSK No.	
수입국			수입자 상호	
제한물질·금지물질 함유 내용	명칭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함유량(%)	
유효기간	년 12월 31일까지			
유효조건	동일한 수출제품에 대하여도 수입국이 다른 경우에는 따로 수출승인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5. 8. 7.>

승인번호 [ ] 제한물질
제 호 [ ] 금지물질

수출 변경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
	수출제품명(상품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5항에 따라 [ ] 제한물질의
[ ]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수출승인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매품목당 9,000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7,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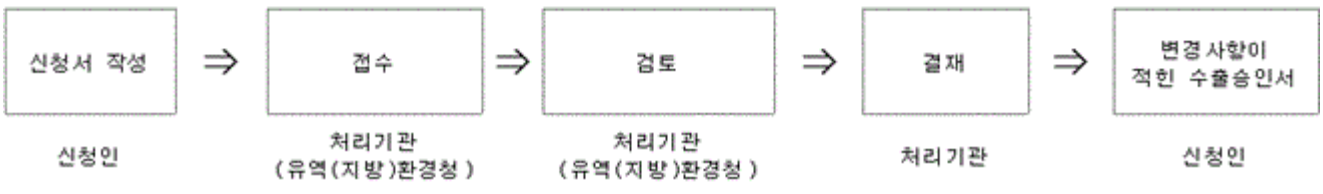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8. 7.>

승인번호 제 호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승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수출제품명 (상품명)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6항에 따라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제출방법 [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 서면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관할지방환경관서 : ( ) 유역(지방)환경관서 / ( )합동방재센터		

신청내용	제출구분	[ ] 신규제출 [ ] 재제출 [ ] 부적합 후 재제출 [ ] 5년 재제출 [ ] 이행점검 부적정 재제출	
	사업장 구분	[ ] 1군 사업장	[ ] 2군 사업장
	영업허가 대상	[ ] 영업허가 대상	[ ] 면제대상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 여부	[ ] 해당	[ ] 미해당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검토생략 대상	[ ] 안전성향상계획 [ ] 공정안전보고서	[ ] 미해당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제4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3. 안전성향상계획 또는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심사결과통지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4. 별지 제31호의3서식의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2서식] <신설 2021. 4. 1.>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신청인 정보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취급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2. 공동비상대응계획 작성 개요

총괄 사업장		총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대상 지역		대상 산업단지	
대상 사업장 수		최종 작성일	
공동활용 비상대응정보	[ ] 사고영향범위 공유	[ ] 지역사회 공동 고지	
	[ ] 사고전파·알림 지원	[ ] 방재자원 및 대응 지원	
	[ ] 실내 대피장소 지원	[ ] 공동 사고대응훈련 실시	
	[ ] 기타 (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의3서식] <개정 2021. 4. 1.>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 변경사항 부존재 확인서

제출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심사 결과 확인	종류 [ ] 안전성향상계획 [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기관
	대상 공장(공정)	심사결과 통지일
	대상 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안전성향상계획·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결과 통지 후 변경사항이 없음을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제출일	접수일	처리기간(30일)

제출방법 [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 ] 서면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최종) 적합통보 번호		(최종) 적합통보 일자	
	영업허가 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변경 사항	[ ] 사업장 구분 변경: 변경 전 ( ) 군 사업장, 변경 후 ( )군 사업장
	[ ] 그 밖의 사유(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 서류	1.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공동 비상대응계획 작성·제출에 관한 자료(공동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서 통보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상세내용>

장외영향평가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위험도

위해관리계획서 민원번호	결과번호	적합날짜

※ 해당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제출 이력>

적합 결과번호	사업장 구분 (1군/2군)	위험도	상세내용	적합통보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사항 상세내용>

변경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유해화학물질추가		
시설추가		
취급저장량 증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1. 4. 1.>

<table>
<tr><td colspan="2">결과번호</td><td colspan="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결과서</td></tr>
<tr><td rowspan="4">신청
정보</td><td>상호(명칭)</td><td></td><td rowspan="3">담당자
정보</td><td>성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d>전자우편 주소</td><td></td></tr>
<tr><td>취급시설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업장 구분</td><td colspan="4">[ ] 1군 사업장 [ ] 2군 사업장</td></tr>
<tr><td colspan="2">영업허가 대상 여부</td><td colspan="4">[ ] 영업자 [ ] 비영업자</td></tr>
<tr><td colspan="2">대상물질</td><td colspan="4">( ) 종</td></tr>
<tr><td colspan="2">결과</td><td colspan="4">[ ] 적합 [ ] 조건부적합 [ ] 부적합</td></tr>
<tr><td colspan="2">위험도</td><td colspan="4">[ ] 가 [ ] 나 [ ] 다 [ ] 해당 없음</td></tr>
<tr><td colspan="6">「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td></tr>
<tr><td>첨부서류</td><td colspan="5">검토결과 상세내용 1부</td></tr>
</table>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2서식] <개정 2021. 4. 1.>

<table>
<tr><td colspan="2">결과번호</td><td colspan="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변경 검토결과서</td></tr>
<tr><td rowspan="4">신청
정보</td><td>상호(명칭)</td><td></td><td rowspan="3">담당자
정보</td><td>성명</td><td></td></tr>
<tr><td>사업자등록번호</td><td></td><td>연락처</td><td></td></tr>
<tr><td>대표자 성명</td><td></td><td>전자우편
주소</td><td></td></tr>
<tr><td>취급시설 소재지</td><td colspan="4"></td></tr>
<tr><td colspan="2">사업장 구분</td><td colspan="4">[ ] 1군 사업장 [ ] 2군 사업장</td></tr>
<tr><td colspan="2">영업허가 대상</td><td colspan="4">[ ] 영업자 [ ] 비영업자</td></tr>
<tr><td colspan="2">변경 사항</td><td colspan="4">[ ] 사업장 구분 변경 : 변경 전 ( ) 군 사업장, 변경 후 ( ) 군 사업장
[ ] 그 밖의 사유 : ( )</td></tr>
<tr><td colspan="2">대상물질 수</td><td colspan="4">( )종</td></tr>
<tr><td colspan="2">검토 결과</td><td colspan="4">[ ] 적합 [ ] 조건부적합 [ ] 부적합</td></tr>
<tr><td colspan="2" rowspan="2">위험도</td><td colspan="4">위험도 변경 여부 [ ] 동일 [ ] 변경</td></tr>
<tr><td colspan="4">위험도 수준 [ ] 가 [ ] 나 [ ] 다 [ ] 해당없음</td></tr>
</table>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 검토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첨부서류	검토결과 상세내용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3서식] <개정 2021. 4. 1.>

(앞쪽)

요청번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수정·보완요청서			
신청인	상호(명칭)		담당자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 주소	
	취급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구분		[ ] 1군 [ ] 2군			
대상물질수					
수정·보완 제출 기한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5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위와 같이 요청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뒤쪽)

수정·보완 요청 사항 명세		
연번	검토항목	수정·보완 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현황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4서식]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의5서식] <신설 2017. 5. 30.>

안전성 평가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성 평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서 작성	⇒	접수	⇒	평가 (서면평가, 현장평가)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화학물질안전원)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사업장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대상 취급시설(명 칭)	
	검사대상 취급시설 구분 [ ] 제조·사용시설 [ ] 보관시설 [ ] 저장시설 [ ] 운반시설 [ ] 기타	
	검사사유 [ ] 신규설치 [ ] 시설 변경	
	검사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상 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연장신청 대상 취급시설(명 칭)	
	당초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 신청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신청 사유 [ ] 최근 3년간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포함합니다)을 받거나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 자 혹은 최근 3년간 같은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자가 아님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배출저감계획서의 연도별 배출저감 목표를 성실히 달성했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함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장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신설 2025. 8. 7.>

통지번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 검토 결과서		
제 호				
신청인	상호 및 사업장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연장대상 취급시설				
검토 결과	[ ] 승인 [ ] 불승인			
당초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된 정기검사 이행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연장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지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8. 7.>

유역(지방)환경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수시검사 대상 통지서

1.「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6항에 따라 귀 업체가 사용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수시검사 대상임을 통지합니다.

2. 따라서 귀 업체에서는 검사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수시검사를 신청하여 정해진 기한 내(년 월 일)에 검사를 실시하기 바랍니다.

붙임 : 수시검사 사유서 1부. 끝.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 결재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 - 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 × 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결과통지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통지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검사사업장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검사대상 취급시설(명 칭)	
	검사대상 취급시설 구분 [ ] 제조·사용시설 [ ] 보관시설 [ ] 저장시설 [ ] 운반시설 [ ] 기타	
	검사결과	

취급 화학물질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연간취급량(톤)	주요용도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9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 ] 정기검사
[ ] 수시검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결과서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결과통지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진단사업장	상호 및 사업장명(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안전진단 대상 취급시설(명 칭)	
	안전진단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의 장 직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안전진단결과보고서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제 호

취급시설 개선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위반 내용 :
6. 개선 사항 :
7.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위 제출기한 내에 개선계획서를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 [ ] 개선사항 상세내역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명령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개선명령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계획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1부 2. 이행계획 및 공사비 1부 3. 이행기간 동안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개선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계획서 작성	⇒	접수	⇒	검토	⇒	이행
보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보고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명령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개선명령 사항	

개선명령 이행결과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개선명령 이행결과 상세보고서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개선명령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보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보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제 호

취급시설 가동중지 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가동중지 대상 취급시설 :
6. 위반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제9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개정 2025. 10.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대장(양식)

점검연월일	점검시간 (00:00 ~ 00:00)	소속	점검자성명	서명

점검 항목	이상 유무	비고
① 유해화학물질의 이송배관·접합부 및 밸브 등 관련 설비의 부식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② 고체 상태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를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③ 액체·기체 상태의 유해화학물질을 완전히 밀폐한 상태로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④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용기가 파손 또는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⑤ 탱크로리, 트레일러 등 유해화학물질 운반장비의 부식·손상·노후화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⑥ 물 반응성 물질이나 인화성 고체의 물 접촉으로 인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⑦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여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⑧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이 취급시설 및 장비 주변에 존재함에 따라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⑨ 누출감지장치, 안전밸브, 경보기 및 온도·압력계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⑩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개인보호장구가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⑪ 유해화학물질 저장·보관설비의 부식·손상·균열 등으로 인한 유출·누출이 있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⑫ 방류벽, 트렌치(도랑 형식의 배수설비) 등 액체 유해화학물질의 누출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집수시설이 본래의 성능을 유지하는지 여부	[ ] 문제없음 [ ]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 [ ] 정밀 재점검 필요	

비고

1. 비고란에는 자체점검 시 조치완료된 사항 또는 재점검이 필요한 사항을 적습니다.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자체점검을 하려는 자는 양식의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된 별도의 서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점검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합니다.

297㎜×210㎜ [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 ] 허가신청서 [ ]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신고인)	① 상호(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	
	④ 대표자 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⑦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신청사항	⑧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소유 [ ] 위탁 [ ] 임차		
	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⑩ 유해화학물질			
	⑪ 최대보유량 합계	(톤)	⑫ 전체 연간 예상 취급량	톤 또는 ㎥
	⑬ 종업원 수	명	⑭ 사업장 면적	㎡
	⑮ 보관·저장시설 용량	톤 또는 ㎥	⑯ 운반시설 용량	톤 또는 ㎥
	⑰ 매출액(사업장)	억원		

⑱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 ㎡)	취급 유해화학물질명

⑲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⑳ 관리자 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㉑ 취급시설공동 활용 여부	[ ]단독 [ ]공동	㉒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항·제3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제8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 ] 영업허가를 신청합니다.
[ ] 영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마. 유해화학물질 장비·기술인력 명세서 바. 다음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 2)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증 또는 그 사본 사.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6항 전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를 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라. 신고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합니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서류 1)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2)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수수료 허가신청서 3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27,000원) 신고서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영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③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의 종류를 적습니다.
2. ⑨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3. ⑪란은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별 최대보유량의 합계를 적습니다.
4. ⑬란은 사업장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없이 적습니다.
5. ⑮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시설의 전체 용량을 적습니다.
6. ⑰란은 최근 3년 동안의 해당 사업장의 평균 매출액을 적습니다(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7. ⑱란은 사업장의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각 취급시설별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을 적습니다.
8. ⑲란 및 ⑳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여부를 적습니다.
9. ㉑란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대상 여부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 (신청인(신고인)) → 접수 →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 결재 → 허가증(신고증) 발급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취급방식	[ ] 제조 [ ] 보관·저장 [ ] 판매 [ ] 사용 [ ] 운반

유해화학물질				용도	최대 보유량 (ton)	대상구분 (허가/ 신고/ 면제)	연간취급 예정량 (톤 또는 ㎥)
구분	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생태유해성물질 [ ]사고대비물질							
합 계							

※ 작성방법

1. 취급물질의 유해화학물질 구분이 중복되는 경우 [ ]에 모두 표기합니다.
2. 대상구분(허가/신고/면제)란에는 물질별 최대보유량을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화학물질별 수량 기준과 비교하여 허가, 신고, 면제 중 해당되는 구분을 기재합니다.
3. 취급방식이 판매인 경우 용도를 판매로 적습니다.

210㎜ × 297㎜ [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개정 2025. 8. 7.>

(앞쪽)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판매업 [ ] 허가증
[ ] 보관·저장업 [ ] 변경허가증
[ ] 운반업 [ ] 신고증
[ ] 사용업

신청인(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최대보유량 합계	톤	전체연간취급량	톤 또는 ㎥	
종업원 수	명	사업장 면적	㎡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	
전년도 매출액 (사업장)	억원			

취급시설 현황	취급시설 번호 또는 명칭	용량 (톤, ㎥, ㎡)	유해화학물질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관리자공동 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취급시설 공동활용 여부	[ ] 단독 [ ] 공동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 ] 대상 [ ] 비대상
허가 조건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4항·제5항·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및 제29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 ] 허가증 [ ] 변경허가증 [ ] 신고증 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유해화학물질>

일자	유해화학 물질명	고유번호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용도	최대 보유량 (톤)	취급시설 보유 여부	대상 구분 (허가/ 신고/ 면제)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허가 [ ] 변경허가신청서 [ ] 신고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만 적습니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변경사항		
	취급시설 변경완료일(해당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제5항·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허가의 [ ]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 ] 신고의 [ ]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변경사유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시범생산 계획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확인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항목 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장외 평가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2호다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6.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서(취급시설을 변경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다목의 변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하기 전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호의 서류 대신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변경완료예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을 검사기관이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허가의 변경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20,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8,000원) 신고의 변경신고서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가목의 경우 가. 사업장의 명칭·소재지(사무실의 소재지를 포함합니다)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나. 사업장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제2호마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변경된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 소지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청서(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신고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 시에 제출한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만 적되, 보관·저장시설의 용량 또는 제조·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의 품목을 적습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허가증(신고증) 발급

신청인(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서식] <개정 2025. 8. 7.>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허가 [ ] 신고 변경신고증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사업장):
5. 주소(사무실):
6. 허가/신고번호:
7. 변경신고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제7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2서식] <개정 2025. 8. 7.>

<table>
<tr><td colspan="2">유해화학물질등
정보 요약서</td><td colspan="2">이 요약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그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판매하는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등에 해당되고, 판매하는 화학물질에 용도제한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그러한 용도로 취급하지 말 것 혹은 그러한 용도로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2">판매자 상호(명칭)</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주소(사업장)</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판매자 대표전화</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유해화학물질등
정보</td><td>물질명</td><td colspan="2"></td></tr>
<tr><td>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td><td colspan="2"></td></tr>
<tr><td>용도</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6">취급 기준 준수</td><td>취급시설</td><td colspan="2">국소배기장치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td></tr>
<tr><td>화학사고
예방</td><td colspan="2">물 반응성 및 위급시 응급대처요령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td></tr>
<tr><td>보관·저장</td><td colspan="2">보관 장소 및 혼합 적재 금지 품목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td></tr>
<tr><td>운반</td><td colspan="2">포장방법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td></tr>
<tr><td>기타</td><td colspan="2">그 밖의 주의사항 등에 대해 기재하여야 합니다.</td></tr>
</table>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3서식] <개정 2025. 8. 7.>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 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 소(사업장) (전화번호:)		주 소(사무실) (전화번호:)	

신고사항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①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② 취급품목명		③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ℓ
	④ 보관·저장시설능력	톤 또는 ㎥	⑤ 운반시설 능력	톤 또는 ㎥
	⑥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및 연락처	(전화번호:)		
	⑦ 종업원 수	명	⑧ 사업장 면적	㎡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 등에 관한 자료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은 자료를 말하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약 판매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②란은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제품명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2. ③란은 업소에서 연간 취급 예상 유해화학물질의 총량을 품목에 관계 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3. ④란은 ①란의 자가(임차) 보관·저장시설 용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4. ⑤란은 보유하고 있는 운반장비의 전체용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	결재	→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4서식] <개정 2025. 8. 7.>

(앞쪽)

신고번호 / 제 호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확인증
신고인 상호(명 칭)			
신고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취급시설 보유 여부	[ ] 없음 [ ] 자가 [ ] 위탁 [ ] 임차		
보관·저장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취급품목명		전체연간취급량	kg 또는 ℓ
보관·저장 시설능력	톤 또는 ㎥	운반장비능력	톤 또는 ㎥
종업원 수	명	사업장 면적	㎡

취급 품목 현황	유해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 번호(CAS No.)	제품명	취급예정량 (kg 또는 ℓ)		비고
				월간	연간	
준수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 또는 제31조의4제3항에 따라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 상지(12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의5서식] <개정 2025. 8. 7.>

신고번호 [ ] 유해화학물질 시약
제 호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변경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주소(사무실) (전화번호:)

변경사항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 ] 유해화학물질 시약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 부여된 신고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2.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시에 제시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3.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	결재	→	변경사항을 기재한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서식] <개정 2023. 10. 4.>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수급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도급 사항	도급 내용		
	도급 사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취급량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도급기간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인·도급인·수급인의 주요생산품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자료 1부 2. 도급계획서(도급대상 작업의 개요, 도급사유, 수급인이 보유한 개인보호장구 명세서, 수급인의 취급시설 및 인력 명세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제4호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포함하여야 한다) 1부 3.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4. 긴급 도급 사유서(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급받은 업무를 긴급하게 수행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수료 13,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1,700원)

작성방법

1. 신청인은 신고를 하는 자를 적습니다.
2. 도급인은 실제 도급을 준 자를 적습니다.
3. 수급인은 실제 도급을 받은 자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 확인	⇒	결재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8호의2서식] <신설 2020. 9. 29.>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도급인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변경 사항		

「화학물질관리법」 제31조제1항 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변경된 도급계획서 1부 2.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변경된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서 1부	수수료 9,000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7,2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신고 시 제출한 내용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습니다.
2. ②란은 ①란의 내용 중 변경되는 내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필요시 현지 확인 ⇒ 결재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개정 2020. 9. 29.>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선임 [ ] 해임 [ ] 퇴직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개요	① 유해화학물질 종류 및 연간 취급량	
	종업원 수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수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 ] 선임을
[ ] 해임을 신고합니다.
[ ] 퇴직을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에 따른 선임·해임·퇴직서 1부 2.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명단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란은 유해화학물질 종류와 유해화학물질별 연간 취급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 선임서 [ ] 해임서 [ ] 퇴직서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현장 종사기간	자격증	비 고

화학과목 및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양성과정 이수 사항	
교육내용	

특기 사항

년 월 일

업소명 인

210㎜ × 297㎜[백상지 13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

제 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 ] 퇴직
6. 유해화학물질관리자(생년월일)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12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2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기간 연장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① 연장 기간	
	연장 사유	
	업무 대리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3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기간 연장을 승인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업무 대리자 이력 1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성방법

①란은 30일 이내에서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	검토	⇒	승인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3호서식] <개정 2025. 8. 7.>

제 호

선임연장 검토결과 통지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승인 여부 : [ ] 승인 [ ] 불승인
6. 연장 승인기간 :

「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선임 기간 연장 신청을 [ ] 승인합니다.
[ ] 불승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 ] 휴업 [ ] 폐업 [ ] 가동중단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고사항	영업종류	[ ] 제조업 [ ] 판매업 [ ] 보관·저장업 [ ] 운반업 [ ] 사용업 [ ] 시약 판매업 [ ]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폐업예정일	년 월 일	[ ]휴업 [ ]가동중단 예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휴업·폐업, 가동중단 사유			
	가동중단(재개) 취급시설			
	휴업·폐업, 가동중단 기간 중 유해화학물질 보유 여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 또는 취급시설을 [ ] 휴업, [ ] 폐업, [ ] 가동중단 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수수료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의 이행여부에 관한 서류 4. 사후 신고 사유서(「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작성방법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서식] <개정 2025. 8. 7.>

제 호

개 선 명 령 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위반 내용 :
6. 위반 장소 :
7. 위반확인 시간 :
8. 개선조치 사항 :
9. 개선조치 기한 :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내에 위반 내용을 개선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제2호에 따른 개별기준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짐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 [ ] 개선조치 상세내역 1부

210㎜ × 297㎜ [백상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 승계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승계 사유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신고사항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관리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영업의 권리·의무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는 제31조의3제3항에 따른 신고확인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권리·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3.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력으로 보유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앞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7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 관리자 [ ] 취급시설 공동 활용 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화학물질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 관리자 [ ]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권리·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 위 첨부서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작성방법에 따라 적어야 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서식] <개정 2025. 8. 7.>

[ ] 허가번호
[ ] 신고번호
제 호

유해화학물질 [ ] 관리자 [ ]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대표업소명 (전화번호:)	
	관리자 또는 취급시설의 공동활용업소명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항		

「화학물질 관리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 ] 관리자 [ ] 취급시설 의 공동활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 활용자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또는 신고 시 부여된 허가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10㎜×297㎜ [백상지(80g/㎡)]

(뒤쪽)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고서	⇒	접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통보
신고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필요시)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고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서식]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1호서식] 삭제 <2021. 9. 30.>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서식] 삭제 <2021. 4. 1.>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서식]

00년 0월 0일, 00:00현재(최초, 중간, 최종)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사고 상황보고서

1. 사고개요

가. 일 시: 년 월 일 시 분(요일)

나. 장 소:

다. 사고내용

○

라. 사고원인

○

마. 사고시설 현황(유발자 현황)

○

2. 피해상황

가. 인명피해: 00명(사망 0명, 중상 0명 경상 0명 등)

나. 재산피해:

3. 수습(조치)현황

가. 사고접수시간: 년 월 일 시 분(신고자 ○○○ → 접수자 ○○○)

나. 시간대별 수습(조치)사항

일자	시간	주요조치내용

다. 방제장비 등 동원현황

○ 동원인력: 00명(기관별 동원인력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동원장비: 00대(소방차·탱크로리 등 현장수습 활동에 동원된 장비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 방제장비

- 오일펜스·흡착포·유처리제·방제약품 등 그 밖의 장비·자재 동원 명세

4. 사고관리

가. 주변지역에 미친 영향

○ 대기:

○ 수질: 수계 및 취·정수장에 미친 영향

○ 토양: 주변 주거지역 등 오염 현황 등

○ 주변 주거지역 주민 피해 현황

나. 사고지역 사후관리 활동

○ 오염토양 제거, 주민피해 보상 조치 등

5. 사고발생업소 조치

일자	관련법령	조치내용	조치기관

6. 사고발생 원인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발생 원인:

○ 재발방지 대책(향후 조치계획 등)

7. 기타

○ 언론취재 여부 등

[비고]

1. 사고보고는 최초·중간·최종보고로 구분하되 최초보고는 사고발생 개요와 피해 현황을 정리하여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2. 최종보고는 사고를 완전히 수습한 후 수습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며, 최종보고서에는 사고 유발자 등의 관계법 위반에 대한 조치 내용, 사고발생 원인, 사고지역 관리방법, 향후 조치계획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2서식] <신설 2017. 12. 27.>

제 호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서

사업장명:

소재지:

전화번호: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가동을 중단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시설	
가동중지 사유	
가동중지 기간	20 . . . ~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3서식] <신설 2017. 12. 27.>

통지번호 :　　호

가 동 중 지 표 지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시설에 대하여 가동중지를 명하니 안전·환경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후 지방환경관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설 가동을 재개하여야 하며, 만일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동중지 대상	
가동중지 사유	
가동중지 기간	20 . . . ~ 별도 해제 명령시까지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현장수습조정관　　(인)

※ 표지에 통지번호가 없는 것은 효력이 없으며, 이 표지는 지방환경관서장의 허가 없이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문의전화 :

주) 1.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글자의 구분	글자의 크기	글자의 종류	색상
가 동 중 지	16×16(㎜)	돋움체	빨강
유역(지방)환경청장	6×6(㎜)	〃	검정
나 머 지	4×4(㎜)	〃	〃
※ 이표지는 ~	4×4(㎜)	〃	빨강

2. 재료는 스티커로 하고 전체 크기는 164×185(㎜)를 기본으로 2~4배 크기를 종류별로 제작하여 비치하고 작업장의 여건에 따라 적정한 크기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테두리띠는 두께 8(㎜)이고 노란색으로 하고 바탕색은 흰색으로 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4서식] <신설 2017. 12. 27.>

확인번호 제 호		화학사고 발생시설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명령 해제 사유		*명령해제 사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사업장에 명령 해제의 정당성 및 타당성 설명 필요*		
명령 해제 시점		년 월 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제44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3항에 따라 위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 해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서식]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조치명령 사항 :
6.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위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로 인한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의 최소화 및 제거, 화학물질로 오염된 지역에 대한 복구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제10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첨부서류: 조치명령 상세 내역서 1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명령번호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계획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 업종	

조치명령 이행 계획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에 대한
이행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행계획서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조치명령 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서식]

명령번호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결과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허가 업종	

조치명령 이행 결과

「화학물질관리법」 제4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이행결과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역(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이행결과서 상세 내역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명령번호는 조치명령 시 부여된 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유역(지방)환경청)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제 호

화학사고 조치명령 이행확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주소(사업장) :
5. 조치명령 사항
6. 이행 완료일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화학사고 조치명령의 이행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유역(지방)환경청장 직인

210㎜ × 297㎜ [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국내대리인 [ ] 선임 [ ] 해임 사실 신고서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해임) 대상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법인)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임(해임) 업무	[ ]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 ]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의 허가 등		
국외 제조·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 확인	제품명(상품명)		
	화학물질 허가신청 등	허가물질명[명칭,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제품명(상품명)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생산하려는 자가 국내대리인을 [ ] 선임 [ ] 해임한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1항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사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담당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작성방법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제품명(상품명) 또는 허가물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신고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3서식] <신설 2025. 8. 7.>

제 호

국내대리인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주소(사업장):
5. 신고내용: [ ] 선임 [ ] 해임
6. 국외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7. 제품명 및 허가물질명:

「화학물질관리법」 제4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이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직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등 실적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즉시

보고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종업원수	명	매출액	억원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보고사항	실적 보고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등 취급에 대한 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귀하

처리절차

이 보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보고인	처리기관
	「화학물질관리법」 제5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서식] <개정 2025. 8. 7.>

금지물질 [ ] 제조 [ ] 수입 [ ] 판매 세부실적보고(년도분)

허가번호 :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		
용도		[ ] 국외로 전량 수출용 [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금지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금지물질명	금지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금지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첨부서류 : 금지물질 [ ]제조 [ ]수입 [ ]판매 상세 내역서 1부

210mm×297mm[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9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제한물질 [ ] 제조 [ ] 수입 [ ] 판매 [ ] 보관·저장 [ ] 사용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허가(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		
용도		[ ] 국외로 전량 수출용 [ ] 제한되지 아니한 용도		

제한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제한물질명	제한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제한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0호서식] <개정 2025. 8. 7.>

허가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세부실적보고(년도분)

허가(신고)번호 :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		
용도		[ ] 허가받은 용도 [ ] 국외로 전량 수출용 [ ]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표준가스 포함)		

허가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허가물질명	허가물질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요용도	허가물질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 삭제 <2025. 8. 7.>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2호서식] <개정 2025. 8. 7.>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보고(년도분)

신고번호: 제 호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장 경유하천		( )		

인체등유해성물질 수입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인체등유해성물질명	인체등 유해성물질 함유량 (%)	수입량 (톤/년)	주요용도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합 계					

210㎜ × 297㎜ [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개정 2019. 12. 20.>

제한물질·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보고 (년도분)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허가·승인번호		제 호	허가·승인일자	년 월 일
보관·저장시설 현황	시설수	총용량		
사업장 경유하천		( )		

제한·금지물질 수출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제한물질·금지물질명	함유량(%)	취급량 (톤/년)	주요 용도	제한물질·금지물질 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상온·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합 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4호서식] <개정 2025. 8. 7.>

유해화학물질 [ ] 제조 [ ] 판매 [ ] 보관·저장 [ ] 운반 [ ] 사용 세부실적보고(년도분)

보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 [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 ] 시약 판매업 [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신고)번호	제 호		허가(신고)일자	년 월 일
보관·저장시설 현황	시설 수	총용량		
사업장 경유 하천	( )			
택배 운반시	물류업체명			
	운반자 안전 교육 이수	[ ] 확 인 [ ] 미확인	내·외부 포장기준	[ ] 준 수 [ ] 미준수
	택배 운송 금지 물질	[ ] 포 함 [ ] 미포함		

인체등유해성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상온·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사고대비물질 취급 세부실적

제품명 (상품명)	물질명	함유량 (%)	취급량 (톤/년)	주 요 용 도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상온·상압에서의 상태		
						고체	액체	기체
전체 합계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 [ ] 제조 [ ] 수입 [ ] 사용 [ ] 판매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유량(%):	1.	2.	3.

(단위: 톤)

입고량								출고량								재고량	비고
연월일	이월량	제조·수입·구입량		구입명세				연월일	사용·판매량		판매명세						
		구분	수량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분	수량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용도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	

비고: 구매자 영업허가 구분란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한 영업 또는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신고한 영업의 업종을 적거나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로 적습니다.

297㎜×210㎜[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6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 보관·저장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유량(%):	1.	2. 3.

(단위: 톤)

연월일	이월량	위탁인				연월일	위탁인				재고량	비고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입고량		상호(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출고량		

297㎜×210㎜[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제품(상품)명: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등의 화학물질명	1.	2.	3.
고유번호 또는 화학물질 식별번호(CAS No.)	1.	2.	3.
함유량(%):	1.	2.	3.

(단위: 톤)

연월일	운반량	출발지점	도착지점	차량번호	위탁인				비고
					상호(성명)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97㎜×210㎜[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 <개정 2019. 12. 20.>

외부인 및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대리 참관자 출입 관리대장

연월일	출입시간 (00:00 ~ 00:00)	성명	연락처	차량번호	출 입 목 적

※ 외부인이 차량을 가져오지 않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적지 않습니다.

297㎜ × 210㎜[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 <개정 2025. 10. 1.>

자료보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자료보호 신청 내용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귀하

첨부서류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1부 2. 보호 대상 자료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0호서식] <개정 2025. 10. 1.>

자료보호 기간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사항	① 통지번호	
	자료보호 항목	
	자료 보호기간 만료 예정일	년 월 일
	② 보호요청 연장기간	년 월 일까지
	보호요청 연장 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귀하

210㎜ × 297㎜[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 신청 검토 결과서 원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자료보호 신청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유역(지방)환경청장 또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통보서의 통지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5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 <개정 2025. 10. 1.>

통지번호 제 호	자료보호 [ ] 신청 [ ] 기간 연장 검토 결과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자료보호항목				
자료보호기간	년 월 일까지			
자료비보호 항목				
자료비보호 사유				
이의신청 기한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

[ ] 신청
[ ] 기간 연장 검토 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 × 297㎜[백상지 80g/㎡]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총괄) 044 - 201 - 6783, 6784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등록.신고.면제, 유해성심사) 044 - 201 - 6787, 676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 - 201 - 6777, 67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有害性)·위해성(危害性)에 관한 심사·평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생산·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0., 2024. 2. 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2024. 2. 6., 2025. 10. 1.>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혼합물"이란 두 가지 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 또는 용액을 말한다.
3.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4. "신규화학물질"이란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을 말한다.
5. 삭제<2018. 3. 20.>
6.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이란 단회 또는 단시간 노출로 단기간 내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2.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이란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노출 이후 잠복기를 거쳐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6의3. "생태유해성물질"이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로 인하여 수생생물 등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7. “허가물질”이란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수입·사용하도록 제2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8.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10. 삭제<2024. 2. 6.>
10의2. “중점관리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중에서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또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나. 사람 또는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다.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라. 사람 또는 동식물에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10의3. “유해성미확인물질”이란 제10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고하였으나 유해성과 관련한 자료가 없는 등의 사유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1.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12.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13. “총칭명”(總稱名)이란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을 말한다.
14. “사업자”란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15. “제품”이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사용하는 물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서 소비자에게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혼합물로 이루어진 제품

나.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

16. 삭제<2018. 3. 20.>

17. "하위사용자"란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다만,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18. "판매"란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19. "척추동물대체시험"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3. 20., 2021. 4. 13.>

1.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사성물질
2. 「약사법」 제2조제4호·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4.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과 화장품에 사용하는 원료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제3호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
6.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8.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
10.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12.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
13.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4.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호·제8호에 따른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15.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가 생산·확보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화학물질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보가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품 내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5. 26.>

④ 국가는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하여 조사·연구·교육·홍보 등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⑤ 국가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척추동물의 사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러한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의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업자는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교환·활용하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와 관련한 국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③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용도·안정성 및 화학물질 노출 시 대응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 등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사업자는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

⑤ 사업자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경우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⑥ 유해성미확인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그 물질의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는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6.>

제6조(화학물질의 평가 등에 관한 기본계획)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25. 10. 1.>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

1.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등을 하기 위한 방법 및 계획

2.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에 필요한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관련 조사·연구, 안전관리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계 활동, 노동자 및 소비자 안전 지원과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유해성심사·위해성평가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①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삭제<2018. 3. 20.>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0. 1.>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8. 3. 20.>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3. 20.>

제9조 삭제 <2018. 3. 20.>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4. 2. 6., 2025. 10.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2025. 10. 1.>

1. 화학물질의 명칭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4. 화학물질의 용도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2024. 2. 6., 2025. 10. 1.>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2025. 10. 1.>

⑥ 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제목개정 2018. 3. 20.]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4. 2. 6.,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가. 기계에 내장(內藏)되어 수입되는 화학물질
   나. 시험운전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다.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들어있어 그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2. 위해성이 매우 낮은 화학물질로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3. 그 밖에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

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이 경우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는 물량의 산정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물량을 제외한다.

②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등면제확인 통지를 받은 자는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8. 10. 16.,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등면제확인의 기준 등 등록등면제확인 또는 변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5. 10. 1.>

[제목개정 2018. 3. 20.]

제12조(변경등록·변경신고 등)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1. 등록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등록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신고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2025. 10. 1.>

1. 신고한 자의 상호·성명 또는 소재지
2. 대표자(신고한 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사항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제13조(등록 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등) ① 누구든지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한 화학물질(이하 "미등록등화학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사용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13.>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에게 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판매의 중지, 회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21. 4. 13.,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 수입, 사용 또는 판매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의 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면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에 관하여는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3. 화학물질의 용도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6. 화학물질의 유해성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내 시험기관
2.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확인된 외국 시험기관

③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의 내용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시험계획서"라 한다)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제조자·수입자에게 시험의 구체적 내용, 자료의 제출기한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존화학물질 중 일부에 대하여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신설 2018. 3. 20., 2025. 10. 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시험기관에서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 또는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2025. 10. 1.>

⑥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2024. 2. 6., 2025. 10. 1.>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자료. 다만,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⑦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세부적인 내용,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시험방법, 제1항제7호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 시험계획서의 작성방법, 제4항에 따른 자료의 확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제목개정 2018. 3. 20.]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2025. 11. 11.>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사항 중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8. 3. 20.,

2025. 10. 1.>

③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 공동 제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개별제출확인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제목개정 2018. 3. 20.]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른 등록자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등록신청자료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②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화학물질이 등록되었는지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문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1.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본조신설 2025. 11. 11.]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5로 이동 <2025. 11. 11.>]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4. 17.]
[제16조의2에서 이동 <2025. 11. 11.>]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신설 2018. 4. 1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2025. 10. 1.>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8. 4. 17.>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개정 2018. 4. 17.>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4. 17., 2025. 10. 1.>

[제목개정 2018. 4. 17.]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1.>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한 내용과 다르게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17조의3(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의 연체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과징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3. 20.]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8조(유해성심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19조(유해성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위하여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를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0. 1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신설 2016. 1. 27., 2018. 10. 16.,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
2.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게 한 경우
3.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유해성 시험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취소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6. 1. 27., 2018. 10. 16., 2025. 10. 1.>

제19조의2(사용료)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 취득금액의 1천분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 대상이 되는 유해성 시험자료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인 경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사용료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⑤ 제2항·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 등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유재산법」 중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 9.]

제19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

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거나 유해성 시험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른 검토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생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2. 6.]

제20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제목개정 2024. 2. 6.]

제21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명칭이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이면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화학물질이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의 고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2조(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중에서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함께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시험기관이 적절하게 운영되는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8. 4. 17., 2025. 10.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변경지정의 기준·절차와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4. 17., 2025. 10. 1.>

제23조(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시험업무를 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2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시험기관의 지정이나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4. 17., 2025. 10. 1.>

1.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3.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4.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이 취소된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일한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22조에 따른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24조(위해성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 결과를 기초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1. 제조 또는 수입되는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화학물질
2. 유해성심사 결과 위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 자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25. 3. 25.,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5. 3. 25., 2025. 10. 1.>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25조(허가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중점관리물질과 그 밖에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조·수입·사용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이 낮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를 함께 지정·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1. 삭제<2018. 3. 20.>
2. 삭제<2018. 3. 20.>
3. 삭제<2018. 3. 20.>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허가물질의 명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허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허가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여 허가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2. 신기술의 상용화(常用化)로 허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3. 허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27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1.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외국정부, 국제기구 등이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제협약 등에 따라 제조·수입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4. 제26조제1호의 사유로 지정 해제된 허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지정예정 시기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

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명칭, 용도에 따른 금지의 내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지정의 해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2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신기술의 상용화로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사용하여도 위해성이 없게 되는 경우
2.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위해성이 없다는 새로운 과학적 증거가 확인되는 경우

제5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29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함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수하는 자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작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록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2024. 2. 6., 2025. 10. 1.>

1. 제10조제1항·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
2.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아니한 기존화학물질 중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3. 유해성미확인물질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자가 동일한 화학물질 또는 해당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동일인에게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최초로 양도할 때에만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0. 5. 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제공된 정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제공은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업장에서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0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이행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사용·판매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사용량·판매량, 안전사용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요청한 경우 그 자에게 화학물질의 특성, 용도, 제조량·수입량, 안전사용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5. 10. 1.>

제31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9조와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제29조·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제공 대상 정보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제6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3. 20.>

제3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노출정보,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1.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할 것
2. 제품 전체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
3.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조·수입할 수 있는 화학물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제목개정 2018. 3. 20., 2020. 5. 26.]

제33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품 1개당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하는 경우
2.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노출정보가 변경된 경우
3.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4.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신고한 내용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생산량·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 3.]

제34조 삭제 <2018. 3. 20.>

제35조(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해당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양수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30조를 준용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제목개정 2020. 5. 26.]

제36조 삭제 <2018. 3. 20.>

제37조 삭제 <2018. 3. 20.>

제7장 보칙

제38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 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하고 있거나 제조·생산하려는 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選任)하여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5. 10. 1., 2025. 11. 11.>

1. 제10조에 따른 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2.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변경신청
3.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신고 및 변경신고
4. 제32조에 따른 신고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하여 선임 또는 해임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2025. 10. 1.>

제39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또는 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고 있거나 제조·생산·수입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른 등록·신고·변경신고,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신고·변경신고 및 제32조에 따른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8. 3. 20.>

1.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2.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低減) 및 예방 등과 관련한 기술개발
3. 산업계의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활동과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자료 작성 등의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화학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3.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일반인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6., 2025. 10. 1.>

1.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의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수정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질의 유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4. 2. 6., 2025. 10. 1.>

1.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또는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실시
2.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④ 그 밖에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수정등에 관한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신설 2024. 2. 6., 2025. 10. 1.>

제42조의2(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4. 17., 2020. 5. 26., 2025. 10. 1.>

1.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
2. 화학물질 등록·신고의 이행 기반 구축
3.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4.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5.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
6.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관리
7.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
8.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 1. 27.]

제43조(보고와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1.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2.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
3. 삭제<2018. 3. 20.>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하는 자
5. 삭제<2018. 3. 20.>
6. 제48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43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관한 등록 또는 신고 등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4. 13.]

제44조(서류의 기록 및 보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0. 5. 26., 2025. 10. 1.>

1. 삭제<2018. 3. 20.>
2. 제10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고를 한 자(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3. 제11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거나 변경신청을 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
5. 삭제<2018. 3. 20.>
6. 삭제<2018. 3. 20.>

제45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제1항·제3항·제6항, 제18조제2항, 제24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성분 등에 대한 자료보호를 요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보호기간 동안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이미 공개된 자료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가 제1항 단서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호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18. 3. 20., 2025. 10.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보호 및 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8. 3. 20., 2025. 10. 1.>

제45조의2(권리·의무의 승계) ①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을 등록·신고를 한 자,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32조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지위를 승계한다.

② 국외제조·생산자가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변경하는 경우 새롭게 선임된 자는 기존에 선임된 자가 제38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한다. 이 경우 국외제조·생산자는 새롭게 선임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설 2025. 11. 11.>

③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자 또는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

정 2025. 10. 1., 2025. 11. 11.>

④ 제2항에 따라 새롭게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11.>

[본조신설 2023. 1. 3.]

제45조의3(자료유출사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자료유출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인지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장소·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를 요청한 자료(이하 "보호자료"라 한다)의 누설 또는 분실
2. 보호자료의 보관시설·장비의 파손 또는 파괴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원인 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하여 자료유출사고 조사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보호자료 보관시설·장비를 교체하거나 자료보호의 효력 정지 또는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2. 6.]

제4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인·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0. 5. 26., 2023. 1. 3., 2025. 10. 1., 2025. 11. 11.>

1.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3.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4.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5.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6.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7.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제47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23조 및 제41조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25. 10. 1.>

제4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25. 3. 25.,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

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1. 27., 2025. 3. 25., 2025. 10. 1.>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 3. 20.>

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본조신설 2016. 1. 27.]

제8장 벌칙

제49조 삭제 <2018. 3. 20.>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1. 4. 13.>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5. 삭제<2018. 3. 20.>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21. 4. 13.>

1. 삭제<2018. 3. 20.>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자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제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1.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
2.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3.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4.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제품의 안전한 사용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자

제5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3. 20.>

제5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개정 2018. 3. 20., 2018. 10. 16., 2023. 1. 3., 2025. 11. 11.>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자

4의2.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5.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7.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4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유출사고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24. 2. 6.>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개정 2024. 2. 6., 2025. 10. 1.>

부칙 <제11789호,2013.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톤 이상인 경우: 2015년 1월 1일
2.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70톤 이상인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50톤 이상인 경우: 2018년 1월 1일
4.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20톤 이상인 경우: 2019년 1월 1일
5.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 2020년 1월 1일

제2조(유독물질,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유독물 및 취급제한물질·취급금지물질은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및 제27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3조(화학물질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마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으로 본다.

제6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할 때에는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시험기관은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다.

부칙 <제13891호,2016. 1. 27.>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3항 및 제4항과 제4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12호,2018. 3.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0호·제15호, 제4조제4항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을 2019년 7월 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 지정·고시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등록 유예기간에 대해서는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신규화학물질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6조(등록면제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자 및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등록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제10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등록유예기간 이내의 화학물질 제조 등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종전의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다.

제8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5584호,2018. 4. 17.>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44호,2018. 10. 16.>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72호,2019. 1. 15.>(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제3항 또는 제111조에 따라”로 한다.

제21조 생략

부칙 <제17326호,2020. 5. 26.>(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034호,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172호,2023. 1.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9964호,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32호,2024.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0호의3, 제5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부칙 <제20860호,2025. 3. 2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65호,2025. 10. 1.>(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생략>···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83>까지 생략

<3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나목, 같은 조 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같은 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조 제10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0호의3,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나목,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1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전단·후단, 제17조제3항 본문·단서,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7조의3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3항,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의3제1항ㆍ제2항, 제20조, 제2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2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제2항, 제39조제1항,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제43조의2 전단, 제4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5조의2제2항, 제4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7조, 제48조제1항ㆍ제2항, 제54조제3항 및 법률 제11789호 부칙 제3조제1항 후단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10호의3,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제11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4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7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8조제1항ㆍ제3항, 제19조제1항ㆍ제4항, 제19조의2제3항제3호, 같은 조 제5항, 제19조의3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3조제5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3조제1항제4호ㆍ제5호, 제3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3항ㆍ제4항, 제45조의2제2항 및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환경부차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으로 한다.

<385>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132호,2025. 11. 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2023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12.] [대통령령 제36304호, 2026. 5. 6.,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총괄) 044 - 201 - 6783, 6784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등록.신고.면제, 유해성심사) 044 - 201 - 6787, 676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 - 201 - 6777, 67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 삭제<2018. 12. 24.>
3. “고분자화합물”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 경우 중량비 2퍼센트 이하의 단량체를 제외한 단량체로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이 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고분자화합물은 기존화학물질로 본다.
   가. 1종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연속하여 반복되는 분자로 이루어져 있을 것
   나. 각 분자 내 단량체단위의 반복수(反復數)에 따라 특징적 분자량 분포를 보일 것
   다. 세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가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단량체단위 또는 다른 반응물과 공유결합을 이루는 분자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라. 분자량이 같은 분자가 중량비로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반응물을 말한다.
5. “단량체단위”란 단량체가 반응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한 경우 고분자화합물에서 단량체가 반복되는 구조를 말한다.
6. “수평균분자량”이란 고분자화합물을 구성하는 모든 분자들의 분자량을 더한 무게를 총 분자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7. “나노물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가.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인 입자의 개수가 50퍼센트 이상 분포하는 물질

나. 3차원의 외형치수 중 최소 1차원의 크기가 1나노미터 이하인 풀러렌(fullerene), 그래핀 플레이크(graphene flake) 또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제3조(인체급성유해성물질 등의 지정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제6호의2·제6호의3 및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5. 8. 5.>
[제목개정 2025. 8. 5.]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을 정하여 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24.]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5. 10. 1.>

1. 삭제<2018. 12. 24.>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3.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유해성·위해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8. 2.]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 8. 2.]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18. 12. 24.>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회의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목적과 안건
3. 그 밖에 회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의결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질문하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 12. 24., 2025. 8. 5.>

1. 유해성평가위원회
2. 위해성평가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4. 정보제공심의위원회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 12. 24.>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한다.<개정 2025. 10. 1.>

1. 화학、환경、보건、독성、경제、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 화학물질 및 제품 관련 산업계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제1호의 사람 중에서 평가위원회의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평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8조 삭제 <2018. 12. 24.>

제9조 삭제 <2018. 12. 24.>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전문개정 2018. 12. 24.]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항)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으로 변경된 경우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다.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라. 1천톤 이상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변경된 경우

3. 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가 변경된 경우(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되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자의 상호, 소재지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5.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6.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의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톤을 말한다. <개정 2024. 7. 23.>

1. 삭제<2024. 7. 23.>

2. 삭제<2024. 7. 23.>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화학물질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화학물질별 유해성 또는 위해성,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24.]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4. 7. 9., 2025. 10. 1.>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시약 등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를 위한 화학물질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

가. 수평균분자량이 1만 이상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나. 수평균분자량이 1천 이상에서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분자량이 1천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25퍼센트 미만이고, 분자량이 500 미만인 분자의 함량이 10퍼센트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이내의 기존화학물질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다.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

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7. 비분리중간체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하에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하는 화학물질(이하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화학물질

가.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되어 있을 것(등록일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의 무게범위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된 무게범위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

다. 가목의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경우에는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도 각각 제13조제1호의3, 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5. 8. 5.>

1. 양이온성 고분자화합물(고체 상태로만 사용되고, 물에 녹지 아니하거나 분산되지 아니하는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미반응 단량체가 0.1중량퍼센트 이상 함유된 고분자화합물

가.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

나.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다. 중점관리물질

라.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것으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8. 12. 24.]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1. 삭제<2018. 12. 24.>
2.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는 해당 화학물질의 파기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이행계획의 보고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2024. 7. 23., 2025. 10. 1.>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의2. 개별 제조·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가. 삭제<2024. 7. 23.>

나. 삭제<2024. 7. 23.>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3.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6., 2018. 12. 24.>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제목개정 2018. 12. 24.]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법 제16조의5에서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2026. 5. 6.>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척추동물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제목개정 2018. 12. 24.]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의3(과징금의 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과징금을 수납한 사실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12., 2025. 10. 1.>

⑤ 삭제<2023. 12. 12.>

⑥ 삭제<2023. 12. 12.>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23. 12. 12.,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24.]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에 연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될 과징금(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는 과징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5. 8. 5., 2025. 10. 1.>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8. 나노물질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제17조(연구기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1. 27.>

1.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6.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거나 인정된 시험연구기관

제18조(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위해성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포함하는 위해성관리대책(이하 "위해성관리대책"이라 한다)의 이행 권고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 및 하위사용자에 대하여 위해성관리대책의 이행 권고
3.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해성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4장 허가물질 등의 지정 및 변경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10. 14.,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 2025. 10. 1.>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유해성
2. 해당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영향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 2025. 10. 1.>

1.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제조·수입·사용하는 사업자 및 하위사용자의 업체명, 업종과 사업장 소재지
2. 제조·수입·사용하는 허가후보물질의 용도 및 취급량
3. 해당 허가후보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 관련 정보(해당하는 물질이나 기술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2025. 10. 1.>

1.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검토 결과(제2항 본문에 따라 위해성 검토를 실시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삭제<2021. 10. 14.>
3.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관리대책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과 그 도입시기에 관한 정보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0. 14.,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1. 10. 14., 2025. 10. 1.>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물질로 지정하는 이유
3. 허가유예기간
4. 그 밖에 허가물질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0. 14., 2025. 10. 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개정 2018. 12. 24., 2021. 10. 14., 2025. 10. 1.>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허가면제용도
3. 허가유예기간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0. 14., 2025. 10. 1.>

제20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 등 대체 가능성 여부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해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2021. 10. 14.,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제한 또는 금지되는 용도와 내용

제20조의2(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8. 5., 2025. 10. 1.>

1.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이 함유되었을 것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함유되었을 것

[본조신설 2018. 12. 24.]

제5장 보칙

제21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12., 2026. 5. 6.>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8. 삭제<2018. 12. 24.>
9. 삭제<2018. 12. 24.>
10. 삭제<2018. 12. 24.>
11. 삭제<2018. 12. 24.>

제21조의2(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통보) 법 제38조제3항에서 "선임된 사실, 선임받은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선임된 사실
2. 선임받은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 결과
3.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4.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에 관한 정보

[본조신설 2018. 12. 24.]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12., 2026. 5. 6.>

1. 삭제<2018. 12. 24.>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의 면제에 관한 업무
4.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 등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에 관한 업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보 등에 관한 업무
7. 법 제32조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관한 업무

7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8.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등록신청 등에 관한 업무
9. 법 제42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45조에 따른 자료의 보호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그 처리한 내용을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 업무 처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등록 및 유해성 심사결과 등의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4., 2019. 12. 24., 2025. 10. 1.>

제24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 법 제4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8. 2., 2021. 10. 14., 2025. 10. 1.>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별표 제7호에 따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4. 화학물질관리협회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물질의 정보 생산, 위해성 저감 및 기술의 연구·개발·보급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인력·조직·예산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25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요건)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이하 "녹색화학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12. 23.>

1.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과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운영규정을 마련할 것
2.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8명 이상을 보유할 것. 이 경우 기관의 대표자가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전문인력 산정에 포함한다.
3. 최근 2년간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제26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절차)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정계획, 일정 및 지정요건,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등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녹색화학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1. 전문 분야
2. 기관 내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 현황
3.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장비 등의 확보 현황
4. 최근 2년간 녹색화학 분야 업무 실적 및 근거자료
5.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기후에너

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27조(녹색화학센터의 운영 등) ① 녹색화학센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녹색화학센터의 사업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매년 2월 말일까지
2.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집행 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를 토대로 녹색화학센터의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친환경 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의 개발,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의 대체기술 개발 등 녹색화학센터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8. 5., 2025. 10. 1.>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2026. 5. 6.>

1.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
2.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
3.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에 관한 활동
4. 삭제<2018. 12. 24.>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본조신설 2016. 8. 2.]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1. 10. 14.]

제30조(자료의 보호)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 8. 5., 2025. 10. 1.>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결과에 관한 자료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 4. 2., 2024. 7. 23., 2025. 10. 1.>

1.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 평가 및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
2.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 및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3.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4. 삭제<2025. 8. 5.>
5.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5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조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6.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9. 제18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관리대책의 마련
10.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른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및 위해성평가의 실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신설 2024. 4. 2., 2024. 7. 23., 2025. 8. 5., 2025. 10. 1., 2026. 5. 6.>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2. 삭제<2024. 7. 23.>
3.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변경신고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5.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
6.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문의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6의2. 법 제16조의4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의 접수 및 승인
7.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제출명령
8.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 및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9.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10.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고시
1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12. 법 제31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제공을 위한 통지 등 필요한 조치
13. 삭제<2025. 8. 5.>
14.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4의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조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5. 삭제<2025. 8. 5.>

16.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7.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로 한정한다)
18.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의 접수 및 통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개정 2017. 12. 26., 2018. 12. 24., 2023. 12. 12., 2024. 4. 2., 2025. 8. 5., 2025. 10. 1.>

1. 삭제<2018. 12. 24.>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5. 삭제<2025. 8. 5.>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 등(제1항제7호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출입·검사는 제외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과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8.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신설 2016. 8. 2., 2018. 12. 24., 2024. 4. 2., 2024. 7. 23., 2025. 10. 1.>

1.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2. 제29조의2제2호에 따른 기술 개발·조사 및 보급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16. 8. 2., 2017. 12. 26., 2018. 12. 24., 2021. 10. 14., 2023. 12. 12., 2024. 4. 2., 2024. 7. 9., 2024. 7. 23., 2025. 8. 5., 2025. 10. 1., 2026. 5. 6.>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및 통지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제공 및 비용의 징수
5.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사실의 조사
6.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및 승인의 취소
7. 법 제1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결정, 감면 및 징수
8. 법 제19조의3에 따른 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적정성 검토
9.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선임 또는 해임 사실에 관한 신고의 접수
10. 법 제39조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운영
1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의 공개
12.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공개된 정보의 수정등 요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토·조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법 제42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4.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자료로 한정한다)
15. 법 제45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위 승계 및 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접수
16.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한다.<개정 2016. 8. 2., 2018. 12. 24., 2021. 10. 14., 2024. 4. 2., 2024. 7. 23., 2025. 10. 1., 2026. 5. 6.>

1. 법 제42조의2제7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의2. 제19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삭제<2026. 5. 6.>
3. 삭제<2024. 7. 23.>
4. 제29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5. 삭제<2017. 12. 26.>
6. 삭제<2018. 12. 24.>
7. 삭제<2018. 12. 24.>
8. 삭제<2018. 12. 24.>
9. 삭제<2017. 12. 26.>
10. 삭제<2018. 12. 24.>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신설 2026. 5. 6.>

1.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 지원
2. 제29조의2제3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2제5호 및 이 영 제29조의2제1호의 사항에 대한 법 제42조의2에 따른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신설 2026. 5. 6.>

1. 한국환경공단
2. 한국환경보전원
3. 화학물질관리협회

[제목개정 2021. 10. 14.]

제6장 벌칙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칙 <제25835호,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6. 8. 2.>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규화학물질: 2015년 6월 30일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고시일부터 6개월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보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가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는 이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된 시험기관

부칙 <제27434호,2016. 8.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02호,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협회에 접수된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대하여 해당 자료가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보호대상이 아닌 자료임을 통지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5항제9호에 따른다.

부칙 <제29413호,201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서 연간 1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30일 이내에 그 검토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제3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예정량을 등록하였으나 이 영 시행 당시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제30229호,2019. 12. 3.>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56호,2019. 12. 24.>(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3(까지 생략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1항 ”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1항 ”으로 한다.

제33조 생략

부칙 <제30849호,2020. 7.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061호,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1조제1항제21호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952호,2023. 12. 12.>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385호,2024. 4. 2.>

이 영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689호,2024. 7. 9.>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749호,2024. 7.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5호·제5호의2, 같은 조 제2항제14호·제14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제11호·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 신고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접수된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결과 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3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다.

부칙 <제35695호,2025.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규정(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

부칙 <제35804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4조제4호, 제5조제2항, 제5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의3제2항, 제14조의2제5호, 제15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6호,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9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5호,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7호사목,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8호, 제13조제1호의3ㆍ제2호의2, 제15조의3제7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20조의2제2호,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30조제1항 단서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6조제3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별표 4 제1호라목 및 같은 표 제2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표의 대상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70>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939호,2025. 12. 23.>(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6055호,2026. 1. 27.>(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5) 까지 생략

<5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2>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6304호,2026. 5. 6.>

이 영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제3호 및 제31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8. 5.>

인체등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1. 인체급성유해성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50mg/kg)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50밀리그램(50mg/kg) 초과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2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200밀리그램(200mg/kg) 초과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기체나 증기로 노출시킨 경우)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500피피엠(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2.0밀리그램(2.0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500피피엠(500ppm) 초과 2,500피피엠(2,500ppm) 이하이거나 리터당 2.0밀리그램(2.0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분진이나 미립자로 노출시킨 경우)	1)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0.5밀리그램(0.5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4hr)가 리터당 0.5밀리그램(0.5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마. 피부 부식성 및 자극성	1) 피부에 3분 이하의 시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시간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壞死)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2) 피부에 3분 초과 1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3) 피부에 1시간 초과 4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노출시킨 경우 14일 이내에 표피에서 진피까지 괴사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바. 특정 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1회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1회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사. 기타	1) 가목1), 나목1), 다목1) 또는 라목1)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가목2), 나목2), 다목2) 또는 라목2)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2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마목1)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4) 마목2)·3) 또는 바목에 해당하는 인체급성유해성물질을 10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인체만성유해성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 특정 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1)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질적으로 우수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건강과 관련된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나. 변이원성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다.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라.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 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 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마. 기타	1) 가목에 해당하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10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0.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라목에 해당하는 인체만성유해성물질을 0.3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3. 생태유해성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 어류에 대한 급성독성	1)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초과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시험어류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농도(LC50, 96hr)가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나. 물벼룩에 대한 급성독성	1) 시험 물벼룩 수의 반에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 물벼룩 수의 반에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초과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시험 물벼룩 수의 반에 유영저해를 일으킬 수 있는 농도(EC50, 48hr)가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다. 조류(藻類)에 대한 급성독성	1) 시험 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E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시험 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E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0.01밀리그램(0.01mg/L) 초과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시험 조류의 생장률을 반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농도(EC50, 72hr 또는 96hr)가 리터당 0.1밀리그램(0.1mg/L) 초과 리터당 1.0밀리그램(1.0mg/L) 이하인 화학물질
라.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1)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001밀리그램(0.0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2)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001밀리그램(0.0001mg/L) 초과 리터당 0.001밀리그램(0.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3) 어류, 물벼룩 또는 조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에서 무영향농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향을 주는 농도(ECx)가 리터당 0.001밀리그램(0.001mg/L) 초과 리터당 0.01

	밀리그램(0.01mg/L) 이하인 화학물질
마. 기타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유해성물질을 1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 가목1), 나목1), 다목1) 또는 라목1)의 화학물질 나) 라목2) 중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유해성물질을 2.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 가목2), 나목2) 또는 다목2)의 화학물질 나) 라목2) 중 빠르게 분해되는 화학물질 다) 라목3) 중 빠르게 분해되지 않는 화학물질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태유해성물질을 25퍼센트 이상 함유한 혼합물 가) 가목3), 나목3) 또는 다목3)의 화학물질 나) 라목3) 중 빠르게 분해되는 화학물질

비고

1. 흡입독성의 단위는 기체 또는 증기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ppm으로, 분진 또는 미립자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mg/L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ppm 또는 mg/L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mg/L = (ppm × 분자량/24.45) × 1/1,000(상온, 상압)

2. 수생생태독성을 평가할 때 대상 물질이 수계(水界)에서 쉽게 흡착되거나 분해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수행한 시험 결과를 기준으로 생태유해성물질로 지정할 수 있다.
3. 어독성 시험자료가 96시간 기준이 아닌 48시간 기준인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계수 2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어종(魚種)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내 서식 어류를 우선하여 고려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해산물이 인체동유해성물질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이 항목별 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5. 인체동유해성물질의 항목별 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라도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체동유해성물질로 지정하지 않거나,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혼합물 함량 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5. 8. 5.>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제3조의2 관련)

1. 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변이원성(變異原性)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다. 생식독성	1)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의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라. 내분비계 장애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 법 제2조제10호의2나목의 화학물질

구분	고시기준
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半減期)가 4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화학물질이 어류 등 생물의 체내로 들어와서 남아 있는 정도를 표시한 것으로, 생물 체내의 화학물질 농도를 환경에서의 농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00을 초과할 것 3) 독성: 별표 1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할 것
나. 1) 및 2)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가 5,000을 초과할 것

3.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의 화학물질

가.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하거나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킨다는 소견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4.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의 화학물질: 호흡기과민성 물질(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국제적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8. 12. 24.>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제10조의2제3호 관련)

용도분류	내용
1. 흡수 및 흡착제 (Absorbents and Adsorbents)	가스나 액체를 흡수 또는 흡착하는 물질
2. 접착제·결합제 (Adhesive·Binding agents)	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는 물질 또는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
3. 에어로졸 추진제 (Aerosol propellants)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로서 용기에서 가스를 분사함으로써 내용물을 분출시키는 물질
4. 응축방지제 (Anti-condensation agents)	물체의 표면에서 액체가 응축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 부동액 (Anti-freezing agents)	냉각에 의해서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
6. 접착방지제 (Anti-set-off and Anti-adhesive agents)	두 개체 접촉면의 접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7. 정전기 방지제 (Anti-static agents)	정전기 발생을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물질
8. 표백제 (Bleaching agents)	섬유 등 착색물체의 색깔을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제거함으로써 백색·무색으로 하는 물질
9. 세정 및 세척제 (Cleaning and Washing agents)	표면에 오염물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사용하는 물질
10. 착색제 (Colouring agents)	다른 물질을 발색하도록 하는 물질
11. 착화(錯化)제 (Complexing agents)	주로 중금속 이온인 다른 물질에 배위자(配位子)로서 배위되어 착물(복합체)을 형성하는 물질
12. 전도제 (Conductive agents)	섬유류와 플라스틱류의 대전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조공정에서 첨가·도포하는 물질
13. 건축용 물질 및 첨가제 (Construction materials additives)	건축물의 품격을 높이고 유지·보존을 목적으로 건축용 자재에 사용하는 물질
14. 부식방지제 (Corrosion inhibitors)	공기를 비롯한 화학물질, 옥외노출 등으로 생기는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5. 화장품	화장품 및 세면용품에 사용하는 물질

(Cosmetics)	
16. 분진결합제 (Dust binding agents)	분진의 발생·분산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7. 전기도금제 (Electroplating agents)	금속표면의 세척 및 세정을 위해서 쓰이는 물질 및 도금공정에서 도금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18. 화약, 폭발물 (Explosives)	화학적 안전성이 있으나 화학적 변화를 거침으로써 폭발 또는 팽창을 동반한 다량의 에너지 및 가스를 매우 빠르게 발생시키는 물질
19. 비료 (Fertilizers)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해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20. 충전제 (Fillers)	고무, 플라스틱, 페인트, 세라믹 등에 광택, 인장, 발색 등 기능 향상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
21. 정착제 (Fixing agents)	섬유의 염료와 반응하여 색이 정착하도록 하는 물질
22. 내화·방연제 및 난연제 (Flame retardants and Fire preventing agents)	주로 섬유 및 플라스틱의 연소 방지·지연 효과를 위해 작업공정 중에 첨가·반응시키는 물질
23. 부유제 (Flotation agents)	광물질의 제련 공정 중에서 광물질을 농축·수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
24. 주물용 융(融)제 (Flux agents for casting)	광물질을 녹이는 공정에서 산화물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25. 발포제·기포제 (Foaming agents)	주로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에 첨가해서 작업공정 중 가스를 발생시켜 기포를 형성하게 하는 물질
26. 식품 및 식품첨가물 (Food·Foodstuff additives)	식품(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식품을 제조·가공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식품에 넣거나 첨가하는 물질
27. 연료 (Fuel)	연소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물질
28. 연료첨가제 (Fuel additives)	연소 효율,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연료에 첨가하는 물질
29. 열전달제 (Heat transferring agents)	열을 전달하고 열을 제거하는 물질
30. 유압유 및 첨가제 (Hydraulic fluids and additives)	각종 압축기에 넣는 액체(기름) 및 압력 전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
31. 함침(含浸)제	가공성제품의 품질향상, 형태 유지 등을 목적

(Impregnation agents)	으로 소재에 미리 처리하여 놓는 물질
32. 절연제 (Insulating materials)	전기기기에 있어서 도체 이외의 부분을 전류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물질
33. 중간체 (Intermediates)	다른 화학물질을 합성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34. 실험실용 물질 (Laboratory chemicals)	과학적 실험, 분석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물질
35. 윤활유 및 첨가제 (Lubricants and additives)	두 표면 사이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투입하는 물질
36. 비농업용 농약 및 소독제 (Non-agricultural pesticides and Disinfectants)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활동을 방해·저해하는 물질. 다만, 농약,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동물용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37. 향료 (Odor agents)	향을 내는 물질
38. 산화제 (Oxidizing agents)	특수한 조건에서 산소를 쉽게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수소를 제거하는 물질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물질
39. pH 조절제 (pH-Regulating agents)	수소이온농도(pH)를 조절하거나 안정화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40. 농약 (Pesticides)	농작물을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잡초, 그 밖의 병해충으로부터 방제하는데 사용하는 물질. 다만, 비료는 제외한다.
41. 의약품 (Pharmaceuticals)	의약품·의약외품이나 동물용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외품의 활성성분인 물질
42. 사진현상재료 등 광화학물 (Photochemicals)	영구적인 사진 이미지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물질
43. 공정속도조절제 (Process regulators)	화학반응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공정속도를 제어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44. 환원제 (Reducing agents)	주어진 조건에서 산소를 제거하거나 또는 화학반응에서 전자를 제공하는 물질
45. 복사용 물질 (Reprographic agents)	전자복사기 등에 쓰여 영구적인 이미지 생성에 사용하는 물질
46. 반도체용 물질 (Semiconductors)	규소단결정체처럼 절연체와 금속의 중간 정도의 전기저항을 갖는 물질로서 빛, 열 또는 전자기장에 의해 기전력을 발생하는 물질
47. 염화제	일반적으로 직물, 가죽, 종이 등을 부드럽게

(Softners)	하거나 고무 등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배합해 쓰는 가교결합약제 등의 물질
48. 용제 (Solvents)	녹이거나 희석시키거나 추출, 탈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질
49. 안정제 (Stabilizers)	제조공정이나 사용 중에 열, 빛, 산소, 오존 등에 의해서 열화가 일어나 모양, 색깔, 물성이 변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
50. 계면활성제·표면활성제 (Surface-active agents)	한 분자 내에 친수기와 소수기를 지닌 화합물로서 액체의 표면에 부착해서 표면장력을 크게 저하시켜 활성화해주는 물질
51. 탄닌제 (Tanning agents)	탄닝제, 가죽마감제, 가죽케어 등 가죽 처리 물질
52. 점도조정제 (Viscosity adjusters)	수지 등 고분자화합물을 용해한 점성재료의 농도를 안정화시켜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물질
53. 가황(加黃)제·가황촉진제 (Vulcanizing agents)	고무와 같은 화합물에 가교반응을 일으켜 탄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단단하게 하는 물질
54. 용접제 (Welding and Soldering agents)	금속류의 용접 및 납땜질을 할 때 사용하는 물질
55. 기타(Others)	제1호부터 제54호까지에서 규정한 물질 외의 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0. 1.>

동록신청자료 제출이 일부 생략되는 신규화학물질의 기준(제13조제1호 관련)

기간	대상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화학물질의 해외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여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로서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킬로그램 이상 1톤 미만인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5. 10. 1.>

과징금의 산정기준(제15조의2제1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기간에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기간은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화학물질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한다.

다. 가목에 따른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를 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연간 매출액에 7,200분의 1(단일 사업장을 보유한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의 14,400분의 1을 말한다)을 곱하여 산정한다.

라. 다목에 따른 연간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을 시작한지 3년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연간 매출액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산정한다.

마. 다목에서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호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다만,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다.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법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3년 이상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 기간 중에 법 제4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3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라.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	법 제41조제1항제4호	개선명령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6. 5.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4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이상

		위반	위반	위반
가.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등번제확인 변경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2호	600	800	1,000
다.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별제출확인을 받지 않고 등록신청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3호	600	800	1,000
라. 법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	600	800	1,000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의2	600	800	1,000
바. 법 제43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5호			
1)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600	800	1,000
2)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00	800	1,000
사. 법 제44조에 따른 서류의 기록·보존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6호	600	800	1,000
아. 법 제4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	600	800	1,000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5. 1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37호, 2026. 5. 12., 일부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총괄) 044 - 201 - 6783, 6784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등록.신고.면제, 유해성심사) 044 - 201 - 6787, 6769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 - 제한.금지물질, 허가물질, 중점관리물질) 044 - 201 - 6777, 678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의3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5. 8. 7.]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3조 삭제 <2018. 12. 28.>

제4조 삭제 <2018. 12. 28.>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2. 7. 29., 2024. 4. 9., 2025. 8. 7., 2025. 10. 1.>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4의2.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별표 3의2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하 이 호에서 "통제된 조건"이라 한다) 하에서 동일한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

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5.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이하 "등록신청자료"라 한다)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개별제출확인서 사본(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8.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9.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이하 "국외제조·생산자"라 한다)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0.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1.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1. 10. 14., 2024. 10. 10.>

1.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의2. 영 제13조제1호의3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및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나.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별표 1에서 작성을 생략하도록 한 항목에 관한 서류

1의3. 영 제13조제1호의4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다만,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현장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3. 영 제13조제3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3의2.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중 영 제13조제5호에 따른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에 대한 자료(등록신청하려는 자가 다른 화학물질을 등록하면서 이미 제출한 자료만 해당한다)

3의3. 영 제13조제6호의2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가.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나. 제1항제5호에 따른 증명자료

4. 영 제13조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별표 4의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중 해당 화학물질과 관련된 서류

5. 영 제13조제9호에 따른 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 신청 시 제출한 자료와 같은 서류

③ 영 제13조제1호의3에서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모두에서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별표 3의3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2025. 10. 1.>

1. 별표 1에 따른 시험자료

2.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제출한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삭제<2018. 12. 28.>
2. 삭제<2018. 12. 28.>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제6조의2(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8. 7.>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10조의2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
2. 영 제10조의2제2호 또는 제3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분기별 현황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28.]

제6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으며,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4. 4. 9., 2025. 8. 7.>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려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 8. 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28일 이내)에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④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통지서에 따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고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보완한 자료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본조신설 2018. 12. 28.]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의 면제 확인(이하 "등록등면제확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까지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6. 8. 4., 2018. 12. 28.>

1.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 8. 4., 2018. 12. 28., 2025. 8. 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16. 8. 4., 2018. 12. 28., 2024. 4. 9.>

④ 등록등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2024. 10. 10.>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등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등면제확인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

⑥ 영 제11조제1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통제된 조건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2025. 10. 1.>

[제목개정 2018. 12. 28.]

제7조의2(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영 제11조제1항제4호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은 사항 중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제조·수입 예정량 또는 연구기관이 변경된 경우
2. 영 제11조제1항제6호의 화학물질로서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또는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다른 목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변경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4.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등록등면제확인의 변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7조제1항제1호의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3.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1.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의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통지 현황
2.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변경신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청 결과 현황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및 그 변경에 관한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4. 4. 9.>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전문개정 2018. 12. 28.]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삭제<2018. 12. 28.>
5.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삭제<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확인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2020. 12. 17., 2024. 4. 9.>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총 2회까지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삭제<2018. 12. 28.>
2. 삭제<2018. 12. 28.>

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에서 상위의 무게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10. 1.>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8. 12. 28., 2025. 10. 1.>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등록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8. 12. 28., 2025. 10. 1.>

1.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전문개정 2018. 1. 15.]

[제목개정 2018. 12. 28.]

제11조의2(신고한 자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을 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1.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어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로운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3. 신고한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학물질의 특성 또는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어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변경된 경우
   나.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4. 해당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5. 해당 화학물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개정 2024. 4. 9., 2025. 8. 7.>

[본조신설 2018. 12. 28.]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본문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5. 10. 1.>

②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4 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제13조(외국 시험기관 확인) ①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 시험기관이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
2. 외국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한다는 진술서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외국 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제14조(시험계획서 대체 제출)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중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자료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1. 시험자료의 명칭
2. 삭제<2018. 1. 15.>
3. 시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유
4. 시험의 구체적 방법
5. 예상 시험 일정
6.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일자

제15조(시험계획서의 검토 및 통지)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시험내용 및 시험일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와 시험자료의 제출기한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시험계획서가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1. 시험조건 또는 방법
2. 시험자료의 제출기한
3. 그 밖에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시험계획서의 검토 결과를 통지받은 자는 시험자료의 제출기한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시험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제출기한까지 시험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현장 확인을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4. 9.>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비용) 법 제14조제4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확보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15조의3(신규화학물질의 신고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중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소유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28.]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4.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8.>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상호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5., 2026. 5. 12.>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2026. 5. 12.>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을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사항 중 신고한 자의 연락처,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용도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8. 1. 15., 2018. 12. 28., 2025. 10. 1.>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협의체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6. 5. 12.>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⑥ 삭제<2026. 5. 12.>

⑦ 삭제<2026. 5. 12.>

⑧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들이 각자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제16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8. 4., 2018. 1. 15., 2018. 12. 28., 2025. 10. 1., 2026. 5. 12.>

⑩ 대표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8. 12. 28.>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1.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통지서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은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제1항에 따른 문의서를 제출한 자의 정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9.>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마련할 때에는 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용분담 및 비용계상의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요청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자료제출 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요청서에는 자료의 제출기한을 명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2.]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유예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2.]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4. 4. 9.>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화학물질안전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2025. 10. 1.>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에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과징금 분할납부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등록을 통지한 날 또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변경등록을 통지한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이하 “유해성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유해성심사를 해야 한다.<신설 2018. 12. 28.>

1. 등록유예기간의 만료일
2. 대표자를 비롯한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④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8., 2024. 4. 9.>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로 인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⑤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8. 12. 28.>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1. 10. 14., 2024. 4. 9.>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유해성심사 결과에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 2024. 4. 9.>

③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신설 2021. 10. 14., 2024. 4. 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심사 결과에 대한 통지, 의견제출, 검토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2021. 10. 14., 2024. 4. 9.>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

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또는 생태유해성물질(이하 "인체등유해성물질"이라 한다)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과정·절차 등을 가공하지 아니하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제26조(유해성평가의 방법)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영 제16조에 따른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성평가를 시급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이를 우선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9.>

1. 국내 제조·수입량 및 수출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화학물질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등에 관한 국내외 관련법령·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방법에 관하여는 별표 9를 준용한다.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이하 "유해성 시험자료"라 한다)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③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받은 자는 외국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 등에 필요한 경우 사용승인서 또는 그 사본을 해당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삭제<2016. 8. 4.>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6. 8. 4., 2018. 12. 28., 2025.

10. 1.>

제27조의2(사용료) ①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용도, 사용승인의 신청인이 제17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인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법 제19조의2제3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2. 유해성 시험자료를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공공단체에 사용승인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용료의 결정 및 감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4. 7. 10.]

제27조의3(신고 시 제출된 화학물질 자료의 검토 등) ①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자료를 생산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이후 영 제16조제6호에 따른 유해성평가의 실시가 예상된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해당 화학물질이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해성 시험자료
2. 그 밖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생산이 필요하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 유해성 시험자료 외의 자료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④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1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유해성에 관한 새로운 정보(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 및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 결과를 통하여 확인된 정보만 해당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7.]

제28조(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21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해당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3.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시험기관 지정의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2항 전단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10. 1.>

1. 시설 현황 내역서
2. 운영 현황 내역서
3. 시험능력을 증명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지정신청서 및 서류를 검토하여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시험기관의 명칭, 대표자
2. 시험기관 또는 시설의 소재지
3. 세부 시험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변경지정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2호 서식의 지정서를 변경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1. 제2항에 따른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22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연구기관의 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인력과 연구시설·장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5. 10. 1.>

제30조(시험기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지정된 날부터 매 2년마다 그 운영실태 및 사후관리에 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내용 및 시험결과의 적정성·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기준, 제3항에 따른 조사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및 시험기관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시험기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전년도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12. 28.]

제3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제조·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3.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및 사용형태
4.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의 피해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이용 가능한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2. 그 밖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알려진 국내외 정보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해성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해성평가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위해성평가 기간
3.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 평가
4. 해당 화학물질의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평가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량-반응평가
6.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평가
7.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 대상물질의 선정 등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8.>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8. 7.>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보완이 필요한 경우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을 명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3.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4.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
5. 해당 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에 관한 자료

제34조의2(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화학물질이 영 별표 1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3.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해당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사람의 유형
4.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후보물질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2. 7. 29.]

제4장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8. 7., 2025. 10. 1.>

1. 정보 제공자의 성명 또는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2. 상품명 및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 및 고유번호. 다만,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5.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인체 및 환경 유해성과 관련된 정보
7. 노출시나리오 요약정보 및 위해성저감대책 등 위해성에 관한 정보
8.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함유된 경우 함유량 등의 정보
9.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10.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미확인물질이 혼합물의 함량 기준(별표 7 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원고시로 정한 것을 말하며, 이하 "한계농도"라 한다) 미만으로 함유된 혼합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유해성미확인물질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한 한계농도를 적용하며, 한계농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작은 값을 적용한다.<신설 2025. 8. 7.>

1.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3호마목에 따른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2. 별표 1의2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유해성미확인물질: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에 적용되는 한계농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제35조의2 및 제36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5. 8. 7., 2025. 10. 1.>

1.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35조의2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에 대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가.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
   나. 유해성미확인물질
2. 별표 7에 따라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물질(유해성미확인물질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5. 8. 7.>

⑤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을 말한다.<신설 2018. 12. 28., 2021. 10. 14., 2025. 8. 7., 2025. 10. 1.>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공범위에 대한 승인) ①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는 기후에

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화학물질의 명칭 및 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2.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승인 신청 정보 및 신청 사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7조에 따른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가 화학물질안전정보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5. 10. 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 대상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등의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 대상에 대한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10.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인신청 및 승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5. 10. 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승인절차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신설 2020. 12. 17., 2025. 10. 1.>

[본조신설 2018. 12. 28.]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여 제공한다. <개정 2021. 10. 14., 2023. 12. 18.>

1.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제공
2.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제출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별지 제26호서식의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를 첨부하여 제공. 다만, 다음 각 목의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여부만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
   나.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제7호의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2018. 12. 28.>

③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화학물질안전정보 중 위해성과 관련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제37조(변경된 정보제공 방법 등) 법 제29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통지를 받은 결과 새로운 위해성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양도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새로운 용도가 확인된 경우
4. 화학물질에 관한 새로운 규제 정보가 확인된 경우

제38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하위사용자 및 이를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8. 7.>

1. 하위사용자·판매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량·판매량
4. 해당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노출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하는 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8. 7.>

1. 제조·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과 상품명
3.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량·수입량
4. 해당 화학물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방법, 화재 등 비상 시 대처방법, 누출 시 방제요령, 보호구 및 폐기방법 등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6.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과 유해성 정보
7. 해당 화학물질에 관한 규제 정보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의 구성성분이나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이하 이 조 및 제39조에서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이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 또는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7에 따라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함량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5. 8. 7., 2025. 10. 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제39조(하위사용자 등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상대방이 요청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0조(정보제공을 위한 통보방법 및 절차)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제2호로 한정한다)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제1호 및 제3호로 한정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자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9., 2025. 8. 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해당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로 지정되거나 변경지정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4. 4. 9., 2025. 8. 7.>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2. 법 제20조, 제25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고시
3. 법 제2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개
4. 법 제26조 또는 제28조에 따른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 해제

제5장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 <개정 2018. 12. 28.>

제41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중점관리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1. 해당 제품의 사용설명서
2. 해당 제품의 사진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을 확인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자로서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제품을 생산·수입하기 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을 신고한 후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5. 8. 7.>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함유제품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8. 12. 2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18. 12. 28., 2025. 10. 1.>

[제목개정 2023. 12. 18.]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5. 10. 1.>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 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개정 2025. 10. 1.>
[본조신설 2023. 12. 18.]

제43조 삭제 <2018. 12. 28.>

제44조 삭제 <2018. 12. 28.>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8. 12. 28., 2025. 10. 1.>
1. 해당 제품명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및 함량
3. 해당 제품의 사용 가능한 용도 또는 사용상의 제한 용도
4. 해당 제품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조건
5. 해당 제품의 노출 시 대처방법 등 취급 시 주의사항

②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을 양도하는 자는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은 제외한다.<개정 2018.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8.>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자료에 따라 작성·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해야 한다.<개정 2018. 12. 28., 2023. 12. 18.>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4. 4. 9.>

제47조 삭제 <2018. 12. 28.>

제48조 삭제 <2018. 12. 28.>

제6장 보칙

제49조(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 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말한다)를 가진 자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선임 또는 해임 사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4. 4. 9., 2025. 8. 7., 2026. 5. 12.>

1.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2026. 5. 12.>

④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4호서식의 신고증을 내주어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4. 4. 9., 2025. 8. 7.>

⑤ 삭제<2018. 12. 28.>

제50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신청) ①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3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 8. 7., 2025. 10. 1.>

③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녹색화학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른다.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를 실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

②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1항·제5항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등록 형태(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
   마.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요약자료
   바.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사.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2.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정보
   나. 다음의 사항에 관한 유해성심사 또는 유해성평가의 결과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2) 물리적·화학적 특성
      3) 유해성
      4) 취급 시 주의사항 등 안전사용에 관한 내용
      5)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③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나. 화학물질별 최대 제조·수입량의 범위
   다.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라. 소비자 용도에 해당하는 용도가 있는지 여부
   마. 그 밖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공단의 이사장이 인정하는 정보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법 제12조에 따라 변경신고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제2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이 경우 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정보는 그 작성사유를 포함한다.
3.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화학물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1.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해당 여부

2. 위해성에 관한 결과

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7.]

제51조의2(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 등)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 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이하 "수정등"이라 한다)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의2서식의 요청서에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여야 한다.

1. 공개된 정보보다 신뢰성이 높거나 같은 자료
2. 공개된 정보의 유해성 항목이 아닌 새로운 유해성 항목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수정등의 요청을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에 따라 법 제4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인 또는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7.]

제52조(출입·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8. 12. 28.>

1.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정기 지도·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위해성으로 인하여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화학물질의 등록·변경등록, 신고·변경신고, 등록등면제확인 및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의무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5.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호 중인 자료가 자료보호를 요청할 수준으로 적절하게 관리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환경오염·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1. 17., 2018. 12. 28., 2024. 4. 9., 2025. 8. 7.>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의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3.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검사
7.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8.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3조(검사기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 및 함유제품의 정보를 확인 또는 시험·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21. 10. 14., 2025. 8. 7.>
1. 국립환경과학원
1의2. 화학물질안전원
2. 공단
3.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보건환경연구원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5.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6.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

제54조(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보존해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판매·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2. 28., 2023. 12. 18.>
1. 삭제<2018. 12. 28.>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변경등록·신고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2의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서식의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등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6. 삭제<2018. 12. 28.>
7. 법 제29조, 제30조, 제35조에 따라 정보제공한 자료
8.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대상이 된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서류 중에서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서류는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제55조(자료보호의 요청)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자료보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38호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18. 1. 15., 2021. 10. 14., 2024. 4. 9.>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한 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보호가 제2항에 따라 수리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해당 자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21. 10. 14.>

④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요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21. 10. 14., 2025. 10. 1.>

[제목개정 2021. 10. 14.]

제55조의2(자료보호의 해지 요청) ①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9.>

②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따른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에 따라 요청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4. 4. 9.>

[본조신설 2018. 12. 28.]

제55조의3(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6. 5. 12.>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개정 2025. 8. 7.>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라 업무효력 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에 그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6. 5. 12.>

[본조신설 2023. 12. 18.]

제56조(수수료) ① 법 제46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8. 7., 2025. 10. 1.>

1. 제5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2022년 1월 1일
2. 별표 1의2에 따른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 2026년 1월 1일

[본조신설 2021. 10. 14.]

부칙 <제582호,2014.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영 부칙 제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제1호의 통지서를 제공한 제조·수입자의 정보(통지서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본래의 소유자 정보를 말한다)
3.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삭제 <2018. 1. 15.>

제4조(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

인 결과의 통지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호의 신규화학물질: 2015년 12월 31일
2.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5호의 신규화학물질: 2017년 12월 31일

부칙 <제615호,2015. 10.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2호,2016. 8.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7조제5항, 제27조제4항·제5항 및 별지 제27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결과보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협회의 장에게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대한 실적의 보고에 대해서는 제8조제3항 및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0호,2018. 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한 경우 그 등록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등록면제확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 그 대상 여부의 통지기간에 대해서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변경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9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745호,2018. 1. 17.>(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1* 까지 생략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2) 부터2% 까지 생략

부칙 <제790호,2018.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10 제2호4)부터 6)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3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란 별지 제39호서식의 신고서를 말한다.

②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0호서식의 신고통지서에 따라 신고를 한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규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에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 <제824호,2019.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19. 12. 20.>(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0호,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6호,2020.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7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호,2021. 10. 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호,2022. 3. 31.>(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7호,2022. 7.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 등록신청 시 시험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화학물질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64호,2023. 12. 18.>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호,2024. 4. 9.>

이 규칙은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6호,2024. 7. 10.>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1호,2024. 10. 10.>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30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3호,2025.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규화학물질 신고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 중인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신고서 처리기간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7조의2제2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2항제7호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각각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②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의3 제1호나목 본문 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6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및 금지물질(이하 이 표에서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을 "인체급성유해성물질등"이라 한다.

부칙 <제1호,2025. 10. 1.>(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3>까지 생략

<8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6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3,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1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단서, 제6조의2제5항, 제8조제3항, 제17조제3항·제4항·제6항·제9항, 제27조제5항, 제27조의2제3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후단,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4항,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38조제3항 단서, 제41조제6항, 제42조제5항, 제5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55조제4항 및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가목1) 표 외의 부분 본문 및 별표 5 제2호다목4) 가)부터 바)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환경부장관과"를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제6쪽의 첨부서류란 제1호,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별지 제25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26호서식의 물질정보의 물질 구분란,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23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앞쪽 중 "Ministry of Environment"를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로 한다.

<85>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3호,2025. 12. 26.>(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1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호,2026.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호,2026. 5. 12.>

이 규칙은 2026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5. 8. 7.>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려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분야	시험항목
1)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물질의 상태 나) 물용해도 다) 녹는점/어는점 라) 끓는점 마) 증기압 바) 옥탄올/물 분배계수 사) 밀도 아) 입도분석
2)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라) 피부 과민성
3)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가) 어류급성독성 나) 이분해성 다)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위 표 2)나)의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2호나목3)·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담수조류 생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1. 위 표 나목1)의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2. 위 표 나목4)의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제1호2)나)의 복귀돌연변이 및 위 표 나목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 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또는 확장1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 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비고: 별표 3의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환경 유해성 분야에 대하여 위 표 나목 및 제3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고 제1호3) 및 제2호다목에 따른 시험자료만을 제출할 수 있다.

5. 고분자화학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1)가)부터 마)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1) 제1호2)가)·나)의 시험자료 2) 제1호3)가) 또는 다)의 시험자료 3) 제1호3)나)의 시험자료 4)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	
1) 별표 3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2) 1) 외의 경우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6.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1)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2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및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0톤 이상	제1호2)·3)에 따른 시험자료 및 다목에 따른 시험자료

7. 나노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가. 입자크기

나. 입자크기분포

다. 입자모양

라.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것을 말한다)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문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국제적으로 인정된 기준 등을 고려한 시험면제 조건을 말한다)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신설 2025. 8. 7.>

유해성미확인물질의 기준(제2조 관련)

1. 유해성미확인물질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다만, 고분자화합물은 제외한다.
   가. 급성경구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급성흡입독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나.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다.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중 어느 하나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라. 이분해성을 확인하지 못한 화학물질

2. 제1호다목 및 라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다목 및 라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 물용해도가 1㎎/L 미만인 화학물질
   나. 영 별표 2 제33호에 따른 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같은 표 제43호에 따른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의 용도로만 사용하려는 화학물질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9호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고시한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작성방법에서 시험이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4. 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은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신고한 자가 소유하고 있거나 확인한 자료(시험자료·비시험자료를 모두 포함하며,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분류자료도 포함한다)를 바탕으로 판단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20.>

위해성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2호 관련)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제8호에 따른 최종 노출시나리오에서 기술하고 있는 위해성관리대책을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위해성에 관한 자료(이하 "위해성 자료"라 한다)의 작성에 관한 일반원칙

가.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가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성이 제조 또는 사용 과정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를 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나. 화학물질의 제조 및 하위 사용자로부터 확인한 용도를 포함한 모든 용도에 따른 화학물질의 전 생애 단계를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해성 자료는 화학물질의 잠재적 유해성과 권고되는 위해관리수단·취급조건 등을 고려하면서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 수준을 비교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라. 구조 유사성으로 인해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 및 환경의 유해성이 유사하거나 규칙적인 경향을 가지는 하나의 그룹이나 물질 카테고리로 간주되어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가 다른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 자료의 작성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성 자료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타당성에 대한 증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마. 위해성 자료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시험계획서에 따른 추가적인 시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필요성을 함께 적어야 한다.

바. 위해성 자료에는 다음의 평가 단계를 포함해야 한다. 다만, 다음 1)부터 5)까지를 평가한 결과 화학물질이 별표 7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성 분류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6) 및 7)의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2)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3)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4)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5) 잔류성·축적성 평가

6) 노출평가(노출시나리오 개발 및 노출예측)

7) 안전성 확인

사. 바목 6)의 노출평가는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를 확인하여 해당 화학물질이 전 생애 동안 제조·사용되는 방법과, 사람과 환경에 대한 노출을 통제하거나 하위사용자에게 통제하도록 권고하는 방법에 관한 일련의 세부 조건인 노출시나리오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말한다.

3. 바목 1)에 따른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중 폭발성, 인화성 및 산화성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대해서 화학물질의 용도에서 발생하는 용량(농도)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4. 바목 2)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환경에서의 분해, 농축 등 거동 특성을 평가한다.

나. 분해성을 고려한 먹이사슬을 통한 축적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5. 바목 3)에 따른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 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화학물질 제조자 자신의 용도와 하위사용자의 용도와 관련된 환경영역에서 악영향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의 농도를 도출하여야 한다.

나. 1) 수생(침전물 포함)생물, 2) 육생생물, 3)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에 대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6. 바목 4)에 따른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가.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용량(농도)을 도출하여야 한다.

나. 1) 급성영향(급성독성, 자극성 및 부식성), 2) 과민성, 3) 반복투여독성, 4) 발암성·변이원성(유전독성)·생식독성의 영향을 고려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에 근거하여 평가하여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다른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7. 바목 5)에 따른 잔류성·축적성 평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나목의 잔류성·생물축적성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 결정하여야 한다.

8. 바목 6)에 따른 노출 평가

가. 노출 평가란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정성적 및 정량적인 분석 자료를 근거로 하여 화학물질이 인체 또는 환경매체에 미치는 노출 수준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용량·농도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예측하여 아래의 2단계로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노출시나리오의 개발 또는 적절한 용도와 노출 범주의 개발

2) 노출예측

다.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됨을 입증할 목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의 노출시나리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먼저, 이용 가능한 모든 유해성 정보, 취급조건 및 위해관리수단에 대한 초기 가정한 초기 노출시나리오에 따른 예상노출량에 따라 작성한다.

2) 초기 노출시나리오에서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는다고 판정되면, 유해성평가 및 노출평가에서 하나 또는 다수의 요소를 수정하는 반복 과정이 필요하다

라. 개발된 노출시나리오에 대해 1) 배출예측, 2) 화학물질의 거동 및 경로에 대한 평가, 3) 노출수준 예측의 세 가지 요소를 수반하여 노출을 예측해야 한다.

마.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소비자, 작업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노출수준을 예측해야 한다. 이 경우 인체 노출과 관련된 모든 경로(흡입, 입, 피부 및 이들의 조합)를 포함한다.

9. 바목 7)에 따른 안전성확인

가. 제8호에 따른 노출시나리오에 기술한 위해성관리대책에 이행된다는 가정하에,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을 이미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인구 집단(환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는 사람, 작업자, 소비자) 및 환경 영역에 대하여 안전성을 확인해야 한다.

나. 모든 배출원에서 화학물질이 모든 환경 영역으로 유출·배출 및 손실되는 총 결과를 통합하여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검토해야 한다.

10. 위해성 자료는 아래의 형식에 따라 각 구성항목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위해성 관리대책의 요약

2. 화학물질의 식별정보 및 물리적·화학적 특성

3. 제조 및 확인된 용도

4. 분류 및 표시

5. 물리적·화학적 위험성평가
   가. 폭발성
   나. 인화성
   다. 산화성

6. 환경에 대한 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평가

7. 환경에 대한 유해성(생태영향)평가
   가. 수생 환경영역(침전물 포함)
   나. 육생 환경영역
   다. 하수처리시설의 미생물 활성

8. 인체 건강에 대한 유해성평가
   가. 급성독성
   나. 자극성·부식성
   다. 과민성
   라. 반복투여독성
   마. 변이원성
   바. 발암성
   사. 생식독성
   아. 다른 영향
   자. 무영향수준 또는 독성참고치 도출

9. 잔류성·축적성 평가

10. 노출평가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노출시나리오
- 노출예측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11. 안전성 확인

[노출시나리오 1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 2의 제목]

- 환경
- 인체 건강

.....(노출시나리오에 따라 추가)

[전체적인 노출(관련된 모든 배출/유출원의 조합)]

- 환경
- 인체 건강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25. 8. 7.>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 관련)

1. 취급방법

가. 안전한 저장 및 보관을 위한 방법 · 조건

1) 저장 공간 및 저장 용기에 대한 재질, 특정한 모양 · 형태, 환기시설 등

2) 피해야 할 물질과 조건, 유해한 분해 생성물 등

3) 온도, 습도, 빛 등 저장 · 보관 조건

4) 정전기 방지 조치

나. 취급 시 주의사항 : 사고 예방, 사람의 건강 및 환경 보호를 위한 적절한 작업 절차와 조치

다.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 방법

2. 폭발 · 화재 시 대처방법

가. 소화방법 및 소화 시 유의사항

1) 화재 진압 시에 착용할 보호구

2) 화학물질 자체 또는 화학물질의 연소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성(인체동유해성물질 · 허가물질 · 제한물질 · 금지물질 등)

나. 소화제 및 소화장비

1) 적절한 소화제

2) 안전상의 이유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소화제

3. 누출 시 방제요령

가. 예방조치

1) 호흡기, 피부 및 눈 보호, 분진관리 등을 위한 개인 보호구 착용

2) 배수시설, 지표수, 지하수 및 토양으로부터 이격거리 등 환경적 예방조치

나. 방제 약품, 장비, 방법: 흡수제 사용, 물을 이용한 가스 저감, 희석 방법 등

4. 폐기방법

가. 적절한 폐기방법

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노출을 적절히 제어하는 폐기물관리대책

5.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 정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2] <신설 2018. 12. 28.>

현장분리중간체 및 수송분리중간체의 통제된 조건(제5조제1항제4호의2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 정제, 이송, 시료채취, 분석, 세정 및 장비 보수, 장비 또는 용기의 선적 및 하적,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및 창고 보관을 포함한 해당 화학물질의 전체 주기 동안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되어 엄격하게 통제·관리될 것

2. 훈련을 받은 담당자만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할 것

3. 세정 및 유지관리 작업의 경우, 제조공정이 시작되어 해당 화학물질이 투입되기 전에 정화 및 세척 등의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

4. 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물질의 유출 및 모든 인체·환경으로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제기술 및 관리절차가 사용될 것

5. 해당 화학물질의 취급 절차는 해당 제조현장의 운영자가 엄격하게 관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기록·보존할 것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3] <신설 2018. 12. 28.>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제5조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
   가. 별표 7 제3호에 따른 건강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건강 유해성"이라 한다) 및 제4호에 따른 환경 유해성(이하 이 표에서 "환경 유해성"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나. 별표 7 제4호가목에 따른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항목에서 만성 구분 3 또는 만성 구분 4로만 분류되고,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2. 다음 각 목에 따른 구분으로만 분류되는 기존화학물질(둘 이상 분류되는 경우 및 제1호나목과 중복하여 분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밖의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는 물질
   가. 별표 7 제3호가목에 따른 급성독성 물질 항목: 구분 4
   나. 별표 7 제3호나목에 따른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항목: 피부 자극성 물질 구분 2
   다. 별표 7 제3호다목에 따른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항목: 구분 2
   라. 별표 7 제3호라목에 따른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항목: 피부 과민성 물질 구분 1
   마. 별표 7 제3호사목에 따른 생식독성 물질 항목: 추가 구분
   바. 별표 7 제3호아목에 따른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항목: 구분 3
   사. 별표 7 제4호나목에 따른 오존층 유해성 물질 항목: 구분 1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6. 4. 30.>

시험자료의 범위(제5조제2항,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1. 영 제13조제8호에 따라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자료에 근거하여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제5조제2항제4호의 시험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점도 2) 해리상수	1) 추가 유전독성 2) 반복투여독성(28일) 3) 반복투여독성(90일) 4)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5) 최기형성 6) 2세대 생식독성 7) 발암성	1) 어류만성독성 2) 물벼룩만성독성 3) 육생식물 급성독성 4)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5) 육생식물 만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저서생물 만성독성 9) 본질적분해성 10) 분해산물의 확인 1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12) 생물농축성 13) 흡착 및 탈착 1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2.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하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표의 항목에 관한 시험자료를 말한다.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1) 옥탄올/물 분배계수	1) 급성경구독성 2) 급성경피독성 및 급성흡입독성 3) 피부 자극성/부식성 4) 눈 자극성/부식성	1) 어류급성독성 2) 무척추급성독성 3) 담수조류 생장저해 4) 어류만성독성 5) 물벼룩만성독성

	5) 피부 과민성	
	6) 복귀돌연변이	6) 육생식물 급성독성
	7)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7)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8)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8) 육생식물 만성독성
	9) 추가 유전독성	9)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10) 반복투여독성(28일)	10)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11) 반복투여독성(90일)	11) 저서생물 만성독성
	12)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12) 이분해성
	13) 최기형성	13) 본질적분해성
	14) 2세대 생식독성	14) 생물농축성
	15) 발암성	

3.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말한다.

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1) 전쟁, 국제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국외로부터 화학물질의 수입 또는 공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등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다만, 등록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

물리적 · 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물질의 상태	가)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을 말한다.	가) 어류급성독성
나) 물용해도		나) 이분해성
다) 녹는점/어는점		다) 물벼룩급성독성
라) 끓는점		라) 담수조류 생장저해
마) 증기압		마) pH에 따른 가수분해
바) 옥탄올/물분배계수		바) 본질적분해성
사) 밀도	나) 복귀돌연변이	사) 분해산물의 확인
아) 입도분석	다) 피부 자극성/부식성	아) 어류만성독성

	라) 피부 과민성	
자) 인화성	마)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자) 물벼룩만성독성
차) 폭발성	바) 눈자극성/부식성	차) 육생식물 급성독성
카) 산화성	사)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카)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타) 점도	아)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타)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파) 해리상수	자) 반복투여독성(28일)	파) 흡착 및 탈착
	차)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하)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카)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거) 육생식물 만성독성
	타) 반복투여 독성(90일)	너)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파) 최기형성	더)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하) 2세대 생식독성	러) 저서생물 만성독성
	거) 발암성	머) 생물농축성

2) 그 밖의 경우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가) 추가 유전독성	가) 어류만성독성
나) 해리상수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최기형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발암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급성흡입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나. 202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시험자료의 범위

물리적·화학적 항목	인체 유해성 항목	환경 유해성 항목
가) 점도 나) 해리상수	가) 추가 유전독성 나) 반복투여독성(90일) 다)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라) 최기형성 마) 2세대 생식독성 바) 발암성 사) 급성흡입독성	가) 어류만성독성 나) 물벼룩만성독성 다) 육생식물 급성독성 라)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마) 육생식물 만성독성 바)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사)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아) 저서생물 만성독성 자) 본질적분해성 차) 분해산물의 확인 카)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타) 생물농축성 파) 흡착 및 탈착 하)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비고: 제3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시험자료의 범위는 2028년 1월 1일 이후 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개정 2025. 10. 1.>

등록등면제확인 자료의 작성방법(제7조제1항제1호 관련)

1.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 및 제조·수입 예정량을 작성한다. 다만,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대상이 아닌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국제연합(UN) 등 국제기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물질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출로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의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아 이를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연간 수입 예정량 합계가 100kg 미만인 경우
   다. 가목에 따라 수입하는 화학물질이 인체등유해성물질·허가물질·제한물질·금지물질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 등록등면제확인 대상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한다.
   가. 영 제11조제1항제1호·제2호: 수출국, 수출량 등
   나. 영 제11조제1항제3호: 구체적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실험·분석·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화학물질 또는 상품의 사진이나 브로슈어 등. 이 경우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시약은 해당 시약의 대표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시약에 포함된 다른 화학물질의 성분에 관한 자료를 함께 작성해야 한다.
   다. 영 제11조제1항제4호
      1) 연구개발에 드는 기간, 연구기관, 영 제11조제1항제4호 각 목 중 해당하는 항목 및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2) 공정도(임의 제출)
      3) 화학물질의 분류정보(해당 자료를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계획서. 다만,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을 한 경우로서 교역상대국의 무역에 관한 제한조치로 국내 제조업의

제품생산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어 산업통상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확인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가)부터 마)까지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안전관리자 현황(성명, 직위, 연락처 등)

나) 취급 시 주의사항

다) 저장 및 보관 방법

라) 폭발·화재·누출 시 대처방법

마) 이동·이송할 장소 및 예상량

바) 연구성과물(해당 화학물질의 잔량이 발생하는 경우 그 잔량을 포함한다)의 사후처리방안 및 사후처리결과. 다만,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를 생략할 수 있다.

※ 비고: 1)부터 4)까지의 자료는 연구개발자 등이 신청자를 대신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영 제11조제1항제5호

1) 해당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다만, 당해 고분자화합물에 구성된 중량비 2% 이하의 단량체는 제외한다.

2)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를 보여주는 시험자료

3) 분자량 1,000 미만 및 500 미만의 함량(%)에 대한 자료

4) 그 밖에 영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자료

마. 영 제11조제1항제6호

1) 표면처리과정 확인 목적의 공정도식도

2)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 간 반응구조식 및 표면처리 비율

3)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및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영 제11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바. 영 제11조제1항제7호·제8호: 공정도식도 등 화학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 유출 또는 노출의 차단에 관한 기술적 방법 설명

사. 영 제11조제1항제9호

1)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의 사본

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증,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증

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

2) 공정도식도 등 재활용공정에 관한 개략적인 설명

3)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4) 폐기물재활용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11조제1항제9호가목에 따른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이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삭제 <2015.10.30.>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개정 2018. 12. 28.>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무게범위(제10조제1항 관련)

구분	무게범위
1.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2.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킬로그램 이상 0.1톤 미만인 경우 (영 제13조제1호의2가목에 해당하는 자만 해당한다)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 (구분 1 또는 구분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5.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6.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7.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8.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내용(제10조제3항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구분에 따른다.

2. 물리적 위험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폭발성 물질"은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압력 및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을 말한다.

나. "인화성 가스"는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되는 범위에 있는 가스 및 섭씨 54도 이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하는 가스를 말한다.

다. "에어로졸"은 재충전이 불가능한 금속·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에 압축가스·액화가스 또는 용해가스를 충전하고 내용물을 그 가스에 현탁시킨 고체나 액상 입자로, 액상 또는 가스상에서 폼·페이스트·분말상으로 배출하는 분사장치를 갖춘 것을 말한다.

라. "산화성 가스"는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를 말한다.

마. "고압가스"는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를 말한다.

바. "인화성 액체"는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를 말한다.

사. "인화성 고체"는 쉽게 연소되는 고체(분말, 과립 또는 페이스트 형태의 물질로 성냥과 같은 점화원을 잠깐 접촉하여도 쉽게 점화되거나 화염이 빠르게 확산되는 물질을 말한다) 또는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아.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은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자. "자연발화성 액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를 말한다.

차. "자연 발화성 고체"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를 말한다.

카.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은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

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타.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은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 · 액체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파. "산화성 액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를 말한다.

하. "산화성 고체"는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를 말한다.

거. "유기과산화물"는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을 말한다.

너. "금속부식성 물질"은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말한다.

3. 건강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급성독성 물질"은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은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다.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은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 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을 말한다.

라.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은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마.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은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바. "발암성 물질"은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을 말한다.

사. "생식독성 물질"은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아.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1회 노출)"은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죽음에 이르지 않는 정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

다.

자. "특정 표적장기 독성 물질(반복 노출)"은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차. "흡인 유해성 물질"은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4. 환경 유해성: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가.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은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나. "오존층 유해성 물질"은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을 말한다.

5.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 <개정 2019. 12. 20.>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작성방법(제12조제1항 관련)

1. 용도의 범주: 주요 용도의 확인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나. 소비자 용도

2. 용도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산업적/전문적 용도
      1) 가) 밀폐된 시스템에서의 사용, 나) 매트릭스 내부 또는 표면의 함유물로써의 사용, 다) 비분산적 사용, 라) 광범위한 분산적 사용, 마) 그 밖의 사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2) 시설의 형태를 가) 저장보관시설, 나) 이송운반시설, 다) 사용시설, 라) 환경오염방지시설, 마) 그 밖의 시설로 구분하여 작성
   나. 소비자 용도: 소비자의 구체적인 사용례를 작성

3. 주요 노출경로(화학물질이 배출원으로부터 인체 또는 환경에 노출될 때까지의 이동 매개체와 그 경로를 말한다)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인체 노출: 1) 입, 2) 피부, 3) 흡입, 4)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나. 환경 노출: 1) 수계, 2) 대기, 3) 폐기물, 4) 토양, 5)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4. 노출형태에 관한 구체적 기술
   가. 돌발적 · 간헐적, 나. 가끔씩, 다. 지속적 · 빈번한, 라. 그 밖의로 구분하여 작성

5. 제조 · 사용량 및 제조 · 사용일수에 관한 기술
   가. 일일 평균 제조 · 사용량을 작성
   나. 연간 예상 제조 · 사용 일수를 작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 <개정 2025. 8. 7.>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화학물질안전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결정하여야 한다.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신뢰성
   마. 영 제3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의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9의2] <신설 2025. 8. 7.>

신고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적정성 검토 방법

(제27조의3제1항 관련)

1.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 시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외의 관련 심사·평가·시험 등 결과를 조사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나. 가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의 신뢰성
   다. 나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지 여부
   라. 다목에 따른 확인 결과 추가 자료의 신뢰성이 제출된 자료의 신뢰성보다 높거나 같은 경우 추가 자료에 근거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가 제출된 자료에 기재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와 동일한지 여부

2. 제1호에 따른 확인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방법으로 그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나.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예측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신고된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관련 자료의 검토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정한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1. 10. 14>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명령을 완전히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해당 위반행위를 1차 위반으로 본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가중처분 적용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마.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2호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법 제2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시험기관의 업무를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공익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위반 행위자가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하게 되는 등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2) 업무정지기간 중 시험업무를 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2호	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을 하거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 제4호	경고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26. 5. 12.>

수수료(제56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구분	금액
가.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신고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나.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1) 등록의 면제 확인	50,000원
2) 신고의 면제 확인	30,000원
다.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50,000원
2)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제1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0,000원
라.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마.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20,000원
바.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15,000원
사.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	2,000원

2. 감면기준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른 금액(이하 "기준금액"이라 한다)의 80%를, 중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의 50%를 감면한다.

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액을 전액 감면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18. 12. 2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신규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화학물질 [ ] 등록 [ ] 수입 [ ] 기존 [ ] 변경등록 신청서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순도(%)	
	분자식 · 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 · 부산물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의 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화학물질 ([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등록사항	⑥등록번호			
	톤수 범위			
	용도			
	유해성 · 위해성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⑨대표자	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국

(6쪽 중 제2쪽)

⑱ 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항목	⑲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⑳시험 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㉑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㉒자료 첨부 여부
물리적·화학적 특성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6쪽 중 제3쪽)

	항목	⑲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⑳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㉑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㉒자료 첨부 여부
인체유해성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 독성(28일)				
	반복투여 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6쪽 중 제4쪽)

	항목	⑲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⑳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㉑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㉒자료 첨부 여부
환경유해성	어류 급성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 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 농축성				

(6쪽 중 제5쪽)

	항목	⑲자료개요 · 자료의 성격 · 자료의 기본 정보 · 자료의 세부 정보 · 기타 사항	⑳시험방법 · 시험방법의 정보 · 시험물질 · 시험종의 정보 · 시험조건의 정보	㉑시험결과 · 시험결과값 · 결론 및 요약	㉒자료 첨부 여부
고분자자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 · 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나노물질	입자크기				
	입자크기분포				
	입자모양				
	종횡비(縱橫比, aspect ratio)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구성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㉒등록의 형태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제5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제2항, 제9조제1항에 따라 [ ] 제조 [ ] 신규 [ ] 등록 [ ] 수입 [ ] 기존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화학물질의 [ ] 변경등록 을 법제처 114 국가법령정보센터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고시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해당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작성방법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4.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해당 화학물질이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에는 통제된 조건 하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현장분리중간체의 경우에는 제조자,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제조자·수입자 또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6.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시험계획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계획서 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등의 확인소견서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사.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7.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다.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등록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 및 ⑰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의 상품명, ⑯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⑰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7. ⑥란은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⑦란~⑪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 12. 20.>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제조·수입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인수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제조·수입일	제조·수입량 및 이송량(톤)	분리·이송사유 (용도)	포장형태 (수량)	이송일	이송책임자 성명(연락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쪽)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등록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구분	[ ] 제조·수입자 [ ]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 ] 위탁한 자		
화학물질의 구분		[ ] 신규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의 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화학물질이 위와 같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수정·보완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보완 사항

화학물질 식별정보	
분류 및 표시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위해성	
안전사용지침	
노출정보	
기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5. 8. 7.>

기존화학물질 [ ] 제조 [ ] 신고서 [ ] 수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신고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연간 제조(수입)(예정)량의 범위 및 등록의 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②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③분류체계	
		④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 소비자 용도 ( )

⑤변경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⑥상호(명칭)	⑦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⑧대표자	⑨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⑩수입국

⑪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6조의2제2항 [ ] 제6조의2제4항 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뒤쪽)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변경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4. ③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5. ④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6.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⑤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7. ⑥란~⑩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⑩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8. ⑪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 ] 제조 [ ] 신고서 [ ] 수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신고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 제조 (수입)예정량(kg)			
	⑤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⑥분류체계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소비자 용도( )	
	유해성 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 해당 ※ 미확인 항목: [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 이분해성 [ ] 해당없음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⑧변경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국

⑭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뒤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제10조제4항 [ ]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6조의3제1항 [ ] 제11조의2제2항 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고의 경우 가.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의 제조를 위탁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라.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류(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없으나 같은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신고인이 확인한 정보가 있으면 해당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알릴 수 있습니다) 2. 변경신고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 따른 자료 중 변경된 사항과 관련된 서류(「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라. 자료보호신청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변경신고: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은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신고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7.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8.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이 경우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9.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인란 및 ⑧란의 변경신고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 ⑨란~⑮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⑮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1. ⑯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통지서 작성 또는 수리	⇒	신고통지서 발급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앞쪽)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기타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이 신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자료 수정·보완 통지서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접수번호	(접수일:)	자료제출기한
수정·보완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항에 따라 신고자료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 [ ] 수 입 화학물질 [ ] 등 록 / [ ] 신 고 면제확인 [ ] 신청서 / [ ] 변경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 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변경신청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⑬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 제11조제2항 / [ ]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 ] 제7조제1항 / [ ] 제7조의2제2항 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 수입 화학물질의 [ ] 등록 / [ ] 신고 면제확인을 [ ] 신청 / [ ] 변경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신청의 경우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나. 다음의 자료는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2. 변경신청의 경우 가.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중 변경사항과 관련된 서류 다.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등록면제확인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신고면제확인 수수료 30,000원 (중기업은 15,000원, 소기업은 6,0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 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수입량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8. ⑧란 ~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으며, ⑫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⑬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10.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 및 변경신청 사항란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과통지서 작성	⇒	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19. 12. 20.>

면제확인번호 제 호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 ] 등 록 [ ] 신 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연간 제조(수입)량(톤)		금회 제조(수입)량(톤)		
수입(수출)국				
면제확인 신청결과	대상 [ ] 비대상 [ ] 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사항	①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②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 ] 제조 [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통지서에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8. 1. 15.>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4. 9.>

[ ] 제 조 / [ ] 수 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 상품명	
	② 용도			
개별제출 사유	[ ] 영업비밀 공개로 상업적 손실 발생 [ ] 개별제출로 인한 비용절감 가능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대한 이견 [ ] 시험자료 선택에 대한 이견 [ ] 보유한 등록신청자료를 다른 제조·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			
③ 구체적 사유 기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④ 상호(명칭)	⑤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 대표자	⑦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⑧ 수입량 (톤)	⑨ 수입국

⑩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 관련 개별제출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자료제공 동의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상품 내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등록신청 개별제출 사유를 상세히 기술합니다.
4. ④란 ~ 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⑧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5. ⑩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개별제출확인신청서	⇒	접수	⇒	검토	⇒	개별제출확인서 작성	⇒	개별제출확인서 발급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1. 15.>

자료제공 동의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호에 따라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아래의 자료를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할 자료의 목록	
동의서 유효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 × 297㎜[백상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4. 9.>

[ ] 제 조
[ ] 수 입
화학물질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용도				
개별제출 사유				
확인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 개별제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③분자식·구조식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 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⑥용도분류체계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⑪상호(명칭)	⑫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⑬대표자	⑭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⑮수입국

⑯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법제처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뒤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⑲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⑱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⑪란~⑰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⑱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7. ⑳란은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10. 10.>

화학물질 등록 여부 확인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확인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 여부	[ ] 등록(등록통지일 :) [ ] 미등록		
	등록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나노물질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의3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5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화학물질] ([ ] 0.01톤 미만 [ ] 0.01톤 이상 0.1톤 미만 [ ] 0.1톤 이상 1톤 미만)		
등록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가 문의한 화학물질 등록 여부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신설 2026. 5. 1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 [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 ] 시험계획서 [ ] 위해성에 관한 자료 [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신청 사유	[ ]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			
구체적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 음

작성방법

1.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 자료 종류"란은 분쟁 조정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합니다.
2. "구체적 사유"란은 분쟁이 발생한 주요 쟁점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정안 제시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신설 2026. 5. 1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관한 자료제출 요청서

관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자료제출 기한				

자료제출 내용	
제출대상 자료의 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신설 2026. 5. 1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유예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공동활용 자료 종류"란의 시험항목은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을 기재합니다.
2. "유예기간"란은 희망하는 기간(해당 물질의 화학물질등록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범위)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제출유예 신청 결과 통지
신청인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5서식] <신설 2026. 5. 1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nce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 [ ] 제출유예 [ ]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된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 ] 제2항 [ ]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 [ ] 제2항 [ ] 제4항에 따라 귀하의 등록신청자료 [ ] 제출유예 [ ] 제출유예 기간 연장에 대하여 위와 같이 [ ] 승인 [ ] 불승인 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신설 2026. 5. 1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공동활용 자료 종류	[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 ]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이전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연장 유예 기간	년 월 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연장 유예 기간"란에는 희망하는 기간(이전 유예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을 기재합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
신청인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4. 4. 9.>

[ ] 제 조
[ ] 수 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화학물질의 구분	[ ] 기존화학물질	[ ] 신규화학물질	
자료 소유자 정보	②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성명(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해당 시험항목명				
⑧사용동의 거부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 상호(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 수입량(톤)	⑭ 수입국

⑮수탁자 (신청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⑥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4. ⑧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
5. ⑨란부터 ⑭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⑮란은 신청자가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확인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소견서 작성	⇒	확인소견서 발급
신청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 4. 9.>

[ ] 제 조
[ ] 수 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소견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화학물질의 구분	[ ] 기존화학물질 [ ] 신규화학물질			
해당 시험자료				
확인결과 조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학물질안전원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5. 12. 26.>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를 통지하오니 기한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법제처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182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국가법령정보센터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신설 2018. 12. 28.>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당초 납부기한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연장받으려는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개정 2022. 3. 31.>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통지내용	당초 납부기한	
	납부기한 연장결과	년 월 일까지(일)
	연장 허용/불허용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허용 [ ]불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신설 2018. 12. 28.>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당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할납부 신청금액	합 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개정 2022. 3. 31.>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결과 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부과기간	납부고지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금액	분할납부기한 간격

분할납부사항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금액
1 차	. . .	
2 차	. . .	
3 차	. . .	
4 차	. . .	
5 차	. . .	
6 차	. . .	
합 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허용 [ ]불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이 통지서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5. 8. 7.>

심사번호 제 호		**유해성심사 결과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해당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생태유해성물질(%)) ※ (%)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 [ ] 해당 없음 [ ] 기타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이 심사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전화번호:)

시행일자:

받음: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화학물질안전원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통보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심사결과	인체등유해성물질 해당 여부	[ ] 해당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생태유해성물질(%)) ※(%)는 혼합물 중 함량 한계임. [ ] 해당 없음 [ ] 기타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유해성심사 자료제출명령서

등록(변경등록)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19. 12. 20.>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자료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②시험자료 명칭			
	③시험자료 사용용도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 ] 개별 사업자 [ ] 협의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사용승인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결정 및 고지서 발급	⇒	사용료 납부	⇒	사용승인서 교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9. 12. 20.>

제 호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총칭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칭	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용도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험자료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10. 1.>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성명(운영책임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분 야	① 세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신청범위	[ ] 물리적·화학적 특성 시험	
	[ ] 인체유해성(건강영향) 시험	
	[ ] 환경유해성(생태영향) 시험	
	[ ] 환경유해성(분해성 및 농축성 등 거동)시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시설 현황 내역서 5부 2. 운영 현황 내역서 5부 3. 시험능력(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증명하는 자료 각 5부	수수료 없음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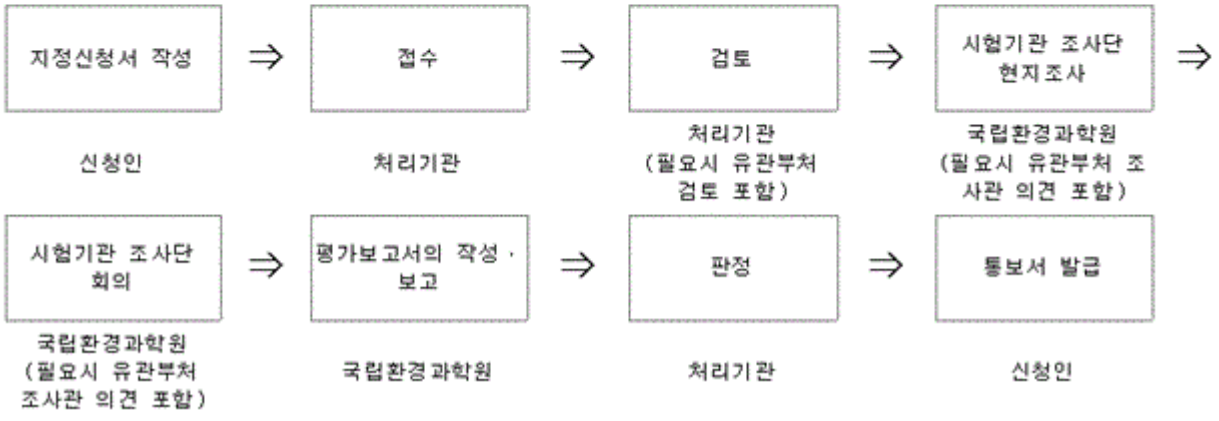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유해성 시험방법의 분야별 시험항목 중 지정받으려는 세부시험 항목을 모두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5. 10. 1.>

(앞쪽)

지정번호 (Certification No.) 제 호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GLP Certificate
①	시험기관	
	Test Facility Name	
②	소 재 지	
	Address	
③	대 표 자	
	President	
④	운영책임자	
	Test Facility Management	
⑤	시험의 범위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끝.
	Test Scope	(Validation: since)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시험기관(GLP시험기관)으로 지정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test facility was inspected by the national compliance monitoring authority regarding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s of Good Laboratory Practice.

Issue date 년(year) 월(month) 일(date)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Minister,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참고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25. 10. 1.>

화학물질 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

※ 뒤쪽의 신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현지평가 필요시 6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및 운영책임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변경신청범위	① 변경 전	② 변경 후

변경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4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사항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시험기관 지정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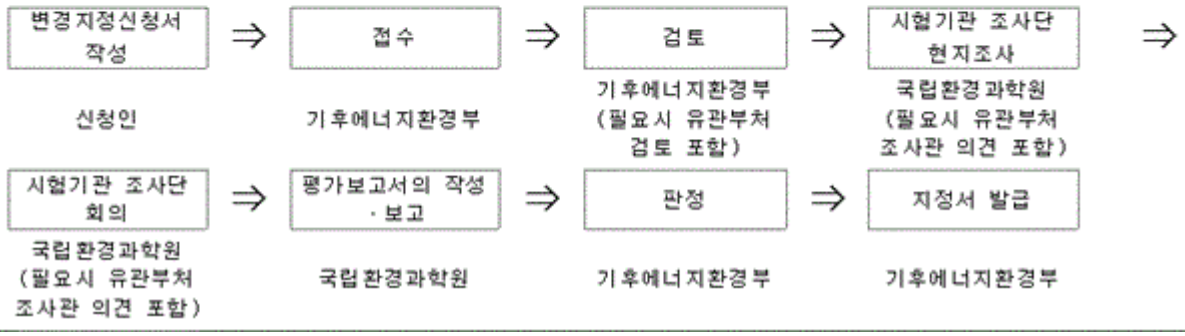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성방법

1. ①란과 ②란에는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사항의 전과 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개정 2019. 12. 20.>

시험기관 운영실적 보고서

제출자	기관명	운영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분야	
	인력현황 시험책임자 ( )명, 신뢰성보증 ( )명, 시험담당자 ( )명, 기타 ( )	

시험 번호	시험항목	시험물질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시험 의뢰자	시험 책임자	시험 계약일	시험개시 (예정)일	시험종료 (예정)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전년도 운영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운영책임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작 성 방 법

1. 인력현황에는 직무별 인원을 기재합니다.
2. 시험물질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가 없는 경우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상품명, 제품명, 제품코드명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시험책임자는 해당 시험의 시험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처 리 절 차

보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보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9. 12. 20.>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위해성평가 자료제출명령서

등록(변경등록)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25. 10. 1.>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4쪽 중 제1쪽)

화학물질안전정보(요약)

제공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질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등록·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물질 구분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생태유해성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 물리적 위험성, [ ] 건강 유해성, [ ]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 해당 ※ 미확인 항목: [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 이분해성 [ ] 해당없음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항목		주요정보
안전정보	분류표시		
	저장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학물질안전정보(정보제공 내용)

1. 물질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분자량	
	등록·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상품명	
	용도(상세기술)			
2. 물리적·화학적 특성	물질의 상태		물 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LogKow)	
	인화점		밀도	
	입도		점도	
	나노물질 (※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재)	입자크기	입자모양	종횡비 (縱橫比, aspect ratio)

3. 분류표시정보	구분	유해성 분류		표시사항		
		항목	구분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물리적 위험성					
	건강 유해성					
	환경 유해성					

4. 유해성정보	물리적 위험성	항목	독성정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4쪽 중 제3쪽)

4. 유해성정보	인체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	
		과민성	
		유전독성	
		반복투여독성	
		생식 및 발달독성	
		발암성	
		기타	
	환경유해성	항목	독성정보
		수생 생물 독성	
		육생 생물 독성	
		이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생물농축성	
		환경 거동 및 동태	
		기타	
5. 노출기준	구분		작업장 허용 노출기준
6. 취급방법	저장 및 보관방법		
	취급시 주의사항 (사고예방법)		
	취급자에 대한 응급조치방법		
7. 화재시 대처방법	소화방법 및 소화시 유의사항		
	소화제 및 소화장비 (보호구 등)		
8. 누출시 방제요령	주의사항		
	약품, 장비 및 방제요령		

9. 폐기 방법			
10. 물질 구분에 따른 규제 정보	함유여부 및 규제내용		
11. 위해성 정보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위 "위해성 정보"는 용도별 위해성 정보를 별도로 적습니다.			
12. 관련 법령 규제 정보			
13. 참고 자료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25. 10. 1.>

화학물질안전정보(위해성정보) 자료

확인필

제공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질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등록번호·신고번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		용도	
	물질 구분	[ ] 인체급성유해성물질 [ ] 인체만성유해성물질 [ ] 생태유해성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 [ ] 물리적 위험성, [ ] 건강 유해성, [ ]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따라 분류되는 화학물질		
	유해성미확인물질 해당 여부	[ ] 해당 ※ 미확인 항목: [ ] 급성경구독성(또는 급성흡입독성) [ ] 복귀돌연변이 또는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 ] 어류급성독성, 물벼룩급성독성 또는 담수조류 생장저해 [ ] 이분해성 [ ] 해당없음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해야 합니다.

구분		기술내용
용도기술 (공급망내 확인된 용도)		
제조공정 기술 (작업조건)	사용시간 및 빈도	
	단위시간 또는 작업당 사용량	
	해당 용도에 대한 기타 작업조건	
위해성저감조치	인체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환경에 대한 저감조치 (노출경로 포함)	
	폐기물 관리조치	
노출정보 및 하위사용자 지침	최적 작업조건 하의 산정 노출량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하위사용자 · 판매자

[ ] 제조자 · 수입자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공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물질정보	함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함량 및 함량범위(%)		
	상품 취급수량(톤)	사용량	
		판매량	
		제조량	
		수입량	
	화학물질 사용(가능)용도		
	화학물질 사용제한용도		
	화학물질 노출정보		

※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목		주요정보
안전정보	저장 보관 방법		
	취급시 주의 사항		
	기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중점관리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④제품의 용도	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⑥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⑦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 (%)	⑧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량(톤)	⑭수입국

⑮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제2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제품 사용설명서 1부 2. 제품 사진 1부 3. 다음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다.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 : 인적사항 및 사유 등의 신고한 내용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 10,000원, 소기업은 4,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신고서에 따라 중점관리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⑧란의 제품 전체를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물질의 분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 EU CLP 규정(Regulation (EC) No 1272/2008)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③란 ~ ⑧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5. ④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서 제시한 용도(예: 세정제, 코팅제, 페인트 등)를 적습니다.
6. ⑤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7. ⑥란은 입, 피부, 흡입, 기타 가운데 해당되는 노출경로를 모두 적습니다.
8. ⑦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을 각각 적습니다.
9. ⑧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10. ⑨란 ~ ⑭란은 신고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11. ⑮란은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모든 수탁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3. 12. 18.>

(앞쪽)

제 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①신고번호	중점관리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변경사항	변경내용					
[ ] 제품을 새로 생산·수입	②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③제품의 용도	④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⑤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인체 주요 노출경로	⑥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	⑦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 ] 노출정보	제품명	변경 전	변경 후
[ ] 용도			
[ ] 함유량			

[ ] 물질별 총량이 50% 이상 증가	⑧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변경 전	변경 후

[ ] 수입자 (신고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상호(명칭)	⑩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수입량 (톤)	⑭수입국

[ ] 수탁자 (신고인이 위탁한 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수수료 15,000원 (중기업은 7,500원, 소기업은 3,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른 신고증에 발급된 신고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⑱란까지의 작성방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서)과 같습니다.

처리절차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삭제 <2018. 12. 28.>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 <개정 2019. 12. 20.>

[ ] 제품 양수자
[ ] 일반 소비자

제품 내 함유물질 안전정보 자료

확인필

제공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품정보	제품명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함량 또는 함량범위(%)	
	사용가능용도	
	사용제한용도	

※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자료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항목	주요정보
안전사용정보	올바른 사용방법	
	올바른 사용조건	
	저장 및 보관방법	
	폐기방법	
	노출시 대처방법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6. 5. 12.>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 ] 선임 [ ] 해임 [ ] 업무효력 승계 사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선임 대상자 (업무효력 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해임 대상자 (업무효력 피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선임번호			
국외 제조 (생산)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최종 수출자	상호(명칭)		제조(생산)국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관리번호 (업무효력 승계의 경우만 작성)			
	제품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에 따라
[ ]제45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제4항

[ ]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 ] 선임 [ ] 해임

[ ] 위 선임 대상자(업무효력 승계인)는 해임 대상자(업무효력 피승계인)가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선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선임계약서 사본 등 선임 또는 해임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선임 또는 해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3. 업무효력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업무효력 승계 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최종 수출자"란은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에 최종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을 원하는 경우만 적습니다.
2. "화학물질 정보"란은 복수의 화학물질명 또는 제품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
3. "관리번호"란은 업무효력 승계의 경우만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제출	⇒	접수	⇒	검토	⇒	신고증 통지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국외 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해임) 사실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신고내용 : [ ] 선임 [ ] 해임
6. 국외 제조(생산)자 또는 최종 수출자 :
7. 제품명 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4항에 따라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국외 제조(생산)자는 수입자를 갈음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 <개정 2025. 10. 1.>

녹색화학센터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녹색화학센터 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조직·인력·시설·장비 확보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최근 2년간 녹색화학분야 연구실적 1부. 3. 사업계획서 및 운영규정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지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 <개정 2025. 10. 1.>

녹색화학센터 지정서

1. 지정번호 : 제 호

2. 기 관 명 :

3. 대 표 자 :

4. 소 재 지 :

5. 센 터 장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 따라 위 기관을 녹색화학센터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의2서식] <신설 2025. 8. 7.>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
요청대상	정보 구분	[ ] 유해성 정보 [ ] 기타 정보	
	화학물질 식별번호 (CAS No. 등)		
요청사항			
요청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공개된 화학물질의 정보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화학물질안전원장·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요청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다음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수집·이용목적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의 수정·보완 요청에 따른 결과 회신
보유·이용기간	2년

※ 위 내용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정·보완 요청에 대한 결과를 회신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수정·보완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협의 (필요 시) ⇒ 검토 및 협의 결과 통지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5. 8. 7.>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 ] 보호 [ ] 보호기간 연장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5일(유해성심사의 경우에는 유해성심사기간에 준함)

요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요청사항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요청 요지 및 이유
	보호대상 자료 목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자료 [ ] 보호 [ ] 보호기간 연장 를(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환경)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사본(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위 요청사항란 중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요청 요지 및 이유 칸을 작성할 때 자료 보호기간 연장의 경우에는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요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요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자료보호(연장)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개정 2021. 10. 14.>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자료 [ ] 보호 [ ] 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통지서**		
제 호				
요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수리결과	화학물질명 (총칭명)			
	자료보호항목		자료보호기간 만료 예정일	
	자료 비보호	항목		
		사유		
		이의신청기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료 보호(보호기간 연장) 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기 관 의 장 직인

210㎜× 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4. 9.>

자료보호 해지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관리번호				

신청사항		
	자료 보호 해지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 목록	
	해지 전	해지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 보호의 해지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관리번호란은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신청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정 2024. 4. 9.>

자료보호 해지 결과통지서

관리번호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해지 결과	화학물질명(총칭명)	
	보호되는 자료항목	
	보호해지 되는 자료항목	자료보호 해지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의 해지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 화학물질안전원장 · 유역(지방)환경청장 ·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4서식] <개정 2025. 8. 7.>

[ ] 화학물질 [ ] 등록 [ ] 면제확인 지위승계 신고서
[ ] 중점관리물질 [ ] 신고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승계 사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신고번호		

	구분	승계 전	승계 후
신고사항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3 제1항에 따라 [ ] 화학물질 [ ] 등록 [ ] 중점관리물질 [ ] 신고 [ ] 면제확인 지위 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원 (중기업은 1,000원, 소기업은 400원)
담당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합니다)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자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앞의

자 확인사항 중 제1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3항제5호에 따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지위승계 신고가 접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		
	한국환경공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210㎜ × 297㎜[백상지 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9호서식]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신고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고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상품명			
	①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톤)			
	②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해성심사를 받았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2.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 음

작성방법

1. ①란은 해당 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고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신고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 <개정 2024. 4. 9.>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통지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의 정보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등록번호		
등록형태	[ ] 0.1톤 미만 [ ] 0.1톤 이상 ~ 1톤 미만 [ ] 1톤 이상 ~ 10톤 미만 [ ] 10톤 이상 ~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화합물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유해성심사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화 학 물 질 안 전 원 장 직인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 <개정 2024. 4. 9.>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량 보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제출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또는 위탁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출사항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① 등록번호			
	② 등록 신청한 연간 제조(수입)예정량(kg)			
	③ 실제 연간 제조(수입)량(kg)			

대통령령 제2941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1항 및 환경부령 제7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화학물질의 등록통지를 받은 연도부터 2018년까지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상의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②란은 종전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 제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의 소량 제조(수입) 신규화학물질 등록신청서에 적은 연간 제조(수입) 예정량(kg)을 적습니다.
3. ③란은 실제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제출인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안전원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화학물질관리법령(20241214)

제 작 자 : 류종우
메일주소 : hazardtop@gmail.com
제작일자 : 2026. 10. 8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